

第278回國會 (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追更案및基金運用計劃變更案調整小委員會) 第 1 號 (임시회의록)

國會事務處

日 時 2008年9月10日(水)

場 所 豫算決算特別委員會小會議室

議事日程

-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08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

審査된案件

-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2. 2008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3. 2008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10시55분 개의)

○소위원장 이한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추경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종합정책질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충실한 소위원회안을 만드는 데 활동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충실한 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08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56분)

○소위원장 이한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부 측을 대표하여 기획재정부차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배국환 먼저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장관께서는 지금 기자 브리핑 관계로 못 나오셨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안조정 소위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는 데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책질의 과정 중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갑작스러운 유가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에너지 절감과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 소요 등을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앞으로 소위 조정과정에서 정부의 추경예산안 편성취지가 잘 반영되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예비심사를 완료해서 저희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 후 수차례 소위 심사를 하였으나 심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 후 일부 소위 심사를 하였으나 심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2쪽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세부내역은 나중에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고 총액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조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안이 6982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1500억 3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5482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4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1000억 3000만 원이 감액되어 4940억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042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500만 원이 감액되어 순증액 542억 5200만 원입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 원칙과 소위 심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소위원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소위 구성 및 활동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소위 운영 일정(안)은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해 가지고 오늘과 내일 심의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운영 방식(안)입니다.

참고로 종전에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계속 해오던 방식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순서입니다.

순서는 지난해 예산안 심사와 같이 위원회별·부처별 건제순으로 진행하고 먼저 세출삭감 나중 세출증액 순으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새 비목 설치 및 상임위원회 삭감·증액 등 상임위원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우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소위 자료 작성입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작성한 소위 자료는 가장 최근 추경예산안 소위 심사자료를 참고로 해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시 제기된 수정의견, 단 예산의 증감과 관련이 없는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사항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수정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수정의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별·소관별 건제순으로 감액의견, 감·증액 의견이 동시에 제시된 것은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에 증액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수정된 내용은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원칙(안)입니다.

이번 추경의 특성을 반영해서 여야 간사님들한테 어제 제가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영사업 판단기준으로는 첫째, 고유가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목적에 부합하지, 사업목적의 적합성입니다.

둘째,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거나 완공 위주 사업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의무적 지출사업이라 하더라도 본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후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입니다.

넷째, 전·이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다른 수단으로는 상황 극복이 곤란한 사업을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의 보충성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원칙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종전 예결위원회에서 세운 원칙이 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등 선행조건

미이행 사업, 국회·감사원에서 지적한 사업, 집행 부진으로 실적 개선이 불투명한 사업, 사업계획이 부실한 사업, 부처 간, 예산·기금 간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최인기 간사님께서 법적 근거가 없는 지출 예산도 넣자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삭감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 삭감 사업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증액 사업입니다.

증액 사업의 경우에는 첫째, 정부안 또는 상임위원회안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둘째, 정부안에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 반영 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우선 존중하도록 하며 셋째, 상임위원회 증액 사업 중 자체 감액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리고 아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식경제위원회하고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가 중단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위원회 심사 중단 사유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1조 2000억 원 정도 보조금 지급 문제가 논란이 돼 가지고 심사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는 사실상 이번에 세출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세계잉여금 4조 9000억이 세입 재원으로 잡혀야 되고 일부 균특 사업이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서 각 부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였으나 제가 듣기로는 기획재정위 역시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보조금 지원 문제 때문에 심사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제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이니까,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부분적으로 심사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4일, 5일, 8일 굉장히 강도 있게 했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에 보조금 지급되는 것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국내외 자원 개발 1조 1000

억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1700억 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이 다 여야 간에 팽팽한 의견 대립이 되다 보니까 국회의장께서 심사기한을 지정하셨습니다. 기한을 지정하시면서 사실 여야 합의하에 이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최인기 위원 넘어왔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저희 위원회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뭐가 넘어왔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부는 심사가 됐고 일부는 심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회의장님께서 국회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 위원회로 회부를 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넘어온 것입니다.

○류근찬 위원 그리고 심사 원칙과 관련해서……

○소위원장 이한구 잠깐만요, 그다음 진행을 할게요. 그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를 받으신 내용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본입장 등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찬 위원님……

○류근찬 위원 심사 원칙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대여섯 가지를 써 냈는데, 예타하고 타당성 재조사와 같은 선행조건 미이행 사업이 1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거를 적시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원칙적으로 예타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류근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써 냈을 때는 원칙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특별히 SOC 사업 같은 것과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예타가 안 돼 있거나, 그러니까 사업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면서 예타를 선행조건으로 다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 국회·감사원 지적사항에 있는 사업이라든지 집행 부진으로 실적 개선이 불투명한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심사한 자료예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심의 과정에서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예타 문제는, 예타를 거치지 않으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간혹 국회

에다 편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증액 사업을 또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경우에는……

○**류근찬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최인기 위원** 제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별도로 만든 자료는 없습니다.

○**김광림 위원** 수석 얘기를 들어 보면 정부에서 안 넘어온 것은 기본적으로 예타를 안 했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배국환** 정부가 제출한 사업서는 전부 예타에 관계없이 이미 다 끝난 것들입니다. 완공을 빨리 시켜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 이것하고는. 앞으로 좀 증액을 해야 될 사업들 중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리고 SOC와 관련된 부분 지난번에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각 사업별 진척도와 관련된 자료를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가운데에는 사업 시작이 안 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하는 거야. 전혀 사업이 시작 안 되었는데도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사업이 있다, 전체적으로 사업별 진척도를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안 오네요.

○**소위원장 이한구** 이렇게 하십시오.

류근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좀 보완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고, 일단은 기본 입장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것부터 우선하고 더 디테일한 것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간사님들부터 혹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지요.

○**이사철 위원** 저희 한나라당의 입장은 지금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특히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지적을 하시는데 이게 서민경제에 대한 보탬을 주기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소 요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시더라도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인기 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보다는 지금 설명된 내용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선 자료가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되었지만 SOC라든지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목록이 정리되어서 예결위원들한테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SOC 사업 몇천억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역, 어디 어디 하는 대상 사업지구를 보려고 각목명세서도 봐도 안 나오고 예산서 두꺼운 것을…… 저도 재정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게 안 나와 있어. 그것을 제출해 줘야 될 게 아닌가, 예를 들면 포괄로 사업비 얼마, 철도 얼마…… 저도 예산서 잘 봅니다. 보는데, 대단히 불편하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공해 줬더라고요.

심의 자료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요. 개별 사업 항목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아까 예타 문제 같은 것을 비고란에 적어 줘야지. 이것은 예타를 통과했다든지 이것은 안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해 주셔야지 보니까 SOC 부분 이런 것은 포괄해서 그냥…… 여기 이 자료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나는 보지는 않았습시다마는, 그래서 개별 사업에 대한 여러분들 자료를 좀 주셔야 심의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이고, 국토해양부 소관을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류근찬 위원** 사업별 없어요. 전연 심사할 수가 없어요.

○**최인기 위원** 각목명세서를 내가 봤는데도 거기에 없어요. 그러면 뭘 보고 개별 사업을 심사하라는 얘기인지……

○**기획재정부제2차관 배국환**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인기 위원** 자료를 우리 소위원들한테 주셔야 되겠다…… 예산서를 다 봤어, 내가. 그런데 없어.

○**소위원장 이한구** 그게 언제 가능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배국환**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최인기 위원** 개별 사업 내역을, 정부가 해야 될 사업 내역을 좀 적시해 주셔야겠다 그 말씀만 드릴게요.

○**류근찬 위원** 저도 최 간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가 안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직도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국회의장 직권으로 넘겨왔다고 하니까 인정하고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우제창 위원** 여기 4페이지에 원칙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사업 중 기준들을 적시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 당의 최인기 간사님께서 법 근거가 없는 지출예산 이것 적어 놓았는데 이것을 ‘최인기 위원’ 이렇게 써 가지고 이것을 원칙이 아니고 뭔가 의견 제시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판단기준인지 의견 제시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인기 위원** 제가 이 안을 가지고 왔길래,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을 넣어야 되겠다 했더니, 넣어 달라고 위원장님께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넣어 놓고 최인기 위원의 의견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구면, 수석께서.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예. 그게...

○**최인기 위원** 여기까지 넣어 줘서 고맙기는 한데 내 이름을 지위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일반원칙으로 해야 될 것 아니요?

○**소위원장 이한구** 이것은 원래 원안을 간사님들한테 돌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간사님한테 확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오늘 결정을 하자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들 별.....

○**최인기 위원** 이것 넣읍시다.

○**우제창 위원** ‘최인기 위원’을 빼세요.

○**권경석 위원** 위원님들 말씀 다 하셨는데 저는 이번 추경의 목적이 다른 추경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심의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잉여금 가지고 그것도 3분의 1 정도만 투입한 이런 다른..... 2003년 이후에 보면 여섯 번째인데 다른 추경과의 차이점이 있다, 또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광의로 해석해서 법 규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면 좋겠다는 원칙문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4페이지 “원칙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사업—국회·감사원 지적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원이야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국회 지적사항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이것은 대개 보면 부당 사항으로 지적한 경우도 있지만 부대조건으로 단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줘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 논의의 소지가

있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유사·중복 사례’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기초 심사자료가 공급되어야 되겠다,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기초 자료도 부처에서 공급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법 근거가 없는 지출 예산” 이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안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융통성 있게 이 문제를 따져 줘야지 직접적인 법적 근거만 따지다 보면 심사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제창 위원** 존경하는 권경석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야당 위원—류근찬 위원 포함해서—앉아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추경의 필요성을 나름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추경예산 이게 법적 근거 따질 것 같으면, 사실 광의로 해석하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번 추경의 목적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 서민층에 대한 민생 안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견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아야 된다, 그 합목적성이 반드시 달성되어야 된다, 시급성과 함께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것에 맞지 않는..... 저소득층이나 서민층, 고유가로 인한 민생 안정하고 별도의 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걸러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경석 위원** 다 맞는 말씀인데 잠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합목적성은 당연히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심사하다 보면 법적인, 직접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너무 협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적성과 여러 가지 시급성에 부합되면 우리가 그런 측면에 같이 합리적인 논의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김광림 위원** 저는 기획재정부의 예결산소위에서 논의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병석 의장님도 멤버로 참석하셨는데 논의는 했고 의결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이렇게 할 때

균특예산... 사실 균특예산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균특예산 소속이,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부처가 기획재정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소속은 그 부처로 해 놔줍니다.

그래서 왜 여기 들어왔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지,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충분히 논의를 하신 뒤에 이것은 양당의 입장을 전체로 봐 가지고 좀 보자, 이렇게 하면서 덮어놓고 의결을 못 하고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민주당에서도 그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 그것 괜찮다.’ 했던 것이 외평기금 수정안입니다. 이것은 예산총칙 9조에 보면 국가차입금 한도액을 정하는 게 있는데 외평기금이 당초에 10억 불 발행한다 하면서 한화로 예산을 1조 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한 8억 몇천만 불 이렇게 발행할 사정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10억 불 발행할 수 있도록 2000억을 증액시키고 대신에 그 위에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000억을 깎자,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발행한도는 동액으로 하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000억을 줄이고 그다음에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해서 2000억을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은 실질적으로 합의를 하고 의결은 안 한 사항이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원칙에 대한 것은 수석위원께 한번 여쭙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원칙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사업”의 네모 5개는 지금까지 해 오던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예,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겁니다.

○김광림 위원 그렇지요? 저는 18대 와서 잘 몰라서, 만약 이게 죽 되어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 여섯 번째 “법 근거가 없는 지출 예산” 이것은 추가되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그것은 오늘 논의해 가지고...

○김광림 위원 오늘 논의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예.

○소위원장 이한구 오늘 대부분 이견이 없으니까.....

○김광림 위원 저는 “법 근거가 없는 지출 예산” 이것을 다 인정은 하는 바인데, 만약에 새로

추가될 때에는 ‘왜 추가되는 거냐?’ 하는 데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속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특히 한전, 가스공사에 대한 것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계속해서 법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예특법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한쪽 대답은 ‘그것은 보조금 예산 및 편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빛은 갠아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칙적으로 또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한구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배국환 지금 한전 쪽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소위원장 이한구 아니,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배국환 예산이라는 게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기 때문에 법적 근거라는 게 예를 들어서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출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조금법이라든지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그냥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면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이다’ 이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최인기 위원 보조금관리법에도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는 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근거 있는 예산을 반영하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우제창 위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최인기 위원 그러니까 넣어 주라는 그런 얘가지요, 보조금관리법 그것도.

○권경석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이 그것을 지나치게 협의로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광의로 해석하자 이런 취지에서...

○우제창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좋은데 차관님 말씀은 뭐냐 하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심의되는 게 법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국회의원도 법을 근거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심의하면 법입니까, 그것이?

○최인기 위원 국회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 원칙이니까 넣어 두기로 아까 했는데 또다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요?

○소위원장 이한구 의견을 한번 들어……

○최인기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이한구 정부 선배님께서는 이게 필요하다 하시니까, 이것을 너무 딱딱하게만 해석 안 하는 것으로……

○최인기 위원 그렇지요, 심의는 개별 사업별로 돼요.

○이사철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류근찬 위원님이 전혀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것도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류근찬 위원 있습니다.

○이사철 위원 이번 추경에?

○류근찬 위원 SOC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을 죽 뽑아 달라니까요.

○이사철 위원 진짜 우리 최인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구체적 내역을 우리가 봐야 돼요. 0.3% 집행된 게 있더라고요.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또 있어요?

○권경석 위원 집행 진도 이것도 장기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또 예산이 연말에 배정되면… 예를 들어 작년 연말에 배정된 예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집행률이 제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야지요.

○류근찬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우제창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드리고……

○소위원장 이한구 예.

○우제창 위원 우리가 국가재정법을 만들었습니다. 3년 전인가요, 언제인가요? 3년 전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배국환 예.

○우제창 위원 국가재정법을 만들기 전하고 만든 후하고 추경에 대한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추경을 국가재정법 이전과 이후를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지금 광의로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국가재정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그야말로 국가재정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기원을 만든 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에요.

그런데 그 법안 이후에 추경에 대한 태도는, 국회가 추경 다루는 태도는 달라져야 된다, 이 말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관되게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89조에 조항을 넣고 한 것입니다. 이한구 위원장님이 산 증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이 과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의 그 방향, 정신… 그 정신에 대한 줄기와 방향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참고삼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광림 위원 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법을 바꾸는 것도 헌법 취지를, 기본적으로 헌법 취지를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헌법에 보면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은 구 예산, 그러니까 2006년 10월 4일 이전의 구 예산회계법에 보면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바꾸어 주신 게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다.” 하는 그 세 가지 속에, 중간에 보면 2호가 “등 대내외 여건에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입법 개정하게 된 취지나 이런 것에 나타나 있는 법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우려가 있고 어떤 것이 발생했다고 보느냐에 대한 명확한 해석 준거가 없을 때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그러니까 2호에 대한 사례들을 이제 우리가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전례들을? 그런 취지에서 추경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제창 위원 그 말씀을 존중하고요.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국가재정법이 도입되면서 기본 방향은 무엇이나? 추경의 요건을 엄격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에는 이견이 없으시단 말이지요. 엄격하게 만든 거예요.

○김광림 위원 ‘엄격’보다는 분명하게 만들었지요.

○우제창 위원 엄격하게 만든 것입니다. 엄격하게 만든 것이 그 당시 그 법조문을 만든 사람들

의 취지고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추경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면면을 따져 보고 그 정신을 살려가는 것이, 이것 국가재정법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권경석 위원** 그래요, 두 분 말씀 다 맞는 이야기고,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되 개별 사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목적을 살리는 방향으로 열어 놓고 우리 심의하자, 이 이야기지 법도 없이 택도 없이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사철 위원** 일반 원칙 가지고 너무 우리가 오래…… 다 옳은 말씀들 아닙니까?

○**우제창 위원** 제 생각에는 지루하지만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탐색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사철 위원** 우리나라는 너무 오래하면 경고 받는데……

○**소위원장 이한구** 일단 저는 우제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이 사실은 국가재정법 개정한 이후로 최초로 하는 추경 심사이어서 우리가 법 정신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것이 나중에도 다른 추경 심사할 때 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고 학계 의견도 충분히 듣고 상당히 정리해 놓고 우리가 심의를 했으면 훨씬 좋을 텐데 시간을 충분히 못 갖게 된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를 해서 정책처에서도 연구를 하고 또 대표적인 경제학자, 재정학자들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자료로 만들어 냈으니까 그 자료를 우리가 존중하면서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또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내용에는 저소득층이나 농어민들이나 특히 고유가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기필코 내일은 처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심의는 해 주시고 또 대신에 비교적 심플하니까 내일까지 꼭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심사자료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

까? 일단 수석전문위원님,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최인기 위원** 위원장님이 금방 하신 말씀에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고유가로 인한 서민생활 안정 예산도 들어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심사해서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여야가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정책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들이 있고 저희 민주당의 입장 또 선진창조모임의 입장, 정책질의를 통해서 이미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신다면 정책질의 때 반영하고자 우리 야당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이 잘 지금 추경안 조정 과정에서 반영이 빨리 되면 저희들도 기한을 지킬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양당에서 주장했던 그런 입장을 완전히 철회하고 그냥 합의할 수는 없다 하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정 과정에 여야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근찬 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추경과 관련한 기본 입장, 특히 야당 입장은 최인기 간사께서 잘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서둘러 정부로 보내 줘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요. 그리고 애초에 11일 날까지 이것을 정부로 보내 주겠다고 하는 대원칙에 찬동합니다.

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보다는 더 화급하게 보살펴야 될 민생이 있다 해서 증액들이 일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정확한 액수는 총계를 못 내봤는데 우리 농수산식품위원회에서도 벌써 축산 농가, 수산업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한 660억 정도 증액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애초에 내놓은 그 틀을 아주 고수하려고 그러면 저는 대단히 심사가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안을 가지고 정부 쪽 입장에서 있는 한나라당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하게 지금 보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감액을 해서 그 부분을 정말 절실하게 요구하는 쪽으로 증액시키는 그런 노력을 여야할 것 없이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11일 내일까지 정부로 보내

주는 절차가 순조롭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특별히 말씀하실 다른 위원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은 말씀이고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우리가 협력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설명해 주실래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첫 페이지 보시면 목차가 나오는데요, 부처 건제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먼저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경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데요, 교육세가 작년엔 초과 세수가 있었습니다. 1160억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해서 교육세 교부금을 정산하고자 하는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해서 다음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 이것을 인정해 주어도 되고 내년도 '09년도 예산에서 인정을 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필요한 총 소요 예산이 4611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는 필요 재원의 3분의 1인 1537억 원만 계상되어 있는 바 학교용지부담금 신청이 금년도에 한꺼번에 몰릴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률에 의해서 9월 15일부터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령이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해서 3074억 원 증액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까요? 아이템별로 질의해 가면서 들으실래요, 아니면 전체를 듣고 질의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처별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럴래요? 그러면 일단 부처별로……

○최인기 위원 아닙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어떻게요?

○최인기 위원 전반적으로 죽 한번 설명을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부처별로 해야 전체적인 증감이 얼마고 규모가 얼마인가 알지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최인기 위원 스트레이트로 전체를 설명하고 다시 돌아오자고요.

○소위원장 이한구 예.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인데요, 본예산에는 540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620억 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심사에서는 일부 위원님께서 유기질비료의 지원 확대 및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증액을 주장하신 분도 계시고 화학비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 사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주장을 하셨지만 증액 요구는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저희 검토보고에서는 단기적으로 유기질비료량 보조율만 상승시켰을 뿐이고 직접적인 화학비료 대체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일부 감액하자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원래 화학비료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유기질 비료를 늘리자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연말까지 집행이 다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비료 가격 수급 안정의 경우에는 301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정책은 화학비료는 가급적 사용을 줄이고 유기질비료 쪽으로 옮기자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입니다마는 이번에 워낙 비료값의 상승 폭이 컸기 때문에 대증적인 요법으로 일부 증액을 하자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류근찬 위원 질의 하나 하십시오.

종합심사 의견은 상임위 의견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상임위원회 의견이 있고요…

○류근찬 위원 상임위 더하기 우리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에서...

○류근찬 위원 예결위 의견이지요.

그러면 검토의견은 우리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류근찬 위원 우리 위원회 의견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예.

○류근찬 위원 예컨대 검토의견에 감액이라고 그러면, 표를 좀 이해하려고 그래요. 지금 증액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최인기 위원 전문위원 의견은 이렇다, 상임위원회는 증액했다.....

○류근찬 위원 감액을 어떤 돈에서 감액하자는 거예요? 620억이 올랐는데 이거 너무 많다, 그래서 전문위원은 이 620억을 깎아서...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깎아도 사업 집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다는 의견입니다.

○류근찬 위원 620억을 다 깎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질의는 나중에 합시다.

○최인기 위원 즉 설명을 들어 보고 전체 규모도 알고.....

○소위원장 이한구 그렇시다.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4쪽입니다.

유류구매자금 특별지원, 신규로 26억 원을 증액시키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유류가 인상에 따른 어떤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차보전사업입니다. 평균 조달금리 7.59%와 어업인 대출금리 1%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종합 정책질의 시 주장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50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께서 브루셀라·결핵 등의 보상금 부족액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인정해 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향후 발생할 질병은 추경안 요건이 아니므로 예비비 지원이 타당합니다. 미지급 보상금과 대부분 예산이 소진된 것을 고려해서 일부만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 집행에는 차질이 없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입니다. 종합심사에서 13억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양식어업인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 이것

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지원사업인데요, 연근해 어선 유류비 절감을 위한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연근해 어선 유류비 절감을 위한 장비 지원액 87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러니까 87억은 상임위다 이거죠?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예, 상임위에서도 요구를 했고요 종합 정책질의에서도 나온 내용입니다.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인데요, 정부로부터 2350억(근해어선 1600억, 연안어선 750억) 증액이 들어왔습니다. 상임위 정책질의에서 고유가로 인한 어민 지원을 위해서 감척 예산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감척을 하면 선원들이 실직을 당하게 됩니다. 실직 어선원 전업 장려금 지원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해서 106억 2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07년도 근해어선 감척의 실집행률이 9.1%로 저조하고 08년도 감척 물량이 07년 대비 5.8배인 484척으로 과다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전액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감액을 제시했습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입니다. 종합심사에서 어업인 유류구매자금 특별지원 및 양식어업인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에 따른 기금 지원인데요, 336억 증액 요청을 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도 했고 위원님들 정책질의 시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관련 2008년도 농림식품수산부 소관 사업들의 집행유보 해제입니다.

대상사업이 30개 사업 중 26개 사업이고, 예산액은 2286억 5400만 원입니다.

국회에서 작년도 예산 심의 시에 '한미 FTA가 체결이 되면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집행을 해라.'라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국회의 부대의견을 존중해서 집행을 유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유보사

업은 상임위원회에서—농림수산물위원회가 되겠습니다—저희 위원회에 의견이 제시된 대로 조속히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한미 FTA 체결 후에 피해보전 성격의 사업을, 4개 사업입니다, 4개 사업은 제외하고 시장 개방에 따른 사전 준비 차원에서 집행유보사업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과거 부대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보완대책으로 편성한 관련 예산 3895억 원에 대해서는 동 협정이 국회에 비준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한다.”는 그런 부대의견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지식경제부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에너지안보 및 온실가스감축국제지원입니다.

감액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요, 에너지안보 및 온실가스감축국제지원사업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제적 역할을 감안해서 의의는 있지만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전개발사업 출자입니다.

감액인데요, 사업 추진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긴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자원펀드는 연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원안 유지로서, 해외자원 개발 확대는 고무적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

9쪽입니다.

국내외자원개발 용자사업인데요, 사업 추진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긴급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따라서 감액해야 한다는 종합정책 질의 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대한광업진흥공사 출자사업인데요, 자원펀드는 연내에 집행할 수 없어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검토보고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서는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서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검토보고에서도 같은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감액 주장이 있었습니다.

공공요금 안정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1조 2550억 원 사업인데요, 한전 및 가스공사의 적자분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하자는 건데 법적 근거가 없거나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서는 소비자물가 안정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서 원안을 유지하자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11쪽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인데요, 장기적인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요,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투자가 단기간에 상용화되어 대체에너지 개발 효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력효율향상사업에 대해서는 고효율조명기기 무상보급사업은 230억 원을 투자하여 19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용자사업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용자는 시급히 다루어야 할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균특예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주장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추경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영세한 재래시장의 상황을 보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13쪽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인데요, 종합심사에서는 차상위 경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가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 56억 추가 지원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현재 8만 4000원에서 10만 원으로 단가를 인상하여 1만 6000원을 추가하자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의료급여 자지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08년도 의료급여 부족액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영아기본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영아기본보조금 사업 예산 부족액에 대해서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증액 요청입니다. 50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의료원 등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료원 노후 전산장비 보강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78억 원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운영센터 운영지원, 상임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700개소) 및 종사자 처우개선, 월 220만 원 주고 있는 건데요 322만 원으로 늘리는 것으로 134억 원의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의견을 이따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환경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해도 충분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요, 국내 천연가스버스 제조업체의 월 평균 생산량, 가스충전소 확보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추경예산안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는 감액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최근 경유가 상승에 따라 버스 운송업체의 당초 사업 물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천연압축가스버스로의 전환 신청이 이루어져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사업 집행률, 사업 집행 절차 및 버스의 제작·인도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추경예산안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감액 의견 제시입니다.

국토해양부,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정부는 추경안에 1000억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도로공사는 매년 560~60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내고 있으며, 96년 유료도로법 제정 이후에 도로공사에 지원한 전례가 없고, 지원 근거 규정도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관련 법 개정을 거쳐 다음연도 본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금액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고 대신에 화물운송시장 안정대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감액 조정된 내용을 아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증액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저희 예결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600억 원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화물운송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화물자동차 야간 통행료 할인으로 발생한 도로공사의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감차보상지원, 신규사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300억 3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께서 찬성 발언도 하셨습니다. 화물운송시장 안정대책에 따라서 과잉 공급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위해서 예산 지원입니다.

화물자동차 개조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100억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화물운송시장 안정대책에 따라서 경유 화물차를 LNG 화물차로 개조하기 위한 예산 지원액입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2050억이 증액되어 왔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대부분 노선의 완공시기가 2010년 이후라는 점에서 추경대상 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검토보고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은 1999억 원 증액된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라는 성서 5차산단, 대덕 테크노단지 등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바 추경을 통해서 증액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세부 사업간 전용이나 조정으

로 부족 재원 확보가 가능하므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동일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일반철도 건설 1650억 원이 추경예산안에 증액되어 왔습니다마는 삼랑진 - 진주 복선전철화사업 등 일반철도 건설의 공정률이 저조하여 조기 개통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요.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950억 원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리 - 수원 간 복선전철화사업 등 광역철도 건설의 공정률이 저조하여 조기 개통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서는 1050억이 증액되어 편성되어 왔습니다마는 대구 지하철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공정률이 저조하여 조기 개통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에서 추경안에서는 500억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는 300억 원 감액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여수 엑스포 지원을 위해서 보다 시급한 순천 - 여수 구간 철도개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억 원 감액을 해서 순천 - 여수 철도개량 사업에 3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오리 - 수원 복선전철사업은 500억 원 증액이 정부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200억 원을 삭감해서 2014년 아시안게임 및 송도 신도시 등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동 구간의 연장선상에 있는 수원 - 인천 구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200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그 돈을 수원 - 인천 복선전철사업에 증액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심사 내역에 대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또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은 그때 이야기하시면 되고, 특별히 자료를 미리 준비를 시켜야 되겠는지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인기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의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는 자료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불분명하고 세부 사업 분야의 추진 방식 이런 자세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토해양위, 보건복지가족위 자료는 그런 세부 사항이 나와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보면 지금 수정이유나 이런 설명만 가지고는 그 사업이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인지 잘 모를 분야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도 그렇고.

○소위원장 이한구 이따가 차관들이 나오지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예, 나옵니다.

○최인기 위원 그 자료를 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권경석 위원 미리 주면 시간이 절약되고 안 그러면 꼬치꼬치 묻는다고요.

○최인기 위원 미리 주면 좋지요.

그리고 이 자료 자체가 그렇게 되면 그것 하나 가지고 보면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안 돼 있으니까 오후에 하면 어차피 차관들 나와서 자료 그냥 설명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 미리 볼 수도 없잖아요.

○류근찬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형식에 일관성이 안 보여요. 예컨대 유기질비료 지원은 보면 증감액이 얼마입니까? 620억이지요? 620억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해 달라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상임위원회는 안 보이는데요?

○류근찬 위원 정부안이에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정부안입니다.

○류근찬 위원 정부안인데 이것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액요청 없어요? 있을 텐데……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저희가 어제 밤샘 작업해서 만든 것인데요, 혹시 누락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철 위원 검토보고에서 감액이라는 것은 뭐예요? 뭘 감액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620억 전부를 감액하자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아닙니다. 일부 조정을 해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지장이 없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이게 뚜렷하지 않네, 그렇지요?

○**최인기 위원** 이게 불확실한데 아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김광림 위원** 굉장히 급하게 한 것 같은데 이것 좀 물어봅시다.

여기서 몇 가지 짚어 봐야 되겠는데 종합심사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얘기 그다음에 검토보고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 거기에서 감액이라는 것은 조정액이고, 마이너스 조정으로 조금 조정하자, 의견이 그런 것이지요?

○**권경석 위원** 이 구체적인 내용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카피해 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자료를 깔아드리겠습니다.

○**이사철 위원** 아니, 이것은 위원들의 주장에 대한 검토보고를 한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주장을 하셨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다……

○**이사철 위원** 위원들 주장과는 별개로 만든 검토보고 내용이구만요?

○**권경석 위원**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게 세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제일 먼저 우리가 제안설명 듣고 나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을 다 듣잖습니까?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검토보고라고 한 그 항이 바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자료 안에 들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상임위에서 우리가 검토보고한 이후에 의견을 냈는데 그때 의견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정책질의할 때 또 제시한 게 추가됐기 때문에 세 가지 유형이 여기에 들어 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깔 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상임위에서 넘어올 때도 의견이 따라 넘어오잖아요? 거기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줘야 돼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자료를 그날 부로 의원실에 갖다 드리라고……

○**류근찬 위원** 그런데 무슨 비목이나 항목이 있으면 증액을 요청한 이유를 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심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걸 다 드리라고요. 이따가

그걸 좀 다 준비해 주고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다시 깔아드리겠습니다.

○**최인기 위원** 방에 갖다줘도 자기 소속 상임위원회 자료인지 예결위 자료인지 몰라요. 구분을 잘 못하고 바쁘니까 못 봐요.

○**소위원장 이한구** 다른 것 요구할 사항 있으세요?

○**이사철 위원**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가령 오리-수원 간 복선전철 이렇게 해서 주장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초라는 것은 얼마라는 것이고……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08년도 예산이 당초입니다.

○**이사철 위원** 그다음에 증감액 B는 뭐예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증감액 B는 추경예산하고 정부가 제출한……

○**이사철 위원** 이것 더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상임위원회에서는 200억 원을 감액하자?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예.

○**이사철 위원** 그러면 이 상임위 주장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저께 의원님들 방에 배포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자료에 있습니다만 오후에 또 깔아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대략은 자료가 준비할 것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또 우리 종합질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준비를 어떻게 시켰느냐 하면, 정부로부터도 자료를 달라고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한테도 요구를 해봤어요. 아마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되는데로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다 깔아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획재정부 쪽 이것도 빈칸이 너무 많잖아요? 빨리 해서 주면 좋겠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배국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특히 이것은 내가 좀 불만인데 7번 보니까 강 장관이 답변하는 중간에 OECD 국가 70%가 추경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2005년, 2006년 자료를 갖다 놓고 얘기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지요? 이것은 위증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근 자료로 내놓든지, 최근

자료가 없으면 이것은 별 유효한 증언이 못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배국환 예.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니까 매사를 확실하게 좀 해 주면 좋겠다, 다른 거는 나중에 보완되는 것 보고요. 하여튼 그렇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것도 짚어드렸나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예.

○소위원장 이한구 그리고 한전에 보조금 줬느냐 말았느냐 이 자료도 여기 있는데 한전하고 가스공사 이런 데는 준 적 없대요.

그래서 1차 오일쇼크 때, 2차 오일쇼크 때 주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가가 올라간 실적하고 가격이 올라간 정도하고를 비교해서 자료를 다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이번에 유가가 올라간 비율, 그 자료를 보시고 그것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그것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자료들을 봐 가면서 토론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에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한구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까 보완하라는 자료는 다 보완이 됐나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서는 다 밑에 배포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SOC 자료라든가 그 상세내역은 해당 부처에서 설명할 때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교과부부터 아까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들을 교환하는 것으로 할까요? 여기 문제없는 것 같으면 질문할 것도 없겠지요, 그렇지요? 일단 1, 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참, 정부 측에서 오신 분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황인철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지원국장 황인철입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뒷부분이 잘 안 들리는데……

○이사철 위원 뭐라고 그러셨어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황인철 황인철 교육복지지원국장입니다.

○류근찬 위원 국장이 나왔어요?

○최인기 위원 교육복지지원국장…… 교과부예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황인철 예, 옛날로 치면 보통국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 총괄을 하고 있어서 오늘……

○김광림 위원 장차관님 사정을 얘기 좀 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황인철 오늘 장차관님 일정 때문에 못 오셔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런데 우리 소위에 원래가 국장이 나와서 앉아서 참여한 적이 없는데?

○최인기 위원 차관이 와야 되는데.

○소위원장 이한구 차관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황인철 지금 코엑스에 국제회의가 있어서 그쪽에 참석해서 불가피하게……

○우제창 위원 다른 상임위 먼저 하시지요.

○최인기 위원 그래, 차관이 온 데를 먼저 하고……

○소위원장 이한구 다른 차관이 와 있나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황인철 지금 코엑스 쪽의 행사를 하고 있어서 아직 오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류근찬 위원 아니요, 그거는 얘기가 안 되지. 이것은 지금 추경을 해야 되는……

○최인기 위원 코엑스 행사가 무슨 중요한 건지는 모르지만 예산보다 더 중요한 회의인 모양이구먼.

○권경석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신 좀 차려야 되겠어요. 미리 위원장님한테 사유를 이야기한다든지…… 앉아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황인철** 죄송합니다.

○**권경석 위원** 차관이 안 나온 적이 없고,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실장이라든지……

○**최인기 위원** 사전에 보고를 해야지.

○**이사철 위원** 장관이나 차관이 못 나오면 미리 얘기하는데 교과부차관이 이상한 양반이구먼. 사전에 얘기가 전혀 없이……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차관님께 연락을 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황인철** 예.

○**소위원장 이한구**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들어오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국장 황인철**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차관님, 일단 자기소개부터 하시고 다른 의견을 들으시면……

차관이 1차관입니까, 2차관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정학수입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류근찬 위원님은 농림수산쪽에 질문하실 것 없을 것 같고, 그렇지요? 있어요?

○**류근찬 위원** 아니요, 질문하세요.

○**우제창 위원** 먼저 정부 설명을 듣지요.

○**소위원장 이한구** 아까 우리가 대충 봤는데 또 설명을 들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최인기 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줘야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직접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것 설명 다 들었다고 보고……

○**우제창 위원** 얼마 안 되는데……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걸 갖고 했잖아요. 이걸 갖고 해서 혹시 의문이 있거나 이러면 차관한테 질문하시고 그렇게 토론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최인기 위원** 내가 좀 물어볼게요.

화학비료 가격 안정,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어차피 정부하고 농가하고 이것을 나눠서 분담하자는 그런 얘기인데요.

먼저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환경 문제 또 유기농을 권장하면서 농림부의 방침은 지금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기본적으로 저희가 화학비료는 과다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많이 쓰기로 다섯 번째이

고 일본보다도 우리가 3분의 1을 더 쓰고, 그래서 저희는 화학비료는 줄이되 유기질비료를 늘리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잡고 있고, 과거에는 화학비료에 대해서 차손보전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차손보전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해 연말, 대개 화학비료는 연말에 가격 조정을 하는데 연말에 24%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비료가격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24% 정도는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유기질비료를 늘리자 이래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154만t을 200만t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20kg 포대당 700원을 116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항, 유기질비료 지원에 620억이 소요된 것이고요. 200만t 중에 지금 140만t이 사용이 됐고요. 가을에 원예작물이나 등등으로 해서 60만t을 쓸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 6월에 그동안 인광석이나, 지금 비료는 고유가보다는 인광석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광석 가격이 폭등을 해서 무려 63%를 화학비료 가격을 올려야 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농가가 63%를 부담하게 되면, 대개 1ha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비료값이 한 23만 원이었던 게 47만 원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다 부담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그래서 농협과 업체에서 40%를 부담하고 정부가 30% 부담하고 농가는 30%로 부담을 줄이자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301억이 요구된 겁니다.

○**최인기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10% 농가 부담을 낮추고 정부 부담을 올리자 그렇게 의견이 나온 겁니까?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예, 상임위에서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최인기 위원** 그다음에 살처분 보상금은 지난해 브루셀라, 결핵하고 그 부족액을 계상한 거예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은 매년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셀라나 돼지 열병 이런 질병,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하는 용도로 본예산에 700억 원을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초에 AI가 발생해서, 사실 AI는 저희 나라에 안 생겼으면 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세 번째로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 편성된 데서 우선 670억을 집행하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브루셀라나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용도 외에 살처분 보상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억 원을 반영한 겁니다.

○**최인기 위원** 그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비는 지금 몇 % 주고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100% 하다가 농가의 도덕적 해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80% 또는 60%까지…… 작년에 60%까지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브루셀라 발생률이 과거에 2% 정도 되던 게 지금은 0.5% 정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때 정부가 농가에게 약속한 것이 낮아지면 다시 올려 주겠다 그래서 금년에 쇠고기 대책의 일환으로 80%까지 다시 회복한 상태입니다.

○**최인기 위원** 다음에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엔진을 교체하는 겁니다. 기름을 적게 쓰는 엔진이요.

○**최인기 위원** 그런데 대상 물량이 확정된 게 있어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좀 반영을 했는데 올해 되면 내년 예산에 좀 감액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최인기 위원** 그리고 연근해 어선 감척, 이것은 지난번에 구조조정한다고 그래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전체 대상 물량 중에 몇 %나 지금 감척하는 거예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이게 비율보다는 척으로 해서 중기계획을 가지고 하는데요, 원래 금년 예산에도 연근해 감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유가 때문에 출어하기가 어렵고 또 많이 출어하다 보면 척당 어획량이 적기 때문에 올해 계획을 앞당겨서 하자 해서 기존 예산에 연안어선이 2000척, 근해어선이 84척입니다. 그것을 연안에서는 1500척, 근해 400척 이렇게 해서 총 1900척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최인기 위원** 그다음에 한미 FTA 농식품 소관 집행 유보된 것, 자료를 내가 못 받아서 그런데 사업 내용이 대강 어떤 것들이예요? 세부 자

료가 여기 있습니까? 유보된 사업의 내용, 우리 국회 예결위에서 만든 자료에는 없고 여러분이 제시한 자료 중에 어디에 돼 있습니까?

○**류근찬 위원** 상임위원회에 놔둔 자료 없어요?

○**최인기 위원** 이겁니까?

○**소위원장 이한구**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줘야 되니까 카피를 해서 돌리세요.

○**최인기 위원**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기술개발,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총 30개 사업이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 4개 사업은 소득보전과 폐업 지원인데요. 농업 쪽하고 수산업 쪽, 이것은 FTA가 발효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현 단계에서 FTA 비준이 안 된 상태에서 집행이 어렵고요, 나머지 부분은……

○**최인기 위원** 이게 2008년도 예산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을 처리하면서 예결위에서 부대조건으로 한미 FTA 비준이 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2월에 비준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고려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축산 관련 대책, 경쟁력 강화 대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인기 위원** 25번 소득보전직불제, 이것은 수산 분야에 대한 얘기인가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아니요, 두 가지 다 들어 있습니다. 25번은 수산 쪽이고, 26번 폐업 지원도 수산 쪽이고, 15·16번은 농업 쪽입니다.

○**최인기 위원** 축산은 어디에 있어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축산은 농업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인기 위원** 아니, 축산……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10번 축사시설 현대화.

○**최인기 위원** 소득보전은 지금 축산은 제도화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지금 현재까지는 한·칠레 FTA를 대상으로 해서 FTA 이행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수……

○**최인기 위원** 과수 관계, 그것을 빨리 넣어야 된다고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하면서 FTA

이행 특별법 개정안도 같이 처리가 돼야 됩니다.

○**최인기 위원** 저는 대강 의문사항만 물어보고요, 증액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정부 내에서는 이미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경석 위원** 우선 우리 수석전문위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관례적으로 보면 종합심사 때 제시된 의견이나 상임위에서 올라온 의견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관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앞으로 참고하시고요.

우선 유기질비료 지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차관한테 묻습니다.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본예산은 그 단가가 20kg당 700원 해 놓았다가 실제로 집행은 1160원으로 지원 조건을 임의로 변경해서 집행했다 그런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 면에서 볼 때도 대체 효과가 약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추경 예산안에 200만 t을 보조할 계획으로 안을 가져왔는데 이런 집행 가능성 등등 이렇게 판단해 보았을 때 대체 효과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 검토보고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최인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살처분 보상금, 이것은 현재 브루셀라병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 보상금 하고 본예산 예산을 감안할 때 예비비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예,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추경을 요구한 전액을…… 그런 지적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연근해 어선 감척, 이것은 실집행률이 9.1%로 매우 저조한데 연내 집행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반영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감액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답변해 주세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유기질비료를 단가를 700원에서 1160원으로 올린 것은 사실 인

수위에서 그때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게 24% 비료값 때문에 농가경제 안정 대책으로 애초에 이미……

○**권경석 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 부분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타당하게 집행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 보라 이 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700원이면 보조율이 한 18% 됩니다. 그래서 보조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유기질비료 사용을 적게 한다, 특히 논인 경우에는 유기질비료 사용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것이 효과하고 관련이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700원 단가로 보조했을 때는 유기질비료 사용량의 한 15%만 수도작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러면 화학비료가 결국 많이 쓰여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좀 올려 주어야 수도작도 가능하다 해서……

○**권경석 위원** 그것은 안다 이 말입니다. 본예산 책정할 때 700원 해 왔다가 원래 예산 승인할 때는 법률적 효과를 갖는 예산안에 대해서 왜 임의로 단가를 올렸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추경을 할 때 그때 그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단가를 조정해야 되는데 통과된 단가 기준을 왜 임의로 변경해서 했느냐 하는 게, 심하게 말하면 그것은 위법 행위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보란 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저희가 수도작의 사용 비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성에 의해서 단가를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수도작에도 약 한 30%를 유기질비료를 쓰고 있습니다.

전체 당초 기대했던 것 같은 효과는……

○**권경석 위원** 미리 예견해 가지고 반영해야지, 처음에 700원 했다가 말이지, 예산안에는 700원으로 되어 있는 걸 1160원으로 임의 지출을 한다면 이게 변태 지출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었습니까, 내부적으로?

이거 잘못하긴 잘못된 거지요?

○**김광림 위원** 금년만 그런 겁니다, 매년 예산 단가하고 집행 단가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아닙니다. 즉 700원을 하다가 올해 올려 준 겁니다.

○**김광림 위원** 그런데 700원 하다가 올려 줬는데……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앞으로는 계속 이 단가를……

○**김광림 위원** 아니, 포당 700원 하던 것이 1160원 했다 그러면 한 50~60% 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지금 집행하는 것 뒤에 보면 45만 7000t 물량 늘리고, t당 가격을 2만 3000원에서 5만 8000원으로 100% 이상 올렸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50% 정도 올린 걸로 설명되는데 뒤에 자료 보면 100% 넘게 올렸거든요. 차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포당 가격이 700원에서 1160원 같은 대충 보면 한 55% 정도 올렸는데 산출 내역을, 뒤에 가 보면 45만 7000t 물량 올리는 것하고 t당 가격이 2만 3000원에서 5만 8000원으로 한 130~140% 올렸거든요. 그 차이는 뭐예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

○**김광림 위원** 농림부 가져온 자료 14페이지 보면 설명하고 자료하고 내용이 안 맞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가격은 이번에 처음으로, 매년 예산 단가하고 집행 단가하고 차이 나는 거 아니지요, 처음으로 한 거지? 그렇지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아닙니다. 저희가 단가 인상만 올해 한 것이지……

○**김광림 위원** 처음으로 한 거란 말이지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계속 유기질 비료 공급을 했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게 그걸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예?

○**권경석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요.

○**권경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하고 앞으로 조치 계획을 얘기한다든지 해야,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분석해 가지고 보고 다 했다 말이에요. 우리위원들이 다 들었어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그때 농가들이 비료값 부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어서 그때 정부 내에서 인수위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권경석 위원** 그런데 앞으로 답변할 때 ‘인수위하고 어떻게 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아니,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했

다. 인수위하고 협의했다’ 그런 소리를 왜 여기 와서 합니까?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그다음에 대체 효과가 없다, 미약하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대체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로 그동안 유기질비료를 원예작물에 좀 많이 사용하고 수도작이 좀 사용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가를 이렇게 조정하고 함으로써 예년에는 15%, 수도작의 한 15%만 유기질비료가 쓰여졌는데 이럼으로써 30%까지 지금 상황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작도 화학비료를 줄이고 유기질비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러면 대체 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지 모르겠는데 충분한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저희가 수도작, 쌀의 비료 사용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그런 쪽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권경석 위원** 있다고 본다?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예.

○**권경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그리고 살처분 보상 부분은 당초에 AI 살처분 보상금은 2003년, 2006년에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어요.

사실 그때 그것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브루셀라나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살처분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예산에 넣고 AI 살처분 보상금은 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비 사용하는 게 여의치 않아서 일단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먼저 쓰고 나서 나중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 내에서 의사 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비비 사용은 ‘브루셀라보다는 AI를 사실 썼어야 맞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 편성된 것을 AI에 써 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금을 못 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브루셀라 이런

것은 예비비보다는 추경에 반영해서 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근해 감척은 지금 집행이 그때 좀 부진했던 것은 새로 보상 기준을 정하는 것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이 늦게 나와서 집행이 적고 이월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이번에 했는데 연안도 약 한 3700척, 근해에 한 1100척 정도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요.

본예산에 2084척도 약 한 2700척이 신청해서 그 중에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률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될……

○권경석 위원 그 앞에, 금년 말고 이것은 오래 전부터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예,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어선 감척 집행률이 매 연도별로 얼마였습니까? 재작년하고 그 전에, 근간 2~3년 사이에 집행률이 몇 프로 정도 됐어요?

○농림수산식품부수산정책관 임광수 전체 어선의 약 10%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아니, 자금 집행률……

○권경석 위원 전체적으로 실집행률이? 감척 목표액의 실집행률이?

○농림수산식품부수산정책관 임광수 목표액 대비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권경석 위원 100%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농림수산식품부수산정책관 임광수 예, 거의 다 했습니다.

○권경석 위원 이건 금년에만 좀 늦어졌다 이 말인가?

○농림수산식품부수산정책관 임광수 예, 갑자기 지금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권경석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수요가 늘었다고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집행이 늦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용역 주면서 용역 결과 나온 것 보고 10월달에 평가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약간 이월이 된 거고 그 후부터는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하지만 아까 그 대답을 해 줘야 되지.

포당 700원에서 1160원으로 올렸는데 왜 t당으

로는 2만 3000원에서 5만 8000원까지 올라가지?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자료를……

○김광림 위원 뒤에서 한번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브루셀라병은 지금까지 발생한 것은 싹 다 정리를 다 하고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해 가지고 381억을 계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발생하지 않으면 안 쓰는 거지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700억 중에 670억이 AI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브루셀라 것을 지급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광림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500억 추가로 반영한 게……

○김광림 위원 추가로 다 해도 농림부 자료에 보면 전부 다 정리하고 AI든지 브루셀라라든지 다 정리하고 381억 원, 기타 12억하고 393억은 지금부터 발생할 것으로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되었는데 하고, 그다음에 연근해 안 이거는 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수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이거 보니까 작년에 1294척 했거든요. 내년 2009년도의 요구가 1295척, 그다음에 대충 중기재정에 보면 연 1300, 400척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3688척 하겠다고 하거든. 300%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다 됩니까?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우선 유기질 비료 숫자 말씀드릴게요.

2만 3000원이라는 것은 700원에서 1160원으로 올린 t당 50포니까 460원×50포 해서 2만 3000원이 나온 거고요. 5만 8000원은 1160원을, 그러니까 물량증가 계산할 때는 오른 단가 곱하기해서 5만 8000원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 예산에 기존 예산 있고 추경 늘어난 것이, 154만t과 46만t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4만t의 예산이 7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연초에 집행하기 때문에 460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이 t당 2만 3000원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2만 3000원이라는 근거는 460원×50포 이렇게 해서 2만 3000원인데 그 460원이 700원에서 1160원으로 올려준 것이고요.

그 위에 있는 자료는 이제 물량증가분, 45만 7000t을 늘리니까 그걸 단가를 1160원으로 하니까 5만 8000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광림 위원 연근해 어선 1200척 하다가 3800

척 하는 것은 다 금년에 할 수 있나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예, 금년에 수요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수산정책관 임광수 고유가시대 맞기 전에는 원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갑자기 이런 고유가가 오니까 그 요청이 쇠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옛날에는 수요가 별로 없었어요?

○농림수산식품부수산정책관 임광수 수요가 있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요. 갑자기 기름값이 너무 뛰니까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가 없어서 감척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게 언제적 통계예요? 몇 월 기준이에요? 그러면 다시 바꿔 얘기하면 원유가가 안정을 되찾아 가면 신청했던 사람 빼가는 수도 있는 것 아니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감척사업은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어자원이 동서해안 다 공히, 남해안도 그렇고 어자원이 고갈되면서 어자원에 비해서 선박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척을 해 나가는 건데……

○류근찬 위원 그러니까 문제 접근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그래서 이제 연차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가는데 ‘지금 고유가 때문에 출어해 봐야 수지가 안 맞으니까 이번 기회에 감척을 앞당겨서 해 달라’ 이 수요들이 지금……

○류근찬 위원 대기수요가 그래서 된다 그 얘기예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예, 그래서 저희가 추경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추경에 1900척이 들어갔는데 연안이 1500척, 근해가 400척이거든요. 그런데 연안만 해도 3700척이고 근해가 한 1100척의 수요가 지금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런데 그 가격은 어떻게 결정해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가격은 최저가 입찰로 합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이게 조금 더 가면 가격이 더 떨어지겠네?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감정평가 해

가지고 최저가 입찰하지요?

○농림수산식품부수산정책관 임광수 예, 현재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방법은 입찰제입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을 써낸 우선순위로 지금 감척을 해 오고 있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더 지나면 형편이 어려우니까……

○농림수산식품부수산정책관 임광수 지금 어민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 것은 ‘입찰제로 하니까 너무 저가로 평가가 된다, 그걸 정액제로 해 달라’ 이러한 요청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하려고 해? 그 제도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지금 연안어선은 최저가 입찰로 합니다.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장 적게 써낸 어가부터……

○소위원장 이한구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자주 입찰을 부쳐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입찰을 한꺼번에 하지요?

○농림수산식품부수산정책관 임광수 예, 한꺼번에 계획을……

○소위원장 이한구 전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신청을 받아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수산정책관 임광수 업종별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감척할 수 있는 계획이.

○소위원장 이한구 그런데 감척을 하는데 누구로부터 입찰을 받아요?

○농림수산식품부수산정책관 임광수 어민들로부터……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선주로부터요.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싼 거 위주로 먼저 사는 거예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예.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이거는 예산 늘려주면 비싼 것도 사겠다 이 얘기구만?

○이사철 위원 많이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한구 결국은 비싸게 사겠다는 뜻이구먼.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비싸게…… 그런데 지금 현재 어민들 불만은 최저가로 하니까 너무 싼 가격으로 결국은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감정평가해서 그 정액대로 해 달라 하는 것이 어민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근찬 위원** 그런 게 있네. 그러면 지금 어구별 이런 차등 같은 게 있어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예, 업종별로……

○**류근찬 위원** 예컨대, 이런 거지요. 지금 키조개 잡는 배 같은 것은 어업권이 제한돼 있으니 배 값이 비싸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예.

○**류근찬 위원** 키조개 같은 거, 남해에 있고 서해안에 있는 키조개…… 그거는 지금 배 1척에 보통 10억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감척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

○**류근찬 위원** 일률적으로 정해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그러니까 업종별로 감정평가를 따로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수산정책관 임광수** 그 기준을 따로 정해야 됩니다.

○**류근찬 위원** 망, 소위 어구 어망이 우리는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것별로 전부 스탠더드로 정해 놓은 거예요?

○**농림수산식품부수산정책관 임광수** 예,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거 있어요, 그 자료? 저인망이니 무슨 이런 망, 어구별로 스탠더드가 다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농림수산식품부수산정책관 임광수** 예, 기준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류근찬 위원** 한번 자료 좀 줘 보세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그리고 이 어업은 전부 허가가 되기 때문에 감척이 되면 그만큼 허가량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이 바뀌게 됩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거는 아는데 지금 내가 가만히 들어 보니까 자꾸 가격도 옛날하고 좀 방식을 달리 하려고 하는 생각이 지금 좀 물어 나오고 있고, 이거를 양을 얼마나 한꺼번에 입찰을 받느냐에 따라서 값이 상당히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까딱하면 예산 낭비

가 일어난다고.

○**김광림 위원** 늘 이거 하다 보면, 그러니까 폐업하고 배를 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 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류근찬 위원** 없애는 거지.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없애는 겁니다.

○**김광림 위원**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없애는데 얼마에 없앨까 하는데 지금 입찰 부쳐 나가잖아요. 없앨 때 그 없애는 현장에 누가 있나요? 옛날부터도 이게 문제되는 게 없었는데 또 하고 있고, 하고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류근찬 위원** 또 가지고 들어오지요.

○**김광림 위원** 이게 벌써 이 사업만 해도 20년 넘는 사업일 거예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그래도 뭐냐 하면 과거에는 문제가 됐던 게 감척도 하고 계획조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류근찬 위원** 새로 사업을 넣고.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그런데 계획조선을 다 없앴습니다.

○**우제창 위원**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류근찬 위원** 그러니까요, 불법 어로가 횡행하고 특히 이게 소형기선저인망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농림수산식품부수산정책관 임광수** 소형기선저인망은 일제 정리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연안어선은 이번 추경이 마지막입니다. 올해로 끝나고요. 근해어선만 내년 예산에 324척이 잡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아니, 그런데 연안어선도 원래 계획대로 하면 금년이 마지막이 아니지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니까 그런 것이 똑같은 문제예요.

○**우제창 위원**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예.

○**우제창 위원**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치 지원이 있어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올해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우제창 위원** 88억 원이에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예.

○**우제창 위원** 이것이 당초 정부 예산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없었습니다.

○**우제창 위원** 없었던 것을 상임위에서 해 준 것이지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예, 정부 예산은 내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가 때문에 어려우니까 상임위에서 그러면 올해 당겨 쓰고 내년 것을 좀 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우제창 위원** 또 같은 내용이 뭐냐 하면 농수식품부에서 아마 지정하는 것 같은데 유류구매자금 특별지원이 있어요, 26억 원.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예.

○**우제창 위원** 이차보전하는 것, 1%.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예, 저희가 2000억 원을 지원하고……

○**우제창 위원** 이 부분은 본 추경 목적하고 부합이 됩니다. 고유가로 인한 민생 대책하고 맞는데, 그래서 사실 신규라도 이것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물론 유류 관련이지만 절감장치 지원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내년 예산에 잡혀 있는 거고 3개월 당기는 건데, 이것은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상임위에서 갖고 왔을지라도 본 위원은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추경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급하게 합니까? 시급성이 있어요, 아니면 도대체 신규사업을 추경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차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추경으로 신규사업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지금 기준도 말이에요, 증액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억제하기로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 판입니다.

이것은 원칙을 위해서라도 삭감하는 것이 맞다……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이걸 그때 상임위에서 제기돼서 왔습니다.

○**류근찬 위원**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신규로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왔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네.

○**우제창 위원** 3개월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3개월만.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런 게 많다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재정부에서 의견을 한번……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지금 유기질비료 관련해서 보면 종합심사와 검토보고 중에서 어떤 것에 비중을 뒀야 될까 하는 그것을 위원님들이 좀 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상임위 또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때 나왔던 것보다는 지금 검토보고에 중점을 두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상임위하고 종합정책질의 때 이런 얘기가 나왔고, 특히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종합심사 때 증액 또는 원안 유지기 때문에 최소한 원안 유지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려고.

그 뒤에 있는 살처분 보상금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또 6쪽에 있는 연근해 어선 감척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까 미리 봐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저희들은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기질은 앞으로 더 비료 사용도 확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검토의견보다는 종합정책질의 또는 상임위 때 논의됐던 내용이 더 존중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제창 위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620억 원 아납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예.

○**우제창 위원** 620억 원이 추경에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증액돼서? 이것을 최소한 이 이상으로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원안 유지입니다.

○**이사철 위원** 620억 그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지금 현재 가을에 쓸 것 60만t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류근찬 위원**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이른바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써서, 목표를 논 같은 경우는 몇 프로로 잡고 있어요? 지금 한 10%쯤 됩니까, 수도작이?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지금 수도작에 한 30% 쓰고 있습니다.

○**류근찬 위원** 아, 유기질이?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예.

○**류근찬 위원** 그러면 목표가 얼마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저희가 유기질비료 사용 목표보다는 화학비료 절감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ha당 한 453kg인가를 쓰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본 수준까지는 낮추어야 된다……

○**류근찬 위원** 그러니까 수도작, 예컨대 60이면 60, 70 하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30%지만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그런데 유기질비료가 성분이 비료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 몇만t이다 이렇게 하기는……

○**류근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래 우리 농산 정책에 이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뭐냐 하면 친환경 유기질 시비를 하면 결과적으로 생산물의 단가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결국? 농산물이 비싸지는 것 아니냐고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지금 유기질비료가 반드시 비싸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화학비료가 급등하니까 유기질비료는 국내산 원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별로 안 올랐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러면 농산물 가격이 비싸지는 효과는 없어요, 유기질 친환경 농법을 계속 쓰면?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그 대신 저희는 기본적으로 화학비료의 절감이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유기질비료를 좀더 써야 되겠다, 또 두 번째로는 녹비작물 재배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운영을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자운영은 씨만 뿌리면 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겨울철에 노는 땅에 자운영을 대대적으로 심을 계획이고, 자운영을 심으면 비료 사용량의 한 70~80%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까지 아울러 쓰면서 화학비료를 일본 수준으로, 3분의 1 정도는 감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년 2, 3%씩 줄여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류근찬 위원** 그래서 유기질이나 친환경 농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면—농협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전체적으로 농산물 코스트가 올라가면 가뜩이나 우리 농산물이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농산물하고 경쟁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농산물 가격을 더 올려놓는 효과가 있으니 외국

농산물하고 과연 경쟁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고급 농산물도 필요하지만 외국 농산물, 저가의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중간치 코스트의 농산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예, 위원님 뜻 알겠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봐 줘야지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그러니까 유기질비료 사용 목표가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은 맥시멈 1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10% 이상 가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코스트가 높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층이 많지 않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래서 한우 같은 것도요 지금 비거세 수소 있잖아요, 이게 유일하게 수입 쇠고기하고 경쟁할 수 있는 고기라는 거예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예,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이 대책을 안 세워요, 정부가.

수입 쇠고기하고 경쟁할 수 있는 고기가 암소 등심, 시빨건 고급육은 가격 경쟁이 안 되잖아요. 유일하게 우리 한우 중에 비거세 수소 고기가 경쟁이 되는데, 이 비거세 수소를 육성하는 정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있어요? 이런 정책은 없는 거예요.

○**농림수산식품부제1차관 정학수**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는 개방이 된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고품질 쇠고기로 가야 된다 해서……

○**류근찬 위원** 어허! 고품질 쇠고기를 먹는 부류가 몇 프로입니까? 지금 전부 한우가 비싸니까 수입 쇠고기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 아니냐 말이야. 말은 좋지요. 그게 예컨대 국민 80~90%가 그걸 먹는다면 이야기가 되지만 지금 1인분에 2만 원, 3만 원짜리 쇠고기를 먹는 부류가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이거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소위원장 이한구** 됐어요. 지금 추경과 직결된 것만 해야 되니까……

○**류근찬 위원** 그렇시다. 미안합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이제 설명 다 들으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돌아가셔도 되고, 다음에 누구지

요? 지경부차관인가?

우선 신고부터 하세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지경부제2차관 이재훈입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우선 함포 사격부터 하셔야지요.

○**우제창 위원** (웃음소리) 함포 사격……

지경부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전체가?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에특이 3조 4000억입니다.

○**우제창 위원** 전부 다, 지경부 관련 소관 추경 예산이……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추경이 저희가 2조 8000억입니다.

○**우제창 위원** 2조 8000억이란 말이에요, 4조 9000억에서. 대부분인데.

여기 있는 이게, 사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신 심사자료가 자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세 번에 걸쳐서 소위 심사한 결과입니다. 뭐가 되었느냐, 저소득층 에너지시설 효율 개선이 있습니다. 그게 추경이 135억 아닙니까? 차관.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우제창 위원** 이것은 통과시키기로 한 것인데, 저소득층 에너지시설 효율 개선.

이것은 듣기만 하십시오, 저 혼자 갖고 있는 자료라서.

두 번째는 뭐냐면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 이게 500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우제창 위원** 이것도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일단 같이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연탄보조가 46억 원이 있어요. 이것 역시 통과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우제창 위원**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들어가 가지고 전력효율 향상사업을 175억 갖고 왔는데 여기에서 10억 스마트 전자계량기인가 뭔가 그것 빼놓고 165억 원을 통과시키기로 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2조 8000억에서 165억, 저소득층 연탄보조 46억, 그다음에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 500억, 저소득층 에너지시설 효율 개

선 135억, 이것만 통과시키기로 하고 나머지는 다 보류입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니까 830억만 빼고……

○**우제창 위원** 830억이 되나요? 700억이 되나요, 얼마가 되나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경위 예산소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다는 1차 사업별로 쪽 심의를 하면서 쟁점이 된 부분은 우선 제쳐 놓고 여야 간에 합의가 되는 부분만 한번 스크린하는 과정에서 지금 됐던 그런 부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를 안 하기로 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합의를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제창 위원** 합의를 왜 못 봤겠습니까, 3일 동안? 골치 아프니까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삼아, 제가 그걸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신 자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지금은 차관님 오셨으니까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어가는 게 낫지요.

○**류근찬 위원**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원개발펀드용으로 한 3000억 계상됐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게 지금 석유공사하고 광업진흥공사에 출자되는 금액 가운데 3000억 원을 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런데 이게 국회를 떠나서 정부로 보내지면 펀드조성작업을 그때부터 시작합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사실은 저희가 6월 8일날 추경 정부안을 확정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투자운용사들을……

○**류근찬 위원** 6월달?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6월 8일날 저희 추경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국회 통과에 대비해서 사전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운용사를 접촉을 해 가지고……

○**류근찬 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투자방향서를 저희들이 거의 다 받아놓고 있고요……

○**류근찬 위원** 그게 몇 번째 단계입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게 두 번째 단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는 운용주관사를 선정하는데 그게 저희가……

○**류근찬 위원** 한 서너 개 단계 더 남은 것 같은데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습니다. 운용주관사만 선정하면 12월에는 펀드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래서 이게 정부가 참…… 지난번 예결위 전체회의 질의에서도 정부의 의견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정부가 참 웃기는 일을 한 게 뭐냐면 가스공사하고 한국전력에 주기로 이미 약속을 했다, 그것 줘라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줘라. 정부가 국회의 권능이나 기능을 도대체 뭐로 아는 거예요. 지금도 적절한 얘기를 했는데 이미 6월 8일에 국회에 추경을 넘겨 놓고 작업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통과될 것으로 보고? 그겁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고……

○**류근찬 위원** 이게 우리 정부의 문제다 이거예요.

○**우제창 위원** 문제지.

○**류근찬 위원** 엄청난 문제지.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위원님, 한전하고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조건이 연료비 손실분의 50%를 정부안에 포함을 시켰고 나머지 50%는 두 회사가 자구노력을 통해서……

○**류근찬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물어 보니까 이미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는 답변 아닙니까, 지경부가? 펀드조성, 국회가 이것 보내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 안을 내놓자마자 그 펀드조성작업에 착수해서 비공식적으로 다섯 개인이 여섯 개 단계 중 두 번째, 세 번째에 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투자의향서 같은 것을 물어본 것이……

○**류근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우리 정부의 문제다, 지경부뿐만 아니라 어제 강만수 장관의 얘기를 들어봐도 얼굴 하나 까딱 안 하고 ‘우리가 한전하고 가스공사에 주기로 되어 있는 거라 할 수 없다, 달라’ 그것 아닙니까, 지금. 나

참 갑갑하더라고요.

○**소위원장 이한구** 제가 약을 좀 더 올리면 이게 만일에 통과가 안 되면, 주가가 왕창 내려갔으면 그때 반대한 사람이 책임질 가능성도……

○**류근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공갈치지 말라고까지 강 장관한테 한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에 대한 겁박이지, 겁박. 이것 안 해 주면, 국회의원들 너희 안 해 준 사람들 책임져라 그것 아니에요? 그런 정치가 어디 있느냐고. 아주 안하무인이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한구**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되고 나도 좀 질문했으면 싶은 게 지금 암만 설명 들어도 꺼림칙한 것이 자구노력 50% 한다고 그랬는데 자료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일 뿐 아니라 금액을 적어 놓은 게 얼마가 이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손실이 나는지, 어떤 섹터에서. 어떤 코스트구조이기 때문에 유가가 몇 % 올라가면 손실이 얼마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라, 지금. 그리고 장관이 회의장에 나와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자구노력 50%고 금액이 대충 얼마다 그러니 그것을 누가 믿느냐. 답답한 부분이, 해 주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까 류 위원님이 하신 것은 모든 위원들이 느끼는 부분이고.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기획재정부장관님께서 약속을 했다라는 것은 제가 어제 예결위에 안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기획재정부장관님께서서는 정부안에 편성이 돼 있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제창 위원** 아니, 약속을 했다는 얘기를 했고……

어제 지경위에서 한전 보고받았지요? 한전 김쌍수 사장도 ‘상반기 중에 정부가 주기로 했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 얘기를 했다고요. 정부가 약속을 한 거예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김쌍수 회장은 아마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국회 심의하고……

○**우제창 위원** 당연히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상반기 중에 정부가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아마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우제창 위원** 아니지, 정부가 지금 류 위원님 말씀대로 앞질러서 하고……

내가 강만수 장관하고도 뒤에서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의원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당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저한테 직접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본인이 얘기한 것을 여기서 차관이 안 했다고 변명하려고 하면 말이 되나? 안 되지요.

○**소위원장 이한구** 차관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제가 어제 예결위에 안 와 가지고 정확한 정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국회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확정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는 정부안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일을 하자 하는 그런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소위원장 이한구** 한 가지 더, 그러면 ‘보조금을 얼마 줄 테니까 가격은 올리지 마라’ 그 얘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우선……

○**소위원장 이한구** 가격 올리지 말라는 얘기는 했겠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아닙니다, 가격 올리지 말라는 얘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전기요금은 작년에 1조 9000억 연료비 손실이 있었고 금년 상반기에 1조 7000억 연료비 상승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치면 12%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금년 상반기에 유례없는 고유가 때문에 전액 다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정부안으로 편성해서 50% 정도는 정부 보조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나머지 인상분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을 봐서 차후에 인상 문제를 검토하자 하는 이야기였고 그런 과정에……

○**소위원장 이한구** 정부 내에서?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한전하고는 상의도 안 하고?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한전 쪽하고 물론

상의가 돼 있었지요.

○**소위원장 이한구** 지금 한전은……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아니지요, 정부안에 편성이 돼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두 회사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을 강도 높게 해 가지고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만큼의 자구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준비를 시킨 겁니다.

○**우제창 위원** 그러면 그게 보조금을 주겠다는 약속하고 뭐가 달라요? 같은 얘기지.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주겠습니까?

○**우제창 위원**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차관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자꾸 그러시네.

가스공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두 달마다 원가를 연동해서 주게끔 돼 있어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습니다.

○**우제창 위원** 홀수 달이라는 말이에요. 1 3 5 7 9 이렇게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우제창 위원** 1월까지 연동해서 가격이 나왔어요. 올렸다고요. 3월 5월 7월 쉬었다는 말이에요. 유보했다고. 그때 왜 유보했느냐, 정부가 올리지 말라니까 유보한 거예요. 거기 지침 같은 것 보면 국민 경제에 심각한 사항이 있으면 가격 연동을 유보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보한 거예요. 그러면 유가하고 연동된 원가가 90%인데 개들이 정부에서 어떤 약속도 받지 않고 3달 동안이나 세 번에 걸쳐서 유보를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건 무슨 소리냐, 정부가 어떻든 간에 나중에 가격이든 가격보조금이든 간에 주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유보를 한다 이거예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우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자꾸 토를 다는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가스요금은 2달에 한 번씩 연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부터 올리지 않았었는데 올리지 않은 근거는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지경부장관이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연동제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일단 유가가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동제에 의한 가격 조정을 좀 보류하라고 이야기해서 안 올랐던 것이고

요.

그다음 그러한 손실분이 상반기에 쌓여 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추경에 의해서 일부 보조하는 방안이 논의가 된 겁니다.

○**우제창 위원** 그러면 가스공사는 유보할 때 보조금이라든지 가격 인상에 대한 언질도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유보한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제가 아는 한에는 유보를 시작했을 때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보조를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이사철 위원** 유보를 처음 시작한 거는 언제예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금년 1월부터 유보를 시작했습니다.

○**이사철 위원** 그러면 그때 유보하면 가스공사에서 손실 부분은 어떻게 하나 무슨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그래서 지경부……

○**이사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 주겠다 이 얘기가 당연히 나가야 되지요.

차관님, 그래서 6월 8일날 이 추경안을 내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겠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뭘 얘기를 했으니까 가스공사에서 가만히 참고 있지.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보완하는 조항이 가스공급 약관에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지경부장관은 연동제를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두 번째 조항은 도시가스사업자는 그러한 경우에 차후에 그 연동제가 유보된 데 따른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지경부장관한테 요청할 수 있는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두 번째 조항을 믿고 연동제를 유보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제창 위원** 차관, 그러면 내가 미리 말씀하시니까 말할게요.

두 번째 약관이 있단 말이에요. 약관이 아니라 지침이지.

손실을 지경부장관한테 보전할 수가 있어요,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앞에 읽어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가격에 반영하여’,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우제창 위원** ‘가격에 반영하여’란 말이에요,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가격에 반영해서 주세요.

○**소위원장 이한구** 그게 아주 딱 명문으로 돼 있었어요?

○**우제창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격에 반영이 되어야지 보조금을 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권경석 위원**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격에 반영하여 보조 요청을 할 수 있다’면 ‘가격에 반영하여’라는 말의 의미를 과거의 선례와 법규의 그 내용을 제대로 잘 분석을, 해석을 해 가지고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무조건 없다고 부인하는 식의 답변은 우리 위원들의 납득을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대책 없이 동결을 어떻게 합니까? 대책 회의라도 했겠지.

그건 그렇고, 지금 이 부분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가격 인상 요인을 억제해 놓으면 결국은 나중에 적자가 누적돼서 경영이 부실화되거나 또 안 그러면 인상 폭을 높여야 되는, 그래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법 근거가 국가재정기본법, 보조금관리법, 예특회계법,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잖아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권경석 위원** 그런데 제일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우리 기획재정부 간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예.

○**권경석 위원** 보조금은 원래 경상보조는 안 하는 게 원칙이지요? 자본보조이지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꼭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권경석 위원** 그런데 원칙이잖아요? 자본보조가 원칙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좀 따려고 그러면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갖고 온갖 노력을 다해야

보조금 몇 푼 받는 게 현실인데 경상보조를 해 준 선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경상보조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법에 의한 그 근거가 없으면 자본보조가 원칙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그런데 보조금법에는 자본보조, 경상보조를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이라 하면 국가 이외의 단체 또는 기관에다가 지급하는, 어떠한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그 지원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런데 선례가, 경상보조해 준 예가 있습니까? 경상보조를 해 준 예가 많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 말고는 안 해 주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통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경상보조는 안 해 줍니다.

○**권경석 위원** 그게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장래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장래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과거의 사례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보조금의 운용 사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에 관련되는 내용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이건 자본보조이건 정부의 정책상 또는 저희 보조금법에 의해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또는 과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어떤 법 규정이 정해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어떤 경우는 미래를 위해서 또 어떤 경우는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한 보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어쨌든 지금 류 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본 위원이 경험하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보조금을 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는 예를

나는 보지 못했다, 특별한 법적인 경우 없이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아니, 운용을 그렇게 해 왔다 이거지.

그리고 명문상으로는 경상보조 주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사업계획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야 항상 보면 매칭 펀드로 지원해 준단 말이야,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다음에 과거에 손실 봤다고 보전해 주는 보조금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2개 다 해당이 돼요. 내가 보기에는 원칙적으로 금기 사항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관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법에 의해서 경상보조는 안 되고 자본보조는 된다, 또는 향후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는 보조가 되고 또는 과거에 대해서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기 때문에 구태여 법으로 명시 안 해도 운용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서 명문 규정이 없다고 보는 것이지, 양쪽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그것은 저희가 자료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과거에 대해서 손실분을 보전하는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만약 선례가 된다면 국회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거든요.

경상경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과거의 손실에 대해서 보조해 준다, 이런 것들이 한번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우려거든요.

이것을 해 준다 안 해 준다가 아니고—뭐 우리가 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거기에 대해서 우선 지금 자료가 없으면 그 자료를 챙겨가지고 나중

에 제출해 주세요.

○소위원장 이한구 류 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들었지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예.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그 자료는 나중에 보완해 주세요.

○이사철 위원 손실액 있잖아요? 순수하게 유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것이 정확합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습니다.

○이사철 위원 그것은 그쪽 주장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식경제부에서도 다 계산을 해보신 겁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다 계산해 본 겁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계산해 봤어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런데 자료를 내라는데 왜 안 내요?

○최인기 위원 계산했으면 그 자료를 좀 주라고, 어떤 계산을 했는지……

○이사철 위원 글썄, 그러니까 우리가 50%를 부담한다, 50%의 기준도 왜 50%인지 난 모르겠지만 그 액수가 이렇게 됐다는 무슨 근거자료를 한전이나 또는 가스공사에서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도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손실액이 맞다, 그런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닌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자료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그것을 주세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제창 위원 참고삼아서 똑같은 질의를 지경위에서도 우리 당의 이강래 위원님 또 한나라당의 원희룡 위원님이 지적하셨어요. 하셨는데 다 답변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최인기 위원 저도 해도 됩니까? 다 했습니까?

○소위원장 이한구 우제창 위원님이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최인기 위원 이재훈 차관, 고생 많습니다. 에너지 담당까지 하고 계시지요?

제가 어제 몇 가지를 예결위에서 얘기했는데, 우선 추경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해 가지고 한전·가스공사·광전공·석유공사 여기에 보조금 내지는 출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전부

법에 금지하는 원칙을 다 위배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 말이 좀 억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선 국가재정법 89조에, 여기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의 주장으로 만들어진 국가재정법에 원칙적으로 추경을 제한한, 그 국가재정법 법조문의 제목이 추경예산의 제한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야, 그것이 추경하라가 아니고.

그리고 1항에 1·2·3호가 되어 있는데 전쟁이나 재해, 대량실업이나 경기침체 그리고 법령 규정이 있을 때, 그런데 거기서도 2호에 ‘대량실업이나 경기침체 등’, 다른 데 해당이 아니고 ‘등’에 해당이 된다 그거야. 이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국가재정법의 정신에 위배되고 ‘등’이라고 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공기업에 대해서 보조금과 출연을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추경 금지 원칙에 맞는 것이냐, 간접적으로 유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해 가지고 경기침체 우려가 있다 하니까 해당이 된다…… 저도 여러분처럼 정부 내에서 장관도 몇 번씩 하고 한 사람인데 그것은 상당히 억지 논리다, 근본적으로 국가재정법에 맞지 않는 논리다,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재경부장관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그냥 쥐도 된다, 그런 논리를 또 하더라도. 그래서 보조금관리법 9조에 보면……

아까 기획재정부 담당 무슨 국장이예요? 국장 어디 갔어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자료 찾으러 갔습니다.

○최인기 위원 그러면 오면 내가 얘기하고.

에너지 및 자원관리 특별회계법, 그걸 또 지식경제부장관은 계속 들더라고요. 그런데 에너지 및 자원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은 세입과 세출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용도에 쓰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지, 공기업에 대해서 에너지·자원사업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가능하다, 또 불명확하니까 에특법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근거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변칙적인 것이지, 국회에 예산 다 제출해 놓고 국회에서 법령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시행령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근거로 삼는 굉장히 억지, 변칙적인 방법을 또 한번 썼어요. 두 번째 변칙입니다, 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산으로 정한다’ 해서 지

급 근거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이 얘기하던데, 그러면 예산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정부가 방침으로 전기·가스를 올리지 마라, 손실은 정부가 보조해 주마 하는 약속을 했다 이거야, 약속을. 이 점이 중요합니다, 2차관.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최인기 위원** 정부의 누가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누구하고 언제 무슨 약속을 했느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누구하고 어떤 약속을 했느냐, 그리고 약속을 할 때 어떤 분석 자료에 의해서 했느냐, 그걸 제출해 주라고요. 예결위에서 했더니…… 전기위원회사무국장이 누구야, 여기 왔는가?

○**지식경제부전기위원회사무국장 염명천** 예.

○**최인기 위원** 그런 답변 자료가 어디 있어요? 나한테 온 답변 자료에, 이걸 답변 자료도 아니고……

여러분은 내가 정부에서 관료를 지낸 직업 공무원이라는 것을 잊었는지, 그냥 정치인들한테 하듯이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는……

사무국장, 그 답변 자료 갖고 왔어요?

○**지식경제부전기위원회사무국장 염명천** 예.

○**최인기 위원**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입니까, 그게? 정부가 이러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줬다……

언제, 누가, 어떤 근거로, 누구하고, 어떤 형식으로 약속했느냐, 예산으로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누가 약속을 했느냐, 그리고 약속을 한 그 기초 자료는 뭐냐, 그걸 지금이라도 제출해 주세요.

○**소위원장 이한구** 차관이 좀 답변하세요.

○**최인기 위원** 우선 말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리고 자료도 주고.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존경하는 최 위원님, 제가 어제 예결위원회에 참석을 안 해서 그 약속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제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국회의 통과를 전제로 미리 정부가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판단에는, 그리고 저희 지식경제부에서는 반드시 국회의 통과를 전제로 했고요. 통과가 안 되면 이것은 갈 수 없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다만 6월 8일날 추경안이 편성되면서 정부안에 두 기관에 대한 요금 보조가 포함이 돼 있으

니까 그게 국회 통과가 되면 집행이 될 테니까 거기에……

○**최인기 위원** 추경안에 들어가 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정부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마만큼 정도의 자구노력을 두 기관에서 미리부터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저희 지경부하고 두 회사 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최인기 위원** 여러분,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것을 추경안에 들어 있어서 약속이 오고 가서, 말로 오고 갔으니까 보조금 지급해야 된다, 약속했으니까 줘야 된다, 기획재정부장관 이야기가 그래요.

누가 약속했느냐, 한전의 누구하고 지식경제부의 누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누구하고 약속을 했느냐, 국회 통과를 전제로…… 그러니까 누가 누구하고 약속을 했느냐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요.

나는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국가 예산이라는 게 한두 장관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이렇게 1조씩 나갈 수 있는 것이냐, 보조금관리법이 그렇게 운용되는 것이냐, 기획재정부 어느 장관이 보전해 주마 하니까 그냥 그 말을 기초로 해서 1조씩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이냐, 국회에 대한 경시다, 나는 그런 고답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원인이 분명해야 되고 근거가 분명해야 되고 산출기초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1조 2500 산정을 한 기초를 왜 못합니까? 그것 제출해 주고.

두 번째, 내가 어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상반기 6개월 동안에 나는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하는데 받은 자구노력을 하고 받은 국고가 내준다고 하는데, 공기업뿐이 아니라 사기업도 마찬가지지요.

전년도까지 이익이 죽 발생하면 누적된 이익은 투자 형태로도 존재하고 자산으로도 존재하고 현금으로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존재하지요. 그러나 기업을 하다 보면 1년 정도라든지 2년 정도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경제 여건이 나빠지고 자기 장사 여건이 나빠지면, 유가가 올라가면……

그러면 당년도에 난 그 손실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곧바로 메워 준다, 그러면 내년에 이익이 나면 금년에 메워 준 것을 되받느냐, 되받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기업의 일시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곧바로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도 그렇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느냐, 전기 쓴 한전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고 석유로 쓰는 서민들, 서민들 광열비 쓰고 있는 데는 보조도 못 해주면서, 잘사는 사람들 비교적 중산층 이상에서 가스 많이 쓰는 거기는 보전해 주면서 석유 쓰는 서민들한테는 보전해 줄 제도가 있느냐……

이런 것을 비롯해서, 이미 한전은 보니까 이익 잉여금 26조 7000억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여러분도 인정해서, 사무국장 자료에도 거기 나와 있어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이미 투자가 됐나, 투자가 됐으니까 자산으로 남는 거지요.

그러면 이번 손실은 공채 발행, 한전채 발행에서 메우고 나중에 이익 날 때 되돌리면 되는 것이고 이미 자산 형태로 26조가 존재하는데, 기업이 과거의 이익은 자산으로 갖고 있으면서 유가 때문에 금방 손해나니까 정부가 보조해 달라, 이런 선례를 허용하면 여러분들 공기업 운영하다가 정부가 손실 날 때 보조 다 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도 보조금의 예산에 관한 법에 보니까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더라고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출연기관에. 사업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할 때 예외적으로 주도록 해 봤더라고요. 당연한 얘가지요. 국고보조금을 출연기관에 대해서 보조로 막 주면……

아까 권경석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경상 보조 당연히 안 되지요. 인건비 부족하고 이런 것을 대주면 되겠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 회사는 문 닫아야지.

그리고 법에 다 예외적인 규정을…… 돌고 돌아서 변칙에 변칙을 계속하는 거지, 어느 하나 명확하게 손해 난 공기업에 손실 보전을 한다고 규정된 바가 없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도 없어요. 손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공기업에 최초로 보전해 주자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무모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요, 그러면 과거의 발생 이익은 자산으로 투자가 됐다고 치면 앞으로 미래

발생할 이익을 대비해서 차입을 하든지 회사채를 발행하든지 이것을 메우고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 봤느냐, 어제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했는데 과도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한전이 한 해 투자하는 것이 대강 8조에서 10조를 투자한다는데 그중 2조 정도를 차입에 의해서 충당을 못 할 이유가 나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한전 자산이,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자산이 얼마입니까? 총 자산이 얼마예요?

○**지식경제부전기위원회사무국장 염명천** 66조입니다.

○**최인기 위원** 그중에 이익 잉여가 26조 7000억이고?

○**지식경제부전기위원회사무국장 염명천** (고개 끄덕임)

○**최인기 위원** 그런 회사에서 2조 얼마가 손해가 났다고 해서 곧바로 국고가 들어가는 이런 선례를 만들면 정부가 엄청난 부담을 앞으로도 지는 것이다, 그래서 채권 발행하고 내년에 이익나고 유가 떨어지면 채권 상환하고 기업이라는 게 이런 경영능력도 가지고 있어야지 손실 났다고 해서 법 규정도 없고 근거도 없고 선례도 없고 이런 데다 이것을 집어넣으면 굉장히 재정 운용에 기획재정부나 산업자원부가 어려움을 질 것이다……

그래서 어제 내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회사채 발행하고 정히 회사 이자 부담은 국고가 해 주는 것은 뭐 있을 수도 있을 일이다, 차입하고 사채 발행해서…… 어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지만 정부가 누가 누가 하고 약속했는지 또 산출 기초는 어떻게 한 것인지,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을 가지고 회사채 발행해서 충당하면 뭐가 문제인지 따져 봤더니 문제가 있더라, 따져 본 것을 좀 보여 달라, 그런 얘기에요. 어제 지경부장관이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계산을 해 봤더니 부담이 많아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 자료도 나한테 한번 쥐 보세요.

어제도 얘기했어요. 제가 지방공기업법부터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도 했지요, 내가 공기업을 한 사람이어서 그 자료를 좀 제시해 달라,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고 필요하면 여러분 얘기로 답변을 해 주면 좋겠다.

○소위원장 이한구 지금 혹시 답변할 수 있어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기관의 경영이 일시적으로 좀 나빠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려움을, 우려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는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한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은 창사이래로 처음 발생한 것이고, 그다음에 전기사업법에 한전의 요금에 대해서는 적정 연료비 플러스 적정이윤을 해서 요금 책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국내외 투자자들을 저희가 많이 모았습니다. 실제로 금년에도 한전은 자체적으로 한 11조 이상이 되는 돈을 차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기 위원 얼마, 3조?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11조 3000억 정도의 차입을 할 예정으로 있고……

○최인기 위원 과거에도 죽 했겠지요? 차입하고 상환하고 했겠지.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매년 차입을 해왔고, 그 차입과 당기순이익을 합쳐 가지고 매년 8~10조의 투자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한전이 요금 부담 때문에 투자계획을 축소하게 되면 그나마만큼 우리 송·변전시설에 대한 누수율 같은 것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효율 문제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차입을 조금 더 해서 그 후에 갚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그거는 외국에 대한 투자자의 어떤 신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투자를 위해서 차입하는 것하고 정부가 이렇게 요금을 보장하게 되어 있는데 요금을 못 올린 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순전히 정상적자 요인을 보전하기 위해서 차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전이 작년부터 요금을 전혀 못 올리고 있기 때문에 무디스 같은 회사에서는 한전의 신용등급을 재고를 좀 하겠다라는 이런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한전이, 물론 부채 비율은 좀 낮습니다마는 조금 더 차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 따른 정부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더

심각합니다. 현재 가스공사는 연료비 비중이 전체의 한 90%를 차지하는데 이미 부채 비율이 218%입니다.

지금 연료비 보전을 안 해 주게 되면 금년 연말경에는 한 300% 이상의 부채 비율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는 자체적으로 이미 금년 상반기에 한 3조 정도 차입을 해서 외국의 천연가스를 도입했고요, 연말까지도 한 11조 6000억 정도의 차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료비 부담에 따른 손실이 어떤 형태로든지 보전이 안 된다면 가스공사의 대외 신인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부채 비율도 300% 이상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그 약속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최 위원님께 말씀 올리면, 제가 어제 예결위에 안 왔기 때문에 그 약속의 의미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예산이 확정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정부 안에 그렇게 편성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약속 형태로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그렇게 약속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그 전달은 왜 했느냐 하면 정부가 이렇게 재정에서 손실분을 보전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두 회사도 어렵지만 스스로 자구노력을 준비해라라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그런 맥락에서 저희 지경부하고 두 회사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느냐는, 누가 언제 어디서 한 것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저희가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기 위원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가 잘못되면 그 이익에 대해서 주주도 같이 손해를 책임지는 겁니다. 저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의 주주가 책임져야지요, 정부도 비례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지만.

그래서 외국인이나 일반 주주들도 여기 손해에 대해서 분담을 해야지 이걸 그냥 국고에서 대줘

버리고 분담을 아니하고, 자구노력은 물론 하라고 했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길 가는 사람한테 “한전이 요새 손해났다니까 정부가 보조금 준다네”, 그 얘기해보면 열 명마다 “아니, 한전에다 국고보조 해 줘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마 여기 있는 여야 위원님들 입장도 나는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금 가지고 한전에다 보조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국민들의 사고입니다. 사고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걸 보조를 끝까지 하겠다는 걸 여러분이 지킨다면 이 추정안에 대해서는, 최소 우리 민주당으로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무슨 정책을 빨리 좀 찾아 주시든지 이래야 되지 않을까, 내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철 위원** 글썄,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손실액이, 아까 제 자료는 안 내놓으시면서 명백히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것, 순수히 그렇습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 올리면 연료비 상승분입니다.

○**이사철 위원** 공기업이고 또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인데 자기 경영을 잘못된 것도 아니고 급격스러운 세계 경제의 돌연한 변화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한 걸 회사채를 발행해서 책임을 지라든가 이거는 나는 오히려 우리 국가 신인도, 한전의 신인도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운영하는 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 재정부장관이 예결위에서 밝혔듯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격 인상시켜 줄 거냐, 아니면 이렇게 보조금이라도 줘서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 줄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거 안 하면 얼마를 올려야 됩니까, 우선 전기요금은?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해 인상 요인이 1조 9000억, 율로 따지면 6.7% 인상 요인이 있었고요, 전기요금은 작년 1월부터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조 9000억, 6.7% 인상 요인이 있었고,

금년 상반기에 1조 7000억, 5.5%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 12.5% 정도의 인상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사철 위원** 당장 12.5%를 올려야 돼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습니다.

○**이사철 위원** 거기다 내년에도 유연탄 가격이 상승해서 또 추가 상승 요인이 있다면서?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까지고요, 금년 하반기 인상 요인을 지금 저희가 추정해 보면 약 2조 7000억 정도의 인상 요인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그거는 저희가 유가를 120불로 전제를 했고 만약에 100불대로 가면 하반기에만 한 1조 9000억 정도의 추가 인상 요인이 또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 1월부터 요금을 동결했는데 상반기의 연료비 상승분이 8400억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반기까지 저희가 전망을 해 보면 유가 120불대를 전제로 했을 때는 2조 5000억, 유가 100불대를 전제로 했을 때는 2조 3000억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를 전부 합쳐 가지고 유가 120불대로 하면 전체 연료비 상승분이 3조 3000억이고 그것의 인상 요인은 57%가 됩니다, 가스의 경우에는, 유가 100불을 전제로 했을 때는 전체 인상 요인이 3조 1000억이여 가지고 그것이 50% 인상 요인이 됩니다.

○**이사철 위원** 자, 차관님, 지금 110불 정도 하고 있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오늘 두바이가 100불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사철 위원** 그래서 100불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조금을 이렇게 안 주면 어느 정도 올라요?

국민들이 알기 쉽게 답변을 해 주세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100불이라고 치면.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는 100불로 기준하면 연말까지 해서 18% 인상 요인이 있고요, 가스는 연말까지 해서 약 50%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이사철 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이 없으면 가스 쓰고 전기 쓰는, 특히 전기는 온 국민이 쓰는 거고, 물론 저 산골에는 지금 가스가 보급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 사람들은 대부분 가스를 쓰고 있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이사철 위원** 그걸 선택의 문제로 분명히 얘기하셔야지, 우리 야당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야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래서 존경하는 이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전 같은 기관에 어떻게 보조금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인상 요인, 적어도 금년 상반기까지 해서 12% 인상 요인을 바로 현실화할 경우에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이 누구겠느냐, 우리나라 소득계층별로 해서, 십분위를 이렇게 해서 각 분위별로 소위 연료비 부담 비중을 따져 봤는데 최상위계층에 있는, 예를 들면 월 720만 원 이상의 소득계층이 갖는 에너지 지출 비중은 1.4%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최하층에 있는, 월 소득이 133만 원 미만인 십분위의 제일 밑에 있는 계층의 연료비 지출 비중은 14%나 됩니다.

이럴 경우에,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일시에 시켜 가지고 12% 정도 올리게 될 경우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계층은 소득이 적은 분일수록 훨씬 많이 타격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것을 현실화하기 보다는 일부는 극히 예외적이지만 보조를 통해서 좀 현실화시키고, 나머지는 자구노력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요금 인상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사철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하나의 기업 아니요? 외국인이 또 지분을 갖고 있는데, 손실액의 반은 너희들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지요? 손실액이 그 기업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습니다.

○**이사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반은 우리 정부에서 해결해 줄 테니 가격 올리지 말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못 올리게 딱 정지를 시키고, 반은 기업에서 책임지게 하고 반은 우리 정부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사철 위원** 그것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것은 두 기업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이고……

○**이사철 위원** 사기업이라면 이것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자구 노력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지금 한전의 경우에는 약 29% 주주가 외국인들입니다. 가스공사는 약 38%가 일반주주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한전에, 뉴욕 증시 같은 데 가서 DR을 통해서 해외 차입을 할 때 요금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사업법 조문을 보여주면서 요금은 사실은 적정 연료비 플러스 적정 마진을 해서 한나라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상황 때문에 정부가 요금 통제를 하면서 주주들한테 손실을 입힌 데 대해서는 오히려 저쪽 투자자들이 정부한테 불만을 가질 소지가 있는 거고요.

가스요금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연동제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일반주주들이 일부 증시 상장을 했을 때 주식을 샀는데 정부가 그 연동제를 유보시킨 것 자체에 대해서는 주주 손실이 오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철 위원** 그렇겠지요. 연동제로 가격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줬는데 그것은 묶어 놓고 받은 너희들 책임지고 받은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는…… 지금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습니다.

○**이사철 위원** 그것 자체도 나는 상당히……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조치일지는 몰라도 가스공사도 하나의 기업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전기요금은 안 주면 18% 오르고 또 가스요금은 50%를 올려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정부안대로 보조금을 주면 어느 정도 인상 요인이 있습니까, 금년 말에?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사실은 100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 인상 요인이고요, 연말까지.

○**이사철 위원** 3%만 줄이는 거예요, 결국?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에 지금 되어 있는 8250억을 주게 되면 2.75% 정도의 인하 요인이 생기고 가스의 경우 4200억을 보조해 주면 3.4% 정도의 인하 요인이 생깁니다.

○**이사철 위원** 좋습니다.

전기는 3% 주는 15%, 가스는 아까 50%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보조금 주면 얼마나 올려야 됩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46% 정도를 올려야 됩니다.

○**이사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총괄국장이 하실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러면 국민경제 팬찮아요? 연말에 전기요금 15% 오르고…… 18%는 둘째치고 전기 15% 오르고 가스 46% 오르면 팬찮습니까, 우리나라 물가 관리나 경제가?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저희들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당장에 이런 기초적인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면 다른 물가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난다는 것은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겠지만.

○**이사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우제창 위원**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하고 돌아가면서 하시지요.

지금 계속 한전하고, 지경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도 그렇고 가스공사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보조금을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해서 안 하면 하반기에 올릴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 지금 상반기에 대한 보조금 아닙니까, 지나간 것에 대한? 하반기에는 어차피 올린다고요. 올리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15%도 올리게 되어 있고 46% 올리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추가적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3%, 2.7% 이렇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부분은 야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이것 상당히 가소로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전하고 가스공사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 논리예요.

첫째, 가스공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가격연동제가 두 달마다 되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프랑스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일본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스공사의 반기 감사보고서를 봤습니다. 봤더니 이미 미수금으로 처리해 가지고

이것을 이익으로 잡아 댔어요.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프랑스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스공사는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쥐야 된다고요. 제가 봐서는 쥐야 되는 겁니다. 안 줄 수가 없다고요.

이것이 왜냐 하면 유가에 관련된 반영이 90%입니다. 이것 안 주게 되면 가스공사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사철 위원** 보조금 형식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우제창 위원**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어쨌든 주어야 되는데 주는 방법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보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조금을 주는 것은 최인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조항·규정도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반드시 가격에 반영에서 지식경제부장관한테 보조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가스공사는 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쥐야 되는데 결국 가격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가격을 장기로 늘어뜨려서 가야 된다, 그래서 가격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을 덜컥 주게 되면 나쁜 선례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오히려, 지경부가 얘기하는 것과 반대로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특히 야당이 더 안 좋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것이 가스공사의 상황이에요.

한전 상황은 좀 다릅니다. 한전 상황은 존경하는 최인기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한전은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한전은 항상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은 아주 장기적인 퍼스펙티브(perspective)를 가지고 봐야 되는 회사입니다. 이것 당장 상반기 얼마 했다 그래서 보전해 주고 뭐 하고 이럴 회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전이라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장기로 봐야 되는 회사다.

한전이 역사상 적자가 난 적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적자 난 적 있어요. 들여다 보십시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스패(span)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장기를 가지고.

그런 것에서 한전 문제를 해결해야지 아까 말

쏟드린 한전채 발행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에 대해서 몇 년간에, 소위 말해서 서서히 올려 주는 방향으로 가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덜컥 그냥 가격 보조금을 준다? 안 된다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한전은 왜 안 되느냐? 가스공사는, 보십시오. 가스 쓰는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농촌에 가스 들어갑니까? 이게 대부분 도시란 말이에요. 형평성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쓰는 사람이 내야지요.

한전은 100% 국민들이 다 쓴단 말이에요. 다 쓸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한전은 전력의 대부분을, 50% 이상을 산업이 쓰는 겁니다. 반도체, 철강, 화학, 자동차 엄청나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추경의 목적이 뭐니까? 저소득층·서민층의 고유가로 인한 고통 그것에 대한 안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택용과 농업용이 얼마나? 불과 20.7%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 쥐 가지고 외국인 주주 29% 넘어가고…… 산업에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대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 내부유보분이 600조니 뭐니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덕적 해이다. 안 된다.

만약에 한전에 준다면 이것은 뭐냐 하면 써지컬리(surgically) 그것만 도려내서 거기에만 보조금을 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차관 좋은 말씀 하셨어요. 최상위 계층은 전력 비용이 일점몇 %밖에 안 되고 최하위 계층은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 보조금을 주면 되는 겁니다, 한전을 줄 게 아니라. 그래야 이게 국가가 할 일이지, 한전에 덜컥 줘니까, 그것울?

그러니까 한전과 가스공사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결론은 뭐냐? 둘 다 쥐서는 안 된다. 제 결론입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다음에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위원 이게 반드시 법에 규정이 없느냐, 꼭 가격에 반영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가지고 한번 기획재정부하고 지경부에 물어보겠는데, 나는 이것은 사실은 보조금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예산 계상을 잘못된 것 같아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조에 보면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그게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무 또는 사업에 쥐야 돼요. 차액으로 이것을 주는 게 아니고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여기에는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이런 보조금, 부담금 이렇게 해 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보조금을 이렇게 주는데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는, 특별히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좋은데 없을 때는 이 법에 규정해서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냥 가격 보조 같이 차액 보조금을 신청해라 이게 아니고 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이렇게 해 놓은 것 보면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그러니까 보조금, 차액을 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조 무슨 무슨 사업이나 시설 자금이나 무슨 무슨 운영하는 운영자금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것을 또 넓게 해석해 봤느냐 하면 5조에 가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 장관은 줄 수 있다 이렇게 또 열어 놔습니다. 굉장히 넓은 의미의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14조에 가면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의 교부제한’, 이 얘기는 당연한 얘기에요. 보통 우리가 예산 편성하다가 출연금으로 줄까 출연기관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줄까, 출자를 해 버릴까 이렇게 마지막에 계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은 뭐냐 하면 KDI의 전체 사업이 1년에 1000억 그런데 기껏 해 봐야 한 600억 정도 보더라도, 400억은 그냥 출연해 주고 모르겠다 이거야. 그러면 감사도 덜 받고 그 차액을 그냥 주는 겁니다.

보조금은 어때냐? 꼭 사업을 정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무슨 무슨 어느 부분에 무슨 사업, 그다음에 가스공사 같으면 어디 충북, 강원도 영동지방에 배관망 설치 이렇게 주는 겁니다. 줄 때 보조율하고 보조금액하고 하나는 율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정액으로 금액을 정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요금 인상 거치하고 그 6개월의 반을 그냥 준다 이것은 예산 계상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특정한 사업을 계상해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지침인데 지침을 죽 보니까 비상시 연동제 유보, 가격을 올리는데 이것은 꼭 계상해서 올린다. 그런데 너무 값이 올라가서 서민들한테 부담을 줄 경우에는 안 올리고 그 후에 가격에 반영해 가지고 돌려줬던 것을 내년에 가격 올릴 때 또 반영해 가지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절차 문제이지 이것 때문에 보조금 관리법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보면 만약에 이게 준다고 하면 보조금은 차액을 얼마 주는 보조금은 없어요. 보조금은 보조사업을 정하고 그 사업을 줄 때에도 30%를 줄까 해서 보조율이라는 게 나오고 정액으로 1건당 3억 5000 그러면 정액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제창 위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리고 가스는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쓰고, 농촌에서 안 쓴다는데 시골 가면 독거노인들도 다 LPG 가스 배달해 가지고 LPG 씁니다.

○최인기 위원 여기서 보조해 주는 가스가 아니라니까요.

○류근찬 위원 가스는 가스지요.

○김광림 위원 쓰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 LPG 가스가 LNG 가스보다 50% 이상 비쌉니다. 관만 들어가면 LNG를 써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25.7평에 사는 4인 가족 기준으로 LPG를 LNG로 바꾸면 1년에 45만 원 돈 뱉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가 많아 가지고 전국으로 망이 다 퍼져 있는데 수요가 좀 적으면 못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충청북도 지역 일부, 강원도 지역 일부, 경상북도 북부지역 일부 이런 데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깔아 가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김광림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사업을 잡아 가지고 그 사업의 몇 %를 국가가 부여한다, 아니면 그 사업에 금액을 얼마를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고치면 법에 근거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일단 답변을 하세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기관에 보조를 주는 것은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습니

다마는 보조금법에 근거해서 충분히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확실히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것이 무엇이나 말이에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든 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없습니다.

○우제창 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위원님, 제가 그 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광진공에도 보조금 준 적 있어요. 그때도 채굴기계 살 때 무슨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출자를 해 버리는 거예요.

○우제창 위원 기관과 단체에는 출자와 출연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그 자체를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을 하는 전체를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하는 그 사업이 지경부의 예특에 이리이러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자체가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라는 것을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라고 한다면 아주 좁게 해석된 것이고 국가정책이라는 것이 아주 큰 정책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정책까지 있는데 그 정책 한 개를 사업으로 본다면 거기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법 제2조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사무나 사업에 대해 아주 작게 볼 것인지 전체 정책도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제창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예특법 5조인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에 대해서'가 명시되어 있던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해석을 막기 위해서 단체와 기관에는 출연금·출자금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명시했던 말이에요.

○소위원장 이한구 예특법에요?

○우제창 위원 예.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보조금 관련법에는 그것이 없지요?

○최인기 위원 보조금법에는 사무하고 사업에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부 국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프로젝트를 사업이라고 한다는 얘기인데……

○권경석 위원 연관된 사항이니까 설명을 듣고 답변을 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결국 국민부담 증가니까 안 해 주겠다는 취지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주더라도 확실한 명분과 법적인 근거, 관행에 부합되는 조치를 해 주어야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는다 하는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하는 의미에서 대안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 보조금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과거에 대한 보전이나 손실 보전의 차원이 아니고 사업에 관해서 지원해 주는 원칙적인 단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된다는 맥락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한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 물어보고 나름대로 대안제시를 하려고 해요. 우선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시설투자를 계속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현재 상태에서 손실요인으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지 않습니다.

○권경석 위원 시설투자까지 포함해서 적자가 얼마다, 누적되어 간다는 차원이지만 현재 이 시점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18%, 50% 이런 인상요인이 계상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고……

○권경석 위원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장기경영 목표를 설정할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치는……

○권경석 위원 들어보세요. 내가 질문하고 나면 답변하세요.

한전의 경우에는 전기수요의 증가분을 감안해 가지고 원전을 설치한다,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중장기적인 경영목표나 경영방식을 결정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시설투자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적자요인 해소하는 데, 아주 급한 경우에는 돌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그것 가능한 거지요?

시설투자를 얼마 한다는 연차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 수단 방법이 없다면 그 재원을 결손 요인을 보전하는 데 돌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가능하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권경석 위원 그것도 선택 가능한 대안 아니겠어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권경석 위원 선택 가능한 대안이지요. 갑자기 유가가 뛰어 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보는데 가격인상 요인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급한 경우에는 시설투자 하는 것을 잠시 유보하고 손실보전금으로 돌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이론상으로는 대안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이론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지요. 똑같은 금액을 정해 놓고 사업을 이것 이것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에도 합당하다 말이에요.

○권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아까 말한 대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장기시설투자를 위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을 것이고 그 계획 중에 내년도 투자분이 얼마다 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빨리 돌려 가지고 인상 요인을 해소하는 데 쓰고 보조금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계획 올려 가지고 거기에 보충해 주면서 이것을 대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각 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 아닙니까? 아까 김광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과 관련해서. 그런데 사업신청서 자체가 완전히 자기 편의이고 주먹구구식이라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대안으로 그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설투자 하는 데 자금 보조할 수 있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게 타당한 것이냐 부당한 것이냐를 떠나서 가능한 방법이다 이 말

이에요. 그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자구노력을 한다는데, 존경하는 최인기 위원님이나 우제창 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그것 아니겠어요. 한전 같으면 신의 직장 아닙니까? 임직원들이 연봉 몇 억씩, 2~3억 받는데 적자를 보는 이런 상황하에서 자기 수당을 3분의 1로 확 줄이겠다 하는 결연한 의지라든지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공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통해서 대폭 보전하고 그다음에 시설투자 하는 것은 돌리고 해서 자금 보전을 중장기적으로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국민들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표시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의 대안 제시예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제가 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를 할 수 있고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이나 출자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김광림 위원** 그것 아니에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지금 예특법 시행령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특법 시행령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는 사업들이 명칭은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사업을 하는 주체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 설치사업은 송유관공사로 보조가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명칭은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공사로 들어가고 있고,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은 도시가스 회사로 보조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기가스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주체인 한전과 가스공사에 보조가 들어가도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우제창 위원** 그 사업은 스페시픽(specific)한 그야말로 사업이란 말이에요. 송유관 깔고 뭐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니까 그 사업을 하는 주 체자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 손실을, 아무런 알 수도 없는 정체불명에게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광림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래요.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대상이 되느냐? 된다. 왜? 이

법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 그리고 거기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조금 주는 것은 뭐가 하면 보조금 예산액은 보조금이라고 하지만 서류는 전부 보조사업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이렇게 되어 있던 말입니다.

물론 크게 보면, 프로젝트 모으면 큰 프로젝트가 되듯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를 푸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스공사 내에서 하는 시설사업 그런 큰 건을 잡아 가지고 그중에서 정부가, 돈은 어느 정도로 할지, 손해 본 50%를 해 줄지 40%를 해 줄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게 국민들한테 설명도 되고 또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우리가 법을 위반해서는 못하는 것이니까……

○**우제창 위원** 지금 김광림 위원님하고 권경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꼭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권경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대로 일단 투자에서 빠져 먼저 적자를 보전한다 이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는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런 포맷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을 때 과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냐,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 사업이라는 것이 과연 추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과연 고유가 민생대책의 합목적성에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판단이란 말이에요. 제 판단으로는 본예산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추경으로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림 위원** 긴급성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소위원장 이한구** 거기서는 판단이 어떻게 돼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추가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전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식회사로 돼서 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자로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보조로 하는 경우하고 출자로 하는 경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설에 대한 보조라는 부분은 조금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권경석 위원** 양자를 검토해 가지고 이런 논란이 안 생기도록 예산 요구를 해야지, 지금 그게 아쉬운 거예요.

○**소위원장 이한구** 왜냐하면 이게 선례가 되면 진짜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셋팅해야 되니까요. 이 부분은 빨리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 질문 더 있으세요?

○**우제창 위원** 다른 것도 많지만 어지간한 것은 안 할게요.

이것은 제가 봐서 크게 세 가지 야마, 그러니까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얘기한 공공기관 가격보조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국내외 자원개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대개는 3~5년이 걸리고 어떤 경우에는 효과가 한 10년이 돼야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추경이 필요한 것이냐? 연내 집행 가능성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2000억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대통령이 저탄소 얘기 나오면서 갖고 온 것 같은데……

○**소위원장 이한구** 저탄소 얘기하기 전에 제출된 것입니다.

○**우제창 위원** 이게 사실 거기에 맞춘 거지요. 제가 지금 국회의원 5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R&D입니다. R&D를 추경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만큼 의욕이……

○**우제창 위원** 의욕이 강한 거겠지요. 하여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게 지정부의 가장 중요한 야마들입니다. 이게 합해 보면 얼마나 하면 2조 6000억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야마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중기청에서 보면 균특에서 452억을 추경으로 갖고 온 거예요. 재래시장 주차장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하는 거니까 좋단 말이에요.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얼마든지.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집행률이 30~40%입니다. 집행률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해당된 것도 소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해 준 것도 못 쓰고 이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깎았어요, 집행률이 낮다고. 120여 개 깎았는데 깎은 것을 다시 갖고 온 겁니다, 452억을.

저도 우리 용인에 전통신장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해 줘야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부진한 집행률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권경석 위원**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마는 나중에……

○**소위원장 이한구** 우리끼리 토론은 나중에 다시 합시다.

차관이 답변을 해 주실 게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집행률에 관계되어서 정말로 괜찮은지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것은 중기청……

○**소위원장 이한구** 그래요? 그러면 중기청 빨리 들어오라고 해요.

차관님은 나가셔도 좋아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저희들 아까 권경석 위원님 대안으로 제시하신 내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가격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출자를 하게 되면 가격 보전이 안 됩니다. 그건 왜냐 하면 출자가 되어서 나중에 들어가면 그 출자는 자본금으로 되어서 자본잉여금으로, 예를 들어서 주식 지금 현재 5000원짜리인데 2만 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자본잉여금으로 되어서 손실 보전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 보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격 인상에 대한 요인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그런 겁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건 아니지.

○**최인기 위원** 이봐요, 원래 투자하기 위해서 차입한 돈 가지고 손실 보전하면 되지……

○**소위원장 이한구** 그래, 그렇게 하라는 건데……

○**최인기 위원** 그건 기업의 간단한 원리인데 그것 가지고 뭐……

○**소위원장 이한구**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장 빨

리……

○우제창 위원 1분만요.

국장님, 권 위원님 제안하신 것 판단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한전에 대해서 말입니다, 가스공사가 아니고 한전에 대해서 그 22.7%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도려내서 보조금 주는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은 생각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소위원장 이한구 그리고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차장 송재희 차장입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추경 집어넣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소기업청차장 송재희 예.

○소위원장 이한구 그런데 지금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 소화해 낼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중소기업청차장 송재희 재래시장의 특수성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다음에 입찰을 하게 되고 또 설계, 시공 등 일련의 절차가 있거든요. 이런 기간들이 보통 1년 5개월 또는 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요구한 것이고요, 배정을 받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 현대화 사업이 좀 조기에 착수되지 않을까……

○류근찬 위원 이렇게 추경의 성격을 몰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제창 위원 그러면 집행률을, 현 예산, 올해 예산 집행률을 빨리 하라는 말이에요. 집행률을 제고하라 이거야. 제고하시고, 지금 추경에 450 가져온 이것은 긍정적으로 본 위원회에서 검토할 테니까 그때 제대로 된 설명과 함께 갖고 오라 이거예요. 추경에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류근찬 위원 그러면 주는 걸로 알아요. 내가 보면 중기청 차장이 추경의 개념조차 모르고 추경을 편성…… 참 문제네, 정말.

○소위원장 이한구 그게 현실이면 뭐, 됐어요. 더 이상 물어보실 게 있어요?

○류근찬 위원 재래시장 현대화와 관련된 본예산의 집행률이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얼마나 쪼어요?

○중소기업청차장 송재희 금년도 사업은 한 80% 정도 나갔습니다.

○류근찬 위원 80%?

○중소기업청차장 송재희 저희들은 집행 개념을 이렇게 보거든요. 정부 예산이 올해 한 1400억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지자체에 배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 돈을 그 정도 우리가 지자체에 내려 준 거지요.

○우제창 위원 실집행액이 얼마냐고?

○중소기업청차장 송재희 실집행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06년도가 40%이고 작년도가 50% 됩니다.

○류근찬 위원 금년은 얼마예요?

○중소기업청차장 송재희 금년에는 지금……

○소위원장 이한구 뒤에서 얘기할 게 있어?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기획재정부행정예산심의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입니다.

07년 실집행률이 57% 정도 되고요, 08년은 6월 말까지 2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08년은 연초에 저희 정부 개편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조금 준비가……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니까 작년에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57% 했던 말이지요?

○중소기업청차장 송재희 06년도가 41%고요, 작년도가 50%입니다.

○류근찬 위원 1400억을 줬는데 이것을 금년에 소진시킬 자신은 없는 거예요? 지금 암만 봐도 내가 볼 때는 80% 이상 집행 안 되겠구먼.

○중소기업청차장 송재희 금년도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매년 한 10% 정도 저희들이 상향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가면 한 60%는 넘을 것 같습니다.

○류근찬 위원 금년 예산의 60%?

○중소기업청차장 송재희 예.

○류근찬 위원 남아 있는데 왜 또 추경을……

○소위원장 이한구 권 위원님!

○권경석 위원 내가 한마디 할게요.

아까 우제창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상승되고 시급하게 해결된다면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던 말이야.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중기청에서는 지방으로 배정해 준 것 가지고 완료됐다고 치고, 이게 시도에 내려가면 시·도비 부담 해야지 그다음에 민간 부담이 있어요. 상인의 자부담이 10%란 말이에요. 자부담 액수가 많아 상인들 회의 해 가지고 부담을 안 하는

사례가 많단 말이야. 이게 실패이고, 제일 시급한 게 주차장이거든. 주차장 없는 재래시장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중소기업청차장 송재희** 예, 그래서요 이번에 편성한 것은...

○**권경석 위원** 내 얘기 들어 봐요.

주차장 문제는 예산만 배정해 주면 위치가 확보되어 있고 매입이 용이한가를 철저히 따져 봐야 되고, 또 예산 배정 과정에서도 시군 부담 능력이 있느냐, 민간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 이게 애로사항이란 말이야.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급한 지역에..... 금년 내에 이것은 100% 집행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준비된 데도. 그런 데를 잘 선정해야 예산 투입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는 대형마트가 들어와 가지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지금도 아우성이예요. 다 준비됐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데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 데 수혜를 해 줘야지 되지도 않는 데 일괄 배정해서는 안 된다, 배정 지역 선정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중소기업청기획조정관 김순철** 위원장님, 중기청 기획조정관인데요...

○**소위원장 이한구** 이따가 발언권 줄 테니까 질문하실 때...

○**김광림 위원** 예산이 집행률이 60%다 그러면 40% 돈은 이월되나, 아니면 불용돼 버리나?

○**중소기업청차장 송재희** 다 이월됩니다.

○**김광림 위원** 다음에 사업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연내에 안 된다는 거지 다음 연도가면 다 100% 되는 것이지요?

○**중소기업청차장 송재희** 예, 그렇습니다.

○**우제창 위원** 다음 연도에 안 되고 3년, 4년 걸립니다.

○**김광림 위원** 하여튼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나도 지역에서 와서 얘기하는데 이번에 신청한 것은, 그러니까 자부담 때문에 못 하는 거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개인 부담 때문에 못 하는데 이번에 신청한 것 상당한 부분은 자부담이 없는 쪽이라고 하는데...

○**우제창 위원** 상인 부담이 없는 것...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것...

○**우제창 위원** 상인 부담만 없고 지자체 부담은 있는 것이지요.

○**김광림 위원** 지자체는 땅을 확보하고 이런 것

이지요. 그러니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2개를 선정하되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은 금년 12월까지 다 쓸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대한 자료를 좀 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제창 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경고이고, 경고가 무슨 경고냐? 이거 재래시장 상인들 동원해서 전화하지 못하게 하란 말이야. 이거 전화하고 말이야... 그렇게 플레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 있고, 우리가 다 이것에 대해서 애정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회를 압박해 가지고 예산 받아내려고 그런다? 안 된다 이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소기업청차장 송재희** 예.

○**우제창 위원** 또 한 가지, 정말 이거 우리 회의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중기청이 지금 할 일이 좀 많습니까?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이 얼마나 많은데..... 키코(KIKO)라는 것 아세요, 혹시? 지금 키코(KIKO) 손실액이 5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소기업 도울 수 있는 다른 현안들이 수도 없이 있는데, 이 한가한 것을 갖고 또 추경에다가, 이렇게 한가한 것을 추경에 갖고 오면 중기청이 도대체 존재할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답변할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중소기업청기획조정관 김순철** 예, 조금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간단하게 핵심만.....

○**중소기업청기획조정관 김순철** 아까 집행률이 좀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05년도에 31%, 06년도에 41%, 07년에 50% 해서 매년 10%p씩 높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세수 부족 때문에 05년도에 48%, 06년도에 42%, 07년도에 66%가 하반기에 배정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45개 시장에 452억을 배정했는데 45개 시장 중에 34개 시장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확장된 시장이 8개이고, 그다음에 민간 자부담이 없는 시장이 26개 시장입니다. 그래서 45개 시장 중에 34개 시장이 자부담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

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면 지자 체가 매칭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면 지방에서 지방비를 잘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소위원장 이한구 알았어요. 그러면 자료를, 지금 거기서 생각하고 있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래시장이고,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계획 사항, 그것을 내주세요.

○중소기업청기획조정관 김순철 예.

○소위원장 이한구 그다음에 뒤에 뭐예요?

○기획재정부행정예산심의관 이석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게 균특회계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 점이 감안돼야 됩니다. 이게 감액이 되면 다시 또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위원장 이한구 균특사업이라고 그러면 조금 사정은 있는데 그러나 쥐도 쓸 수 없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혹시 기존에 준 것 중에서 또 만일에 돌려쓸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돌려쓰는 게 정상이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은 거기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빨리 이따가라도 달라는 거예요.

○중소기업청차장 송재희 예.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 10분 뒤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한구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국장이 대신 왔던 교과부의 차관이 지금 오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최인기 위원 교과부는 큰 쟁점은 그렇게 없어요. 없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을 교과위에서 증액해 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4600억 증액하면 이게 다 갚는 겁니까?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우형식 예, 4611억 원이 총액입니다.

○최인기 위원 총액이에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우형식 예.

○최인기 위원 이번에 다 안 갚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과부차관 안 오셨다고 아까 뭐라고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우형식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오늘 e-러닝 국제컨퍼런스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정이 이어져 가지고 장관님 대신 해서 제가 참석하느라고 오전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최인기 위원 그럴 때는 우리 위원장께 양해 전화라도 하고 가시는 게 예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우형식 죄송합니다.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이 4611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1537억 원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1년 이내에 환급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기에 전액 다 계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3분의 1하고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계상하는 것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임위 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일시에 많이 오면 좀 모자라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예비비로 충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은 올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여서 상임위에서 좀 추가로 증액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최인기 위원 제 의견은 이것은 나중에 전체 조정할 때 규모를 보고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위원장님,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도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저희들 법에 의해서 올 9월 15일부터 하면 일단 신청하고 난 뒤에 6개월 내에 환급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4611억인데 금년도에 다 몰리고, 또 금년도에 다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할 때 일단 3분의 1 정도 담고, 특히 관계 부처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또 행정안전부하고 저희 기획재정부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시에 몰린다 하더라도 금년도가 아니고 ‘6개월 내에 환급을 하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 시행령 만들어져 있나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우형식 9월 15일까지

시행령을 제정 공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엇그제 상임위에서 '실제적으로 누구한테 환급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다음 주 정도에 차관회의에 올려서 조간만 빨리 제정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내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3분의 1 준다고 했는데 무슨 기준을 갖고 3분의 1을 가려낼 것인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한테 3분의 1씩 주는 것은 아닐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자가 만일에 2분의 1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중에 3분의 1은 어떻게 가려내는 거죠?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우형식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환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일찍 신청하고 어떤 분들은 늦게 신청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권리관계가 명확한 분들을 모아서 1차로 지급하고 좀 미진한 부분은 쌍방의 의견을 들어서 2차로 지급하고 단계별로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셨습니까마는 만약에 권리관계가 명확한 사람이 3분의 1을 초과해서 들어오면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추경 확보 예산을 둔 것이기 때문에 시도에서 다른 예비비를 돌려서라도 충당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보전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만일에 3분의 1에 미달하는 신청이 있을 경우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돼요, 남는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우형식 이월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이월로 그냥 될 수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우형식 예.

○소위원장 이한구 불용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우형식 예.

○소위원장 이한구 그럼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돌아가셔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미리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차관이 어디 해외에 가 있어서...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예, 일본에 출장 갔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실장이 와서 답변하겠습니다.

자기 소개부터 하세요.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차관이 지금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최인기 위원 실장께서, 상임위원회 수정의견이 있습니다마는 포함해서 잠시 개괄적인 것 설명을 하시렵니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만들어 놓은 자료 보고?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86만 명하고 차상위 장애인 9만 명, 총 95만 명에게 월 2만 원씩 에너지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추경예산안에는 일단 6개월 치를 계상을 한 상태이고 추경안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요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경증 장애인 6만 명에 대한 내년도 소요예산 56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인기 위원 상임위에서 증액한 것이 그것을 증액한 거예요?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그렇습니다.

○최인기 위원 죽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8만 4000원씩 약 300만 명에게 지급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 추경안에서는 금액을 1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률에 8만 4000원을 지급하도록, 그러니까 A값이라고 하는데,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정부에서 지급해야 될 187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금년도에 추가로 발생한 미지급금 872억 원, 그래서 총 2747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난해에 밀린 미지급금과 금년도에 예상되는 미지급금까지 모두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에서는 동의합니다.

다음은 민간 영아 기본 보조금입니다.

민간 영아 기본 보조금은 국공립시설이 아닌 민간 보육시설의 0세~2세 영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0세는 34만 원, 2세는 10만 9000원으로 차등해서 일률적으로 인원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 편성 때는 25만 3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약 31만 20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예산 부족액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최인기 위원** 예산 부족액이라는 것은 기존 책정되어 있던 예산이 부족합니까?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예, 그래서 원래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서 예산 부족액이 발생해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최인기 위원** 시설에 대해서 1인당 얼마 이렇게 주는가 보지요?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그렇습니다.

○**최인기 위원** 시설에?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예, 그 시설에 있는 영아 수에 맞추어 가지고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 등 기능 강화 예산입니다.

지방의료원 전산장비가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서 이것을 교체하고 새로 확충한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이것을 78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이것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성격이 아니라고 보고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교육이

라든가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에 한 2800여 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2088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임 위에서는 나머지 지원하지 않고 있는 72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증가액이 134억 원입니다.

이 예산의 증액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마는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일에 금년 추경예산에 134억이 반영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약 540억이 반영돼야만 이것이 가능하겠단,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인기 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국고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2088개소 이외에 800개 가까이 늘었나요?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원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던 시설들이 한 700여 개가 있습니다.

○**최인기 위원** 인가 시설인데요?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예.

○**류근찬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결정을 왜 하는 거죠?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저소득층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시설들은 말하자면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기르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최인기 위원** 결국은 시설장에 관한 인건비 주는 것인가 보조, 운영비가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운영비조로 지금 개소당 월 2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운영비에 인건비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그렇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청년(18세~24세)들에게 본인이 매칭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하면 본인이 5만 원 또 다른 민간 후원단체에서 5만 원, 이렇게 해서 월 한 20만 원을 적립을 해서 이것이 몇 년 동안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창업 자금을 만

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될 때까지 지원을 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게 약 1000만 원 정도를 장기 저리로 용자를 해 줘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금년도 20억 원 편성이 돼 있고 내년에는 31억 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추경안에서는 지금 77억 원을 추가로, 지금 저소득층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해서 마이크로 크레딧(micro-credit)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지원을 주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20억을 제외하면 57억 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추가로 지원하면 집행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제창 위원 다들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 온 것인데 못 받을 게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13페이지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지원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 경우에 이것은 저희들이 수익예산으로 편성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안 되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저희들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예산,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류근찬 위원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협의 안 했어요?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저희 장관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 증액 사업이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하고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기해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보낸 것 같습니다, 정부 의견을 반영해서.

○류근찬 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상임위원회의 권능이 이렇게 무시되어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웬만한 상임위원회는 다 장관이나 차관 앉혀 놓고 증액 부분은 다 치열하게 따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건수 올라온 걸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여기 와서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권능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류근찬 위원 그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가 되든지.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상임위에서 장관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을 부기해서 아마……

○소위원장 이한구 상임위원회는 야당도 있으니까 야당이 집어넣은 모양이구먼.

○이사철 위원 상임위가 장관의 권능을 무시했구먼.

○소위원장 이한구 질문 있으세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질문이 아니고 증액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관련해서는 재원이 첫째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사업, 정부의 내년도 사업하고 기본적으로 가고 있는 기존 사업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이따가 토론은 또 할 거니까 그러면 더 질문할 것 없으세요? ○김광림 위원 15페이지에 ‘상임위 수정안에 대한 정부의견’ 그런데 이 정부는 어디인가요? 보건복지부인가, 기획재정부인가?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보건복지부입니다.

○김광림 위원 보건복지부의 의견이지요, 그렇

지요?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예.

○**김광림 위원** 그런데 국회에서 정부의 의견은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합의가 되었을 때 정부 의견이에요.

그리고 아까 실장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의료 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872억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무 부처로서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그래서 김광림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 관련되어서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중에 동의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은 일단 저희 내부에서……

○**김광림 위원** 기획재정부장관이 동의를 해야 돼요.

○**소위원장 이한구** 하여튼 증액을 안 시키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합시다.

○**권경석 위원** 5건이지요?

○**보건복지가족부기획조정실장 유영학** 예.

○**소위원장 이한구** 됐습니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환경부차관이에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접니다.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원래 정상적으로 집행을 계획했었지만 최근 경유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시내버스 운영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비교적 저렴하고 환경에 영향이 적은 천연가스버스로 교체를 조기에 실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서민생활에 좋지 않을까 해서 추경을 신청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계획이 2654대 이렇게 했는데 이미 7월 기준으로 2195대 했기 때문에 현재 한 460대 정도밖에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한 1300여대 보급해서 연내에 1700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사업기간 중에 해당되는 것을 조기집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한다 하더라도 2011년까지 총 대수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최인기 위원** 1만 5097대 보급할 때는 이걸 국고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렇습니다. 대당 한 2250

만 원입니다.

○**이사철 위원** 버스 가격이 얼마인데요?

○**환경부정책기획 안문수** 8000만 원 정도……

○**환경부차관 이병욱** 하이브리드카나 CNG카가 마찬가지로 친환경차로 기술 진보나 이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조기에 하게 되면 해외 수출 같은 것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류근찬 위원** 방법은 그러면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다가 주문합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수한 만큼 대수 공급하기 하면……

○**환경부차관 이병욱** 후에 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주문 대수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월 500대씩 생산하게 되면 생산량도 충분히 되고 고용창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경석 위원** 집행은 가능합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월 500대로 계산하면 남은 4개월만 하더라도 벌써 한 2000대 이상 되고……

○**이사철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사업 초기단계에 충전소 확보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도 충전소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하고 다툼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해결되었습니까?

○**환경부정책기획관 안문수** 초기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천연가스 충전소 안전성에 대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부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나중에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안전하다는 게 주민들한테 인식이 많이 되고 외국사례도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환경부차관 이병욱**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광림 위원** 대당 2250만 원, 이게 증액 보조입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광림 위원** 증액 보조 정할 때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인가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일반 버스하교의 가격 차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제창 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해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우제창 위원** 이것이 사업기간이 있고 규모가 있는데 조기 집행하면 좋지만 이거 시급한 건 아

니잖아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 이유가 전체적으로는 그렇다치더라도 경유하고 CNG 가격 차이 때문에 버스업체들의 뭐라 그럴까 어떤 가격 영향을 만약에 보충하려면……

○**우제창 위원** 버스 제조업체 말이에요. 이 양반들이 주문하면 금방금방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데이터에서 보셨듯이 월 500대 정도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정책기획관 안문수** 현재 예약까지 3000대 이상 계약이 되어 있는……

○**우제창 위원** 그러면 버스가 늘어나면 그만큼 충전소도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런데 이 버스 정도는 지금 부지가 거의 됩니다.

○**권경석 위원** 초기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문제없다 이 말입니까? 실제 확실히 실사해 봤습니까?

○**환경부차관 이병욱**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지금 이사철 간사님 이야기대로 지금도 분쟁이 일어난 데가 많은 것 같은데?

○**환경부차관 이병욱** 물론 동네 일부에서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사철 위원** 차고지 옆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무지하게 반대를 해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실제로 기존 휘발유 주유소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사철 위원** 안전성에?

○**환경부차관 이병욱** 예, 심리적인 불안감이 줄었습니다.

○**우제창 위원** 이것은 2010년까지 어차피 할 것인데 좀 빨리 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국토해양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 1000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화물연대와 애초에 약속했던 1~3종 화물자동차, 10t 미만 화물자동차입니다. 야간통행료 할인을 약속했습니다. 그 600억 원과 그리고 18쪽을 보시면 화

물자동차 감차 보상 지원 300억 3000만 원, 그리고 화물자동차 개조 지원 100억 원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지난 6월달에 화물연대 사태 때 화물연대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라는 협상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역을 담지 못했던 그런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입니다.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위원장님, 참고로 저희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자료 7쪽을 보시면 관련되는 세부사업들을 총사업비하고 관련된 내용 그리고 08년도까지 집행률을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대해서 감액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액의견은 대부분 노선의 완공시기가 2010년 이후라는 점에서 추경 대상사업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 중인 사업의 조기준공으로 도시의 교통혼잡, 교통 애로를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이라든지 교통혼잡비용 경감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추경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가장 극심한 교통혼잡 지역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집행가능성 등 실질적인 공기 단축 효과가 있는 사업을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가능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것이 3건입니다. 대련-성곡, 소정-배방, 오동-구성, 이 세 구간은 집중 지원을 하면 내년도에 준공이 가능하고 나머지 8건도 1년씩 단축해서 적어도 2012년까지는 완공함으로써 조기준공으로 인한 서민들의 여러 가지 교통혼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은 주로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추경을 통한 증액 없이

세부사업 간의 조정으로 부족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산업단지는 대부분 먼저 완공을 하고 도로는 뒤에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들이 도로가 개통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근로자의 통근이라든지 물류수송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면 진입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의 물류 소통이라든지 근로자 통근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꼭 필요하다고 보고 또 집행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8월 말까지 현재 58%가 집행이 되고 하반기에 대부분 집중 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연말까지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이것도 조기 개통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감액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전체 공정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구간별 우선 개통 지원으로서 추경예산의 반영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랑진-진주 같은 경우도 현재 공정률은 41%입니다마는 삼랑진-마산까지는 2010년 말까지 개통함으로써 구간 개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고요, 용산-문산 간도 현재 공정률은 56%입니다마는 성산-문산 간이 내년 6월이면 개통이 가능합니다. 오리-수원 간에도 현재 공정률 23%입니다마는 오리-기흥 간이 2011년에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간이 우선 개통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경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3호선, 대구 2호선 연장사업도 지역의 교통난 해소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적기 개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연내 집행 가능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철도 관련 5단계 사업의 추경예산 연내 전액 집행은 확실히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전라선 복선이 익산~순천보다는 순천~여수 구간이 더 시급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고 해서 300억 원을 감액해서 순천~여수 쪽에 추경을

투입하는 것이 여수엑스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어서 정부측에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리~수원 간 복선전철도 비슷한 이유입니다마는 수원에서 인천으로 200억 원을 돌리면, 오리~수원 간 500억 원이 전부 집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200억 원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상임위에서의 의견이 있어서 이것 또한 정부가 수용을 했습니다. 2개 사항은 증액과 감액을 일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제창 위원 뒤에 SOC 부분 먼저 여쭙게요.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지요? 1조가 넘는 것 같은데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예, 전체 국토해양부 소관은 1조 331억 원입니다.

○우제창 위원 아니, 앞의 화물차 빼놓고 뒤의 도로 건설, SOC 건설……

○최인기 위원 도로, 철도.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도로, 철도가……

○최인기 위원 근 1조 가까이 돼. 도시철도하고 산업단지만 해도……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1000억 원이 빠진, 그러니까 9331억 원입니다.

○우제창 위원 9331억 원. 이 중에서 그러면 신규 있어요, 없어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신규는 없습니다.

○우제창 위원 신규는 없어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예, 완공 위주하고 조기 개통을 위한 겁니다.

○우제창 위원 아니, 대구시 성서5차라든지 대덕 테크노 이게……

○류근찬 위원 성서5차 같은 거는 신규 아니에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신규 아닙니다.

○우제창 위원 0.2%, 0.3%……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이게 토지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 절차를 밟느라고 그랬는데 모든 게 해결이 됐습니다.

○우제창 위원 예산은 언제 받은 거예요? 원래 시작은? 예산 승인받은 건 언제냐 이거예요. 성서5차하고 대덕 테크노.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우제창 위원 근데 이거 왜 아니래? 왜 아니라

고 그래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죄송합니다.

○우제창 위원 신규잖아요, 신규.

○소위원장 이한구 아니, 금년도 진행 중인 거라는 얘기지.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진행 중이고, 보상 절차와 발주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시작했습니다마는……

○류근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8년에 예산이 처음 들어간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2007년까지 예산 없잖아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예?

○류근찬 위원 작년에는 예산 없었잖아요? 금년도부터 예산이 들어왔지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예,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러면 신규지 뭘 그래.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습니다.

○우제창 위원 SOC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맞아요? 이것을 1조 가까이 갖고 와 가지고 추경으로 다……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냐, 이게 대표적인 경기 부양 아니겠어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이게 지자체에게 가장 시급하면서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들이 대부분 지자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지자체장들이 가장 시급히 하고 싶어하는 사업들을 선정했습니다.

○우제창 위원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이게 참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보면 종합심사라는 게 예결위 종합심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서는 지금 다 감액이란 말이에요. 다 감액으로 나와 있다고. 강성종 위원, 노철래, 조정태,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보면 상임위에서는, 상임위가 난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상임위에서는 사실 이것을 다 갖고 온 거예요, 원안 그대로. 이게 그 지역에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겠지요. 지역 현안사업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또 국토해양부가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이랬겠지요. 그렇지 않고 이게 여기서 깎지 않고 그대로 갖고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SOC를 1조씩 하는 그런 추경이 있나요? 이것은 최소한 50%는 깎아야 된

다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1조씩이나 추경으로 합니까?

○류근찬 위원 가만있어 보자, 이 설명 지난번에 장관한테 들은 얘기인데 차관께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예.

○류근찬 위원 지금 이렇게 SOC 현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예산을 짤 때 여러 가지 이유로 SOC 건설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충분히 예산을 못 준 부분이 있지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1월 초부터 집행할 했을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예.

○류근찬 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상반기에 집행하고 나니까 예산이 없어진 공사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지금 대부분의 공사장이 도로 예산 같은 경우는 충분한 예산이 해당 사업장마다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금액을 감안해서 공사를 죽 했고……

○류근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보령에 국도 21번 우회도로를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을 다녀 보면 요새 인부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작년에 150억을 받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상반기 중에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6·7개월 하면 예산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매달려 있던 인부라든지 잡부라든지 기술자라든지 이 사람들이 지금 직업이 없어진 거지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실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청남도하고 협의 때 어떻게 되었는지? 21번 우회도로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21번 국도 보령-대천 우회도로, 그게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지자체와 협의를 했고요.

○류근찬 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볼 때 그런 지역은 추경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직업 창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토해양부가 치열하게 설득을 시키세요. 나는 깎아야 될 임무가 있지만 왜 그런 얘기를 안 해 주느냐 이거예요. 지금 건설이 스톱된 데가 예컨대 천 군데라면 구십 군데는 아예 놓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권경석 위원** 내가 그거 얘기할게요. 우리 류근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같으면 도시를 우회함으로써 도심을 통과하는 간선도로의 교통 체증을 줄이고 실제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한 5·6년 전부터 SOC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공기를 6년 잡았던 것, 지금은 12년 걸려도 완공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절끔 공사만 계속되고 있던 말이에요. 교통량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시급성 측면에서 볼 때 나는 선정은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류근찬 위원님 지적을 한번 잘 쟁겨 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10년 12월까지 이게 완공되도록 집중 투자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국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대도 같으면 애버리지 100억씩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6년 대비 15년 돼도 완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경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추경 수준에 맞도록 본예산에도 반영시켜 주라는 거예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예, 알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고용 창출에도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혼잡 비용 그다음에 공해 문제 등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만 기준이 확실히 정해졌다면 그 기준에 적합하냐 하는 것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사철 위원** 차관님, 오리-수원 광역철도는 금년에 완공될 예정인가 보지요? 왜냐하면 아까 여기 집행률이 기획재정부는 87%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또 공정률은 이것보다 훨씬 못 미치더라고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공정률하고 집행률하고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공사를 해서 실제로 공사가 전체 총액의 80%가 됐다 하더라도 기성에 대해서 공사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기간 동안 예산 집행은 80%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행률은 공정률보다 적거나 낮습니다.

○**이사철 위원** 낮아야 하잖아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예, 그렇지요.

○**이사철 위원** 그런데 아까 내가 잘못 들었나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리-수원의 공정률이 몇 %라고 그러셨어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23%입니다.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그리고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공정률·집행률 기준하고 저희들이 8월 말 기준으로 최근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철 위원** 오리-수원은 전부 국비하고 도비로 한 거지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그렇습니다. 2013년에 완공이 예정돼 있고요, 우선 오리-기흥 간 2011년 개통을 목표로 이번 추경에 투입이 됐습니다. 기흥에서 경전철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추어서……

○**이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된 성서 5차, 제가 전체회의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8월 말 현재 0.3% 집행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상 절차가 완료 돼서 보상하고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 아니에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예, 그렇습니다.

○**이사철 위원** 그런데 원래 금년도 예산은 8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으로 100억을 더 넣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이렇게 다 집행이 됩니까? 그러면 당초부터 너무 적게 예산을 잡았던 것 아니에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여러 가지 산업단지 조성하고 배후도로를 개통하기 위한 예산이 사실 충분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각 산업단지에 대한 배후도로를 건설하다 보니까 개통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이사철 위원** 그러면 100억을 더 주는데 이것

이번에 다 집행되니까?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보상 절차, 발주 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철 위원** 이게 토지보상금이 얼마쯤인지 아세요? 잘 모르십니까?

○**류근찬 위원** 이 돈 가지고 용지 매수는 턱없겠는데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이 돈으로 토지보상과 공사 진행을 함께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 자료를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질의해 볼게요. 지역별로 이것이 어떻게 배분돼요?

○**류근찬 위원** 사업이 지역별로 굉장히 불균형이 일어났어요.

○**소위원장 이한구** 그런 것 감안하고 한 거예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별로 도로 SOC 사업도 있고 물 부족, 가령 물 산업 한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지자체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이루었는데 SOC만 쳐다보면 조금 불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류근찬 위원** 아니, 엄청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가 지원 지방도로는 국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매칭이 일어나야지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그렇습니다. 균특입니다.

○**류근찬 위원** 지방이 매칭이 얼마예요?

○**국토해양부기획조정실장 정창수** 지방비가 30%, 국비가 70%입니다.

○**류근찬 위원** 지방마다 추경을 다 했을 텐데 지금 이것을 보내 주면…… 유보시켜 냈나요?

○**국토해양부기획조정실장 정창수**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서 지방비는 확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감액할 경우에 이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6월부터 대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업주도 알고 있고 그 업체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고 지금 돈이 언제 내려오는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들은 물론 잘못된 부분입니다마는 시공이 벌써 된 데도 있습니다.

○**우제창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것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에서 갖고 온

이 자료 갖고 있어요?

○**소위원장 이한구** 기획재정부에서 만든 자료.

○**우제창 위원** 그것 좀 옆에 보여 주세요. 그것 갖고 있어요?

7페이지의 추경사업 중 SOC 사업 집행 현황을 보시란 말이에요. 7페이지를 보시면 국가 지원 지방도 이건 매칭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음영 처리한 부분, 추경의 증감을 봐요.

7페이지를 보란 말이에요.

국가지원지방도는 이 금액이 현실적으로 34억도 있고 116억, 30억 이렇게 죽 잘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보세요. 다 200억, 100억, 150억 250억 딱딱 잘라 가지고, 두 부모 자르듯이.

뒷장 한번 보세요. 역시 100억, 300억, 400억, 200억, 100억씩 딱딱 잘라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주먹구구식이, 계획으로 딱 얼마가 필요하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기준으로 100억이나 말이에요, 무슨 기준으로 200억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일단 쓰고 보자’ 이거예요, 내 말은, 쓰고 보자.

우리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금액을 배정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갖고 온 게 1조입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지.

(소위원장 이한구, 이사철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뭐냐, 당의 입장도 그렇고. 이것은 일률적으로 50%를 삭감하는 것이 맞다, 건 바이(by) 건으로 들여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갖고 오지도 않았고.

○**김광림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예.

○**김광림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 19페이지에 국토해양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이 내용은 상임위원회는 의견이 없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예.

○**김광림 위원**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세 사람이 질의한 거란 말이에요, 강성종·노철래·조정태. 그런 얘기지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예, 그렇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이것은 상임위인데 위의 것 300억 잘라서 밑으로 넣고, 위 200 잘라서 밑에 200 넣고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김광림 위원** 정부 쪽에 묻겠습니다.

지방이 아닌 사업이 있는가?

도시철도만……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예.

○**김광림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이게 도별로 보면 전체 균형을 맞춘 거예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예.

○**류근찬 위원** 안 맞지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지방 자율편성 원칙에 따라서 지역에……

○**김광림 위원** 이게 국가지원지방도 이것뿐만 아니고 들어온 돈 전체 다를 보면 어찌되는지 도별로 한번 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류근찬 위원** 죄송합니다.

이것 산업 선정할 기준, 지자체가 추경예산으로 넣어 달라고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예.

○**류근찬 위원** 그것을 모아 가지고 국토해양부가 심사를 했던 뭐를 해 가지고 골라낸 거지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때 균형을 맞추어 줘야지요,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제가 질의가 덜 끝났습니다.

○**류근찬 위원** 죄송합니다. 계속하시지요.

○**김광림 위원** 여기 보니까 총 시도별 금액이 있네요.

그다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는 100% 국고로 주는 거지요?

○**국토해양부기획조정실장 정창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도 시 관내가 읍면동을 포함하는 시 관내가 있지 않습니까? 동 지역으로 돌아가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그것은 시 것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내고, 그러나 읍면 지역으로 가는 것은 100% 다 국비에서 들어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국가지원지방도 20건은 비율로 매칭으로 이렇게 곱하다 보니까 34억도 나오고 55억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그 뒤쪽에 자른 것은 거의 국고 지원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국토해양부기획조정실장 정창수** 거의 국비입니다. 맞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서 넣고 빼는 거지요?

○**국토해양부기획조정실장 정창수** 예.

○**김광림 위원** SOC에, 기획재정부에서 산업 중에 고용 효과가, 일자리 효과가 제일 높은 게 어떤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도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건축하고.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김용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 사업은 보통 투자의 2배 정도의, 생산 투자 효과가 크고요.

○**김광림 위원** 고용은?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김용환** 고용도 한 1.6배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고용 지수도 가장 높고, 산업 연관 효과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제창 위원** 이걸로 경기 부양합니까?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뭐냐 하면 주택 건설은 거기 벽지 바르는 사람에 뭐에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인건비 많이 떨어지지.

SOC는 다 장치 산업인데, 기계가 들어가는 건데 뭘 고용 효과가 그렇게 많아요?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산업별로 고용 효과, 산업 연관 효과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예, 알겠습니다.

○**최인기 위원** 내가 얘기 한번 할게요.

이게 1조 정도를 SOC 사업으로 했는데 내가 지금 보고 그동안 듣는 걸로 하면 이것은 시도지사나 지방의 신청주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아마 지역별로 그냥 완공 가능한 것을 받아 가지고 정한 것으로 내가 그렇게 언뜻 들었어요, 어느 도로부터.

그래서 근본적으로 1조 4억, 이것 다 시급하지요, 시작하고 중단, 떨어졌거나 이런 사업이 된 경우는. 그런데 근본적으로 SOC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됐어야 될 사업이다 해서 추경 편성으로는 적절치 않다, 예를 들면 국가재정법상 SOC 사업이 뭐에 해당이 되겠소? 이게 안 되지, 지금 재정법상으로는. 무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인정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될 걸로 알고 공사를 했대요. 외

상 공사했구면, 그러니까.

○**국토해양부기획조정실장 정창수** 일부. 다 그렇지 않는다고요.

○**최인기 위원** 업자들이 불법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하려고? 업자들 관행이 그렇습니다, 계속 할 테니까. 해서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계속 공사할 사람은.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고 여기는 대강 한 100억에서 150억, 200억 많은 것은 400억도 있고 500억짜리도 있어요. 철도 같은 것은 크구면.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을 완성할 수 있고 토지매수가 완료가 됐고 하는 그런 사업 순위를 좀 뽑아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관행, 추경에 의존하는 관행과 또 세계잉여금 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SOC 계속 완성해서 경기 부양을 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여러분 정부 측의 의도는 알겠지만 추경을 계속 이렇게 해서 편성하면 옛날 추경했었던 그런 방식이 되풀이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한 50%쯤 깎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우제창 위원** 작업을 해 봐요.

○**최인기 위원** 넘버를 매기든지 우선순위 1, 2번을 매기든지 그런 것을 한번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획예산처하고 상의해서.

내 얘기가 어떻습니까? 답답한 얘기를 했나, 내가?

○**류근찬 위원** 답답하게 들릴 것 같아.

○**국토해양부기획조정실장 정창수** 상당히 곤란한……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저는 그렇게 들리네.

자, 예산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최인기 위원** 아니, 그렇게 들릴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지금 저희들 SOC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분류를 할 때 SOC라고 되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고유가 관련되는, 그중에서도 유류비 절감이라든지 또 수송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미 여러 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 국가지원지방도로, 국지도 같은 경우는 균특 회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지방상수도다 아니면 재래시장이다, 전통시장이다 이것도 균특 사업인데 저희들은 균특 회계에 관련

해서는 계정의 여러 요소를 감안을 해서 지방별로 전부 한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를 깎게 되면 각 지방별로 전부 다 그 비율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특히 국지도는요.

그리고 국지도 이것은 아까 김광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지방의 요구를 다 받아들여서 지방에서 자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했기 때문에 단 단위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제창 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여기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그러니까 균특의 경우에는 만약에 국지도를 50%,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르게 되면 국지도 말고 다른 사업을 또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지방별로 지금 현재 배분이 되어 있는 것을……

○**우제창 위원** 수고스럽더라도 국가재정법의 정신과 추경의 원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지요.

○**류근찬 위원** 지역별 언페어(unfair)한 게 너무 많구만. 국지도도 지금 충청남도는 달랑 다리 놓는 거 하나 올라왔네. 이거 왜 이렇게 전부 말이야……

○**우제창 위원** 경기도는 더 없어.

○**최인기 위원** 여러분이 균특 비율이라고 하는데 시도별로 그렇게 또 안 맞는 거야.

○**류근찬 위원** 별로 없단 말이야. 지금 사업들이 영남에 치중돼 있어.

○**김광립 위원** 시도별로 공식같이 다 나와 있어요.

○**최인기 위원** 아니, 지금 옛날 양여금 갖다가 다 한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현재 균특은 개발계정하고 혁신계정하고 제주계정하고 세가지가 있습니다. 혁신계정은 국가에서 일단 신규사업은 국가에서 간여를 하고 자율계정에 한도를 주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개발계정에 한도를 주기 때문에 그 개발계정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개발계정 내의 다른 사업을 또 가져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지도하고 재래시장하고 지방상수도의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가 배정받은 한도 내에서 가장 시급하고 또 유류비 인상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 또는 지역의 아주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국지도에서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하신다면 다른 쪽에서 요구되는 사업을 찾아야 하는데 지방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해서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인기 위원** 균특회계의 예산은 여기서 삭감이 되면 그게 뭐 어디로 다른 데 가는 거요? 다른 데다 쓰거나 놓아두었다가 내년 당초 예산에서 비율을 맞춰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류근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별로 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에서 전부다 ‘왜 우리는 이렇게 실링이 됐는데 이렇게 잘랐느냐’ 국지도를 요구한 지방자치단체는 아마 불만을 표시할 것입니다.

○**최인기 위원** 본예산에 계상해 주는데 무슨……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그런데 본예산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균특에 배정돼 있는 1995억 중에서 공식에 의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인기 위원** 그러면 추경의 이것은 여러분이 균형을 맞춘 거요? 당초 예산하고 추경하고도 균형이 맞다 그거예요? 그러면 충남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균형에 안 맞는 것인데 왜 이렇게……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배분공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까지도 계속 적용을 해 왔던 공식이고……

○**최인기 위원** 아니, 글썄 나도 양여금공식 봤는데 나도 공식 보여줘 봐.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그것은 대외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인기 위원** 뭐, 대외비?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내부적으로 밖으로 안 나가게 돼 있으니까……

○**최인기 위원** 아니, 이봐, 이 사람아! 예결소위에 와서 대외비니까 공식을 못 보여주겠다는 게 말이 되나!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열람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인기 위원** 사람들이 말을 조심해야지.

○**권경석 위원** 자, 그러면 결론은……

○**최인기 위원** 대외비라?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열람을 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일반 공개를 못 한다는 뜻이야……

○**권경석 위원** 여기에 전체적으로 국대도, 국지도, 철도 그다음에 산업단지 진입도로 이거 전체 합해서 각 시도별로 나누어 보니까 형평에 맞다 그러나 종류별로 따지면 다를 수도 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유형별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시도별로 어느 정도 균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국지도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도 성격이거든. 원래 본질은 지방도 아닙니까? 지방도인데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뿐이다, 본질은 지방도다, 그래서 균특에 포함돼 있다, 균특이라는 것은 시도별로 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항목별로 조정하는 것은 시도의 의견을 물어서 최종 결정하는, 이른바 상향식 예산 배정 구조 아니요? 예산을 밑으로 내려줄 때는 탑다운방식이라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것은 국대도에 집중적으로 선택한다면 전체 묶은 동일한 비중이기 때문에 국지도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감안해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도로 부분은 원천적으로 SOC 시설 투자가 계속 줄어왔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면 아우성이라는 것은, 시장·군수들이 지금 정말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거든. 빗발치는 비난도 받고 육도 먹고,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 홈페이지에도 그런 글 막 올라와요.

그런데 이번에 딱 보니까 대개 10년 내지 11년, 2011년으로 완공시점을 맞췄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완공 위주로 집중지원하겠다는 그런 방침 아니요? 그러면 앞으로 2~3년 후에는 바로 교통 소통 효과, 그로 인한 수송비 절감, 그

사이에 또 고용증진 효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달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다만 우리 위원님들은 이게 추경의 원래 목적에, 취지에 부합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란 말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추경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된다고 봅니다만 안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중점적인 사유, 여러분들 정부의 입장, 이런 것을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하세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예.

○김광림 위원 다 끝났습니까?

○권경석 위원 예.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회계에서 삭감하면 그 돈이 남아 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지요, 일반회계 사업이면?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예, 다른 사업에 투입……

○김광림 위원 다른 사업에 쓰든지 재원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균특은 애초에 인구하고 뭐 다해 가지고 골고루 퍼는 그 비율 범위 내에서 이게 예산 편성한 거예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그렇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런데 보니까 대구의 성서 5차는 집행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는 것은 전체로, 예를 들어 가지고……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그것은 교특입니다.

○최인기 위원 산업단지 진입도로입니다. 국지도하고 달라요.

○김광림 위원 예, 그러면 그건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0.3%까지가, 대구의 총사업비 294억짜리 금년에 시작한 것을 80억에서 100억 더 올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역별로 보니까 대구가 이번 추경에서 300억으로 전체적으로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대구가 좀 빠지니까 이것을 맞추어서 3%짜리도 넣은 면이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지방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을 배분을 하고 그 안에서 시급성을 고려를 해서……

○김광림 위원 균특은 그렇게 했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균특이 아니라면서요?

○최인기 위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산업단지는 조성이 돼 있는 데……

○김광림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게 보면 아까 지역별로 거의 다 맞추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예.

○김광림 위원 그런데 대구는 보니까 전부 300억이라고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그런 게 조금 고려는 됐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런 거지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예.

○김광림 위원 충남은 보니까 677억이고.

그리고 이런 것은 깎는다고 하면 아까 집행률에 따라서 재원을 50% 맞추는 방법도 있지만, 한다면 사실 10%면 10%, 20%면 20% 일률적으로 깎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집행률과는 관계없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 깎는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30% 깎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진도비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란 말이에요. 진도비를 고려해 가지고 이 사업은 건너내고, 어디 건너내고 하다 보면 균특 전체 배분하고 도별 배분이 또 일그러지는 거지요.

○우제창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깎으려면 퍼센티지로 깎아야지……

○최인기 위원 비율로 깎는다면 퍼센티지로 깎아야지요.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진도율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 깎는다면……

○우제창 위원 정확하게, 그게 제 생각이예요.

○김광림 위원 깎을 거냐 안 깎을 거냐, 그런 것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를 협의를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그렇게 깎았을 때의 문제점은 내년도 완공이 가능한데 10%를 깎으면 내년도 완공이 불가능하고 그다음해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제창 위원 그러면 그런 것만 골라주세요.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그러니까 조기 완공한다는 취지에 지금 어긋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국토해양부제2차관 이재균 예.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각 부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부처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들끼리 의논할 일이 있으니까 잠깐만 나가서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 주무 부서야 어차피…… 지금 각 부처에서 나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희들이 앞으로 밤늦게까지 식사도 하고 논의도 해야 되는데 다른 부처에 있는 분들도 다 대기시킬까요, 아니면……

○우제창 위원 예산 쪽만……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아까 한전하고 가스공사 관련해서 지식경제부 쪽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광림 위원 지식경제부는 누가 좀 있어야 되겠구먼……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 대안들을 가지고 대안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그러니까 지식경제부하고 예산 주무 부처는 있어야 되고, 국토해양부나 농림부, 보건복지부는 어떻습니까? 일단 철수해도 좋다고 할까요?

○우제창 위원 어차피 또 내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도 시간이 있잖아요.

○최인기 위원 예산담당관하고 여기 기획재정부하고 연락망을 구축해 놓고 다른 부처는 들어가지.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망은 구축하고.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떠나도 좋다 이거지요?

○최인기 위원 그렇지요, 지식경제부하고 기획재정부만 남고.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그러세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책임자들하고 지식경제부 분들만 좀 계시고 나머지 부처는 연락만, 오늘 꼭 찾을 일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30분 내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전문위원이 그것을 좀 전달을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됐고.

이제 각 부처로부터 우리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각 위원님들도 각 당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 보시지요.

이것 가지고 해야 되지요, 심사자료?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예, 조정안 가지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위원장님이 방송 출연

때문에 가셨는데, 각 당의 의견을 받아 놓는 것까지 제가 위임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두 분 의견을 많이……

○우제창 위원 간사님께서 대표로 말씀하시지요.

○최인기 위원 제가 비교적 말을 적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인데……

○우제창 위원 제가 좀 보충하겠습니다.

○최인기 위원 류근찬 위원 어디 가셨나요?

○권경석 위원 오셔야지.

○최인기 위원 오면 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안 계실 때 제가 한 가지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조정안 심사자료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아까 우 위원님께서 지식경제위원회 소위에서 합의를 봤는데 저희한테 공식 문서가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공식문서가 아닌 것을 저희가 여기다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사실상 여야간에 합의를 봤다고 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의 자료를 정리해서 가지고는 있습니다.

○우제창 위원 그것 외에는 다 보류다 이거지요.

○김광림 위원 추가로 해 주셔야 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평채 발행 그 합의한 것 그것도 하나 넣어 주도록……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외평채 부분도 아까 김광림 위원께서 제안하셨기 때문에 넣겠습니다.

○우제창 위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많습니까? 합의는 해 놓고서 공식 서류로 안 온 게?

○우제창 위원 아니, 합의를 한 게 얼마 안 돼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금액으로 치면 얼마 안 됩니다. 총 681억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아이템으로는 몇 개?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사업명으로는 네 꼭지입니다.

○우제창 위원 그것만 합의를 한 겁니다, 여야가.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우리가 합의를 했는지는 모르고 그렇게 하면……

○우제창 위원 허범도 위원님이나 김태환 소위 위원장님이시니까요……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전문위원이 합의된 것은 확인하신 거예요? 어떻게 전달받으셨어요, 그 내용을?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이것은 공식 문서로는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합의를 못 봤기 때문에. 다만 우리 우 위원님께서 해당 소관 위원회 위원이셨고 거기서 일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저쪽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 가지고 정리한 것이지, 저희가 공식 문서로는 이것을 접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그러니까 확인은 해 보셨어요? 거짓말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그런 건 아니지요.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셨느냐 이거예요.

○**우제창 위원** 아마 허범도 위원님이나 김태환 소위원장께 한번 여쭙어 볼……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이것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식 문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가만있어, 안 받았으면 부처의 의견도 안 들었을 것 아닙니까?

○**우제창 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3일 동안 부처를 데려다 놓고 굉장히 열심히 토론했어요. 하지만 지식경제부라는 게 아시겠지만 추경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 아닙니까? 평행선을 달리니까 도저히 안 돼서……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글썄, 그것은 아는데, 지금 양당 간에 합의가 되었다는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식경제부도 알지요?

○**우제창 위원** 당연히 알지요.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그 사람들 안 갔으니까 그것 할 때는 그러면 그분들 얘기를 들어 봐야겠네요.

○**우제창 위원** 당연히 압니다. 아까도 제가 지식경제부 차관 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논의는 되고 의결은 안 되고?

○**우제창 위원** 논의해서 일단 합의가 네 쪽지만 된 것이지요. 681억인가 그것만 된 것이고 나머지는 다 보류가 되고.

○**김광림 위원** 나머지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가요?

○**우제창 위원** 아니, 나머지 속에 가격 보

조……

○**김광림 위원** 이거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합의가 되었다는 겁니까?

○**우제창 위원** 그것은 합의지요, 합의. 그 네 쪽지가 합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김광림 위원** 저소득층 에너지……

○**우제창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합의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저희는 이것을 공식 안건으로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다면 해당 부처 의견을 물어 가지고……

○**김광림 위원** 나같이 이렇게 하든지 누가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외평채 제안하시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지요.

○**김광림 위원** 그렇지요, 외평기금 하듯이……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우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제창 위원** 그래요, 봅시다, 한번.

(수석전문위원, 우제창 위원에게 자료를 건넨)

맞아요, 이게. 이것 165억 이하 이것…… 10억 감액이니까 맨 밑에 것 165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그것을 제안을 하겠습니까.

○**우제창 위원** 예, 그런 겁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그러면 전문위원, 아까 지식경제부 차관인가 누구 있을 때 의논할 걸 그러지 않았어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예, 지식경제부만 남겨 놓고 나머지 부서는 제가 연락망을 구축해 놓겠습니다.

○**우제창 위원** 위원장님, 아까 사실은 지경부 이재훈 차관이 계실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때 이재훈 차관이 다 고개를 끄덕거린 사안입니다. 이것 뭐 다 서로 얘기했던 건데…… 지금 이재훈 차관 계시면 부르세요. 확인하라고 그러세요.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그래요, 무슨 내용인지도 우리는 모르지요?

○**우제창 위원** 모르지요, 어렵지요. 세밀한 내용이라 잘 모르시지요.

○**김광림 위원** 지금 속기되고 있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예, 다 되고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다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예, 그러면 우 위원님이 이것을 좀 설명하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록이 되도록 하십시오.

○우제창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 오시면 하지요, 차관님을 봐야 되니까.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자, 그러면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가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의견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런 과정에서 여야 간에 합의된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우제창 위원님이 우리 소위에서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우제창 위원 지식경제위원회 예·결산소위에서 여야가 비교섭이신 최연희 의원님을 모시고 여야 다 같이 해서 3일간 아주 열띠게 토론을 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국내외 자원 개발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개발 문제라든지 또는 특히 중요한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가격보조 문제, 큰 건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마는 그런 와중에도 이 4건, 저소득층 에너지시설 효율 개선 135억,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500억, 저소득층 연탄 보조 46억, 전력효율향상사업이 175억인데 10억 그 스마트계량기사업 그것은 보류하기로 하고, 이 네 꼭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를 했다는, 통과시켰다는, 그렇지요? 합의에 이르렀다는 그러한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그러면 이것을 합의하는 과정에 지식경제부에서도 참여를 했습니까? 논의하는 과정에?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그때 들으신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식경제부의 입장을 하나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지식경제위 소위에서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의장직권으로 심사기한을 정해서 예결위로 넘어온 거고요. 다만 논의 과정에서 우선 여야 간에 이견 차이가 없는 사업이 뭔지를 사업별로 죽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원안대로 가도 괜찮겠다라고 얘기가 되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이 네 가지 사업만 합의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방망이를 두드린 적은 없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그것은 이해하는데, 이게 원래 추경안에 있던 사업이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그런데 저소득층 에너지 시설 효율 개선 이것은 여기에 내용이 없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줘야 위원님들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제창 위원 각각 네 꼭지에 대해서 내역을……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차관님이 좀 뭐하면 국장이나 누구를 시키셔도 좋아요.

○김광림 위원 이 당초가 지금 추경안에 넘어온 건가? 본예산에 있던 게 아니고?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추경 정부안에 들어 있던 겁니다.

○김광림 위원 그런 것을 135억 더 보태고 이것 보태는……

대신에 재원 없는 증액?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아닙니다. 증액이 아니고요. 이게 정부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그런데 여기에는 없네. 전문위원, 왜 여기에는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소관위원회에서 합의를 봐 가지고 저희 예결위원회로 공식적으로 넘어오는 문서만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아니, 이 네 가지가 원래 정부안에 있던 아이템이라면서요?

심사자료에 있어야지, 전문위원 말씀대로라면 공공요금 안정 지원도 합의가 안 됐으니까 심사자료에 있으면 안 되지.

○류근찬 위원 심사자료에 올라와야 돼요.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그런데 왜 이걸 안 넣으셨냐 이거예요.

합의가 다 됐으면 다 안 넣든가 다 넣든가 해야지.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우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 사업명이 정부의 추경안에 당초에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정부 추경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여기 자료에 없으니까.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공식 문서 하고 정책질의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문제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내용을 담았어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넘어온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라고 해 가지고 별도 자료를 만들어 놔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전문위원을 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야지.

○**최인기 위원** 전체를 넣어야지.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우리가 심의할 대상은 정부에서 제출한 것, 의원들이 제안하신 것, 그런 게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인기 위원** 전문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법규정에 맞게, 그러나 소위 심사할 때 전체를 놓고 해야지.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아니, 정부안이 있었다면서, 이 네 가지.

○**전문위원 류환민**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가 없었습니다.

○**최인기 위원** 없었더라도 총액은 와야지.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있든 없든 우리가 추경안에서 통과시킬지 안 할지 항목대로 다 의논해야지.

○**최인기 위원** 그렇지. 봐야지.

○**전문위원 류환민** 그래서 소위 심사자료에 들어간 것은 우선 우리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신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검토보고서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감액이나 증액이나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아니, 그런데 실무적으로 한 설

명인데, 설명은 잘 알겠는데 정부에서 국회에 보낸 추경안 중에서 오늘 논의 안 한 것이 이것 4개뿐인가, 아니면 다른 부처도 또 있는가?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또 있다면 안 되지. 큰 일 나지.

○**김광림 위원** 또 있어요?

○**류근찬 위원** 재경위 것 있을 수 있지.

○**최인기 위원** 재경위도 있겠는데?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아닙니다. 재경위원회는 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 하나 있었어요.

○**김광림 위원** 재경위는 없어요. 아까 군특도 논의되었고 외평기금 되었기 때문에 문제없는데 이것 말고 빠진 게 있는지……

○**류근찬 위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두 군데가 안 넘어왔다는 거 아니야.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재경위원회하고 지식경제위원회.

○**류근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장이 직권으로 넘긴 것 아닙니까? 그 순간 끝나고 일단 다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게 다 같이 넘어와야지.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정부안이 그대로 넘어와야지, 대상으로.

○**류근찬 위원** 넘어와야지, 의장이 직권으로 넘겼으면.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아직 논의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류근찬 위원** 내가 볼 때는요 빨리 이 작업을 해서 여기에다가 첨부시켜 주셔야 돼.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그러면 언제 해, 이걸 또.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지금 작업 중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지금 작업해서…… 지금 지식경제부차관님이 실무국장이나 누구 시켜서 설명 좀 해서 빨리 설명 듣고 우리 의견을 좀, 의문 사항이 있는 것 의논하고 합시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자료 준비되는 대로…… 그런데 구두로 우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김광림 위원** 아니, 기획재정부에서 한번 봐요. 지식경제부 이 네 가지만 넣으면 정부가 국회에

보낸 것은 다 커버되는 거예요?

○**최인기 위원** 총괄국장이 알 것 아닌가.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 전문위원실에서 오늘 보고드리고 논의된 사항은 종합정책질의하고 상임위하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김광림 위원** 됐어, 그건 아는데 빠진 게 있느냐, 없느냐만……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그 내용 중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 말고도 빠진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환민** 몇 가지 있습니다.

○**류근찬 위원** 빠진 게 몇 가지 더 있어요?

○**최인기 위원** 사무 능력이 이렇게 없을까.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아니, 빗들을 하는 거예요.

○**최인기 위원** 당연히 기획재정부에서는 총괄리스트를 갖고 체크를 쪽쪽 해 가야지 최종 정리하지.

○**권경석 위원** 설명해 보세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에너지시설 효율 개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가구당 100만 원 내에서 노후 보일러 교체사업하고 또 단열·창호 시공 등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금년 본예산에는 2만 5000가구를 계산해서 150억을 책정을 했는데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에너지 빈곤층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만 2000가구를 더 추가해 가지고 총 4만 7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시설 개선 작업을 저희가 해 줄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경석 위원** 그것까지 내가 하나 질문할게요.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그러면 얼마를 추경안으로 금액을 내신 거예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추경안은 본예산은 150억이고요. 추경예산안은 28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135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위원님, 이걸 정부의 추경요구안이 여야 간에……

○**우제창 위원** 다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이의가 없었다 이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것만 10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다 이런 취지시지요?

○**우제창 위원** 예.

○**권경석 위원** 내가 확인 하나 해 볼게요.

여기에 저소득층 에너지시설 효율 개선 150억은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고……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135억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여기 보고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목록 안에는 이 항목이 없는 것이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없는 것입니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지금 거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수석전문위원께서 대체토론 시에 아무 의견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빼놓은 것 같습니다.

○**권경석 위원** 알았습니다.

○**최인기 위원** 에너지절약시설설치는 뭐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은 에스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에스코사업은 A라는 공장이 있으면 그 공장에 대해서 에너지효율을 제3의 업체가 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시설투자를 유도시켜서 거기에서 에너지절감효과가 예를 들어 50억이 나오면 50억을 당해 회사와 그 에스코사업자가 같이 나눠먹는 그런, 선진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에너지절약을 할 때는 이 에스코사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요신청자금의 80% 이내에서 지원을 하면서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는 용자자금입니다. 그래서……

○**최인기 위원** 신청자금의 80%를 지원하는데 3년 거치……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5년 분할 상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4837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수요도 많고 에너지절약효과가 높기 때문에 500억을 더 해 달라고 했고……

○**최인기 위원** 이게 자치단체에서 보안등 교체

를 에너지절약시설등으로 바꾼다 그런 사업하고는 달라요? 기업만 합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것은 지역에너지시설자금이라고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인기 위원** 이것은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습니다. 에스코사업자에 대해서 용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최인기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용자를 받아가지고 기업에 그런 에너지효율화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나중에 절약된 돈이 나오면 그 업체하고 업자하고 나눠서 갖는 거예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코가 에너지세이빙컴퍼니라고 해 가지고 이 자금의 소요도 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자기 공장에 어디서 열이 새는지 전기가 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그 중소기업에 가 가지고 보일러의 효율을 체크해 주고 그다음에 전기배선을 체크해 줘 가지고 '이런 부분에 한 10억 투자하면 당신은 앞으로 향후 10년간 에너지절약효과로 해서 매년 예를 들면 5000만 원씩 절약이 된다' 그러면 OK 하면 그 돈을 정부에 용자사업으로 요청을 하고 그 돈을 80% 범위 내에서 용자받아 가지고 시설 교체를 하면 실제로 4000만 원씩 매년 남으면 그것을 둘이 나눠먹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경석 위원** 이것도 기존의 추경예산안에는 없는 신규죠?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아닙니다. 이 사업은……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이 4개 다 있었던 거야.

○**권경석 위원** 본예산에는 있지만 추경항목에는 없는 거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이것도 어제 대체토론에서 전혀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권경석 위원**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항목을 신설해야 되거든.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아니요, 이것은 항목신설이 아닙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권 위원님, 전문위원이 우리의 회의 대상 자료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이 네 가지 안은 당초 정부의 추경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야 간에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 이의 없다고 합의가 됐던 건데 전문위원의 생각이 저회하고 달라서 우리 논의대상 자료에 안 넣었을 뿐이지 정부안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식경제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새로 넣은 게 아닙니다.

○**우제창 위원** 넣은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것을 합의했다, 서로 간에. 그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예요.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다음, 저소득층……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세 번째 사업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연탄가격이 올라가면 그 인상분만큼 정부가 쿠폰 형태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연탄가격을 생산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연탄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쿠폰 형태로 해서 직접 보조를 해주자 해 가지고 당초에 기초생활수급가구 4만 가구에 대해서 1년에 한 7만 7000원씩 보조해 주는 예산으로 해서 30억을 본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연료비가 하도 올라가니까 저희가 차상위계층 6만 가구도 추가해서 연탄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쿠폰 형태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 해서 46억을 추가로 추경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최인기 위원** 가구당 얼마 준다고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가구당 약 7만 7000원입니다.

○**최인기 위원** 연간입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연간인데 연탄을 많이 때는 게 동절기에 한 3~4개월 되는데 한 달에 한 100장 정도 때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장수에 대해서 저희가 개당 한 300원씩 해 가지고 쿠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연탄 몇 개 때는지는 어떻게 파악을 해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대개 지금 연탄의 기초열량이 있기 때문에 적게 쓰는 데는 하루에 2장씩 같고 조금 많이 쓰는 데는 하루에 3장씩 쓰는데……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그러니까 2장인지 3장인지 어떻게 파악하시냐고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저희들 에너지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연탄을 날라 주고 하는데요. 거기서 월 가구별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그분들이 조사를 해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그다음 전력효율향상사업 설명해 주시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이것도 저소득층 가구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두 가지를 교체해 줍니다. 하나는 조명기기하고 그다음 안전기, 그러니까 노후된 조명기기 같은 것은 무상으로 바꿔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이것도 536억을 책정했는데 사회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65억 원을 증액해 가지고 저소득층은 당초에 6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7만 원을 더 추가했고 사회복지시설은 550개소인데 이것을 800개소로 확대해서 거기 소요되는 예산 165억을 책정했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체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억 원은 스마트 계량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현재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조명기구는 아닌데 지금 저희가 가정에서 전기를 가장 쉽게 절약하는 것이 스마트 계량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량기는 거실에 계량기를 놔두고 있으면 주부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전기를 몇kW 쓰고 있고 현재까지 내가 납부해야 될 전기요금 얼마다라는 게 자동으로 체크되어 나오는 그런 계량기로 일본도 지금 보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용이나 이런 데서 전기를 절약하려면 이 기기를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보급시키려면 첫째 기기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일종의 시범단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설치했을 때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실측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설치할 때 필요한 스펙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테스트베드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여기에 10억을 넣었는데 저희 지경위 소위에서는 165억에 대해서는 저소득층하고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이견이 없는데 이 10억은 그게 아니고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거니까 이것은 여기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

기는 감액으로 표현돼 있지만 논의를 보류한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식경제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하루빨리 시범단지를 정해 가지고 일정 단지에 그것을 보급했을 때 전체적인 전력 계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설치했을 때 규격기준이 맞는지 이런 것을 빨리 체크해 가지고 제대로 보급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 정도는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추경에 집어넣은 겁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10억 깎기로 하는 건 여야 합의가 됐던 겁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깎기로 한 건 아니고 논의를 보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경위 소위에서 사업별로 죽 논의를 하는데 공공요금 보조 같은……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165억은 합의가 됐고 10억에 대해서는 논의가 왔다갔다 하다가 결론이 안 났다 이겁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하다가 결론이 안 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논의 대상에서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총괄국장은 이 4개를 포함해서 전부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체크해서 작업 중입니다.

○**김광림 위원** 이것 보니까 한 4~5쪽지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한번 물어보고 우리는 저녁을 먹든지……

○**최인기 위원** 실무자 한 사람이 누가 딱 붙들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보지……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저희 실무자하고 저쪽 실무자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인기 위원** 기재부하고 같이, 기재부가 우선 해야지 전문위원실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획재정부예산총괄과장 박춘섭** 예산총괄과장입니다.

작업하는 데…… 지금 잠정적으로 보면 한 8개 정도 빠져 있고요. 그런데 이게 빠진 이유는 아

까……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아니, 과장은 말이에요, 우리 전문위원실에다 이런 거 제대로 만들었는지 한번 체크 안 해 봐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과장 박춘섭** 기본적으로 소위에서 심의자료는 여기에서 논의된 자료만 지금까지 올라옵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논의된 자료만 만드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원래 빼고 만든 자료가 맞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아니, 이것도 논의된 거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 전체 예산이 프로그램 단위나 세부사업별로 보면 몇천 개입니다, 8000개 이상 됩니다. 그것을 이 추경 같은 경우는 다행히 사업 꼭지가 몇 꼭지가 아니니까 그걸 다 넣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라는 여야나 상임위원회에서 옳다고 봐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종합정책질의에서도 논의조차도 하지 않은 사업을 조정안에다가 다 집어넣게 되면 조정안 분량이 굉장히 커 집니다.

종전에도……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전문위원, 나도 잘 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전문위원 생각대로 소위에서 논의를 안 했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류환민** 그러면 원안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정부안대로 인정해 준다?

○**전문위원 류환민** 그렇습니다.

○**우제창 위원** 아니, 큰일 날 사람들이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최인기 위원** 계수소위는 총액을 확정하고 내역을 보는 것이지 총액도 확정 안 하고 내역을 보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무 처리가 어떻게 그런 처리가 있다. 답답한 분들이네.

○**권경석 위원** 본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추경도 이따위인데. 본예산도 얼마나 방대한데.

○**최인기 위원** 전문위원 보세요.

우리 소위는 총액 4조 9870억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그중에 쟁점 있는 사항만 여기에서 뽑아

서 한다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전체를 포함하는 가운데 그다음에 쟁점이 나오고 조정안이 나와야 이게 맞는 시스템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말씀하신 대로 바꾸겠습니다.

○**최인기 위원** 그래야지 결론이 소위에서 총액 내서 이견이 없는 것, 논의한 것을 증액·삭감해서 합계가 딱 맞아야 당연한 얘기지. 회계장부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우제창 위원** 여기 심사자료가 4조 9000억이 나와야 되는데……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 논리대로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다 합의되면 우리 예결위원회나 소위는 논의할 권한도 없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아닙니다.

형식상 총액에 대한 보고를 다 드리고……

○**최인기 위원** 알겠어요.

어쨌든 전문위원실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 그렇게 인정을 하자고.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그런데 빨리하시라고.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할까요?

○**최인기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총괄국장한테도 얘기하면 여기 정리할 때는 예산 총괄하는 사람하고 전문위원실이 같이 작업을 해야 돼.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최인기 위원** 같이 하라고, 같이.

그런데도 이게 빠졌다고 그러면 더 이상한 거고, 이건 작은 실수였다고 치고 지금부터는 작업을 같이하고 총괄 리스트, 원 그 명세서를 갖고 죽 대조를 하면서 작업을 해야 빠트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소위원장대리 이사철**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에 저녁 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회의중지)

(21시1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한구**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남아 있는 게

뭐 뭐입니까?

○**이사철 위원** 이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심의자료에서 몇 가지 빠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가논의 사업’을……

그런데 이게 다 같잖아.

○**소위원장 이한구** 뭐가 빠져요, 빠지기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안에서 세부 사업들 중에 소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논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개 부처 9개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 시에서 정부 원안에 대해서 별다른 말씀이 없어서 관행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빼놨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래서 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예.

○**소위원장 이한구** 이런 것은 보통 안 하잖아?

○**권경석 위원** 그런데 지식경제부 소관 중에서 수정을 가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빠져가지고 한번 챙겨 보겠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한구** 아, 그래요?

○**최인기 위원** 여야가 합의해서 수정한 것이 빠졌다고?

○**소위원장 이한구** 그런 게 있었어요?

○**이사철 위원** 지식경제부의 전력 효율 향상 사업 10억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면서요?

○**우제창 위원** 보류입니다.

○**이사철 위원** 보류했다면서요?

○**우제창 위원**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보류입니다.

○**이사철 위원** 스마트 계량기,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나머지 추가논의 사업은 아마 여야 이견이 없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전혀 문제점이 지적 안 된 것 같은데 이것 처리 방향을 좀 정하십시오.

○**소위원장 이한구** 이것은 다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관례가?

○**우제창 위원** 그대로 하는 게 뭐예요?

○**소위원장 이한구** 원안대로 하는 거지요.

○**우제창 위원** 원안대로가 아니지요. 이것은 지금 지식경제위원회 소위에서 보류로 올라온 건데 원안대로 하면……

○**이사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 말고, 이 큰 자료 있잖아요.

○**우제창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다시 논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한구** 보통은 상임위에서도 문제 안 삼고 또 우리 종합질의 때 문제 안 삼고 전문 위원도 문제 안 삼은 것은 터치를 안 하는……

○**우제창 위원** 아니, 이것 상임위에서 다 논의한 겁니다.

○**이사철 위원** 그러니까 논의해서 여야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도 문제점 지적이 없어서……

○**류근찬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수 조정 작업 하면서 건드릴 수 있는 건데…… 계수 조정에서 건드리지 않고 그냥 보내 주라는 무슨 법령 있어요?

○**최인기 위원** 한 분씩 얘기합시다.

○**우제창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뭐냐 하면, 지경위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야 간에 합의 도출안을 이룬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보류하기로 한 거예요.

보류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 이견이 너무 커서 예결위에 보내서 ‘거기서 다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뤄야지요.

○**소위원장 이한구** 그게 여기에 있어요?

○**우제창 위원** 다 있지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류근찬 위원** 뭐가 있어요? 이게 여기 안 녹아 들어 있다는 것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제창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됐고요.

○**류근찬 위원** 된 게 뭐예요?

○**우제창 위원** 이것은 합의가 됐고요.

○**류근찬 위원** 나는 우 위원님 말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자,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여야가 일단 합의를 했어요. 이것은 건드리지 않고 2개가 의장직권으로 이리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정부안으로 넘어왔고, 이것은 합의안으로 넘어왔으면 심의자료에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제창 위원** 말씀 맞습니다.

○**류근찬 위원** 있어서, 우리 계수조정하면서 소위가 손을 댈 수도 있고 안 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왜 여기에 안 넣느냐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제창 위원** 맞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래서 넣어온 것입니다.

○**류근찬 위원** 어디 넣었어요? 여기에 이 내용이 안 들어 있다니까 그래.

○**김광림 위원** 이것은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류근찬 위원** 그러면 이것 ‘자, 조그만 종이 내놓고 우리 계수조정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해야지.

○**우제창 위원** 맞아요, 류근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류근찬 위원님이 나중에 문제 삼으시면……

○**류근찬 위원** 손을 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지금은 행정부로부터 설명 듣는 과정이지 위원님들 삭감·증액하는 것은 끝나고 다시 하면 됩니다.

○**류근찬 위원** 별도 자료를 또 줍니까? 삭감·증액할 때, 이 자료 말고? 또 줘요? 왜 자꾸 그래?

○**김광림 위원** 아니, 지경부의 앞에 했던 것 그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류근찬 위원** 안 들어가 있다니까.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인기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잘못 만들었어, 이 사람들이.

○**우제창 위원** 류근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경석 위원** 위원장님, 이해가 잘 안 가지지요?

○**소위원장 이한구** 글썄, 나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권경석 위원**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 내용을 못 보셨잖아요.

원래 우리가 상임위별로 심의를 해 가지고 올라운 그 안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그것을 토대로 종합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종합심의를 해 가지고 나온 그 내용 중에서 이견이 있거나 의견제시된 것은 전부 기재가 됩니다. 당초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상임위 안은 뭐고 종합심사 때 의견제시는 뭐다 다 정리가 되는데 아무 이견이 없는 것은 상임위 당초 안, 상임위 종합심의, 아무 이견

이 없는 것은 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딘가는 누구라도 한 번 거론된 것, 언급된 것은 다 기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위원장 이한구** 그렇지요.

○**권경석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4건은 족보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심의한. 그러니까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족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끼어 넣어 와라 이렇게 했던 말이야, 지금. 그 말 맞지요?

○**류근찬 위원** 예.

○**최인기 위원** 그러면서 다른 부처 것도 있는가 다 넣어 와라 그랬어요.

○**권경석 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가져온 것 중에 뭐 있어야 되는데 또 없네?

○**류근찬 위원** 없어요. 또 빠졌어.

○**우제창 위원** 거기 아마 있다고 생각해서 안 넣은 것 같아요.

○**권경석 위원** 그러면 이것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예.

○**최인기 위원** 그리고 그 원칙이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논의가 없었던 것이 소위에서 논의가 될 수가 있거든, 삭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리스트업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권경석 위원** 관례적인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 상임위 거론된 사항, 그다음에 종합심의 거론된 사항, 소위원이 여기서 제시한 사항, 그것도 안건으로 잡거든요.

○**김광림 위원** 본예산은 그렇게 못해요. 추경이니까 다 하고……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니까 또 그것 다 뒤적거리고 앉아 있으면 시간이 안 되니까 관례상 그런 것은 안 다뤘어요. 오늘 다루자고 그러면 다루는 것이지 뭐,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경석 위원** 그런데 그중에 특별히 소위원들이 추가로 건의할 것이 있으면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류근찬 위원** 뭘 알아야 건의하지, 족보를 보고 건의해야 되는데.

○**권경석 위원** 큰 책자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다 나눠 드렸고요.

○**권경석 위원** 어디 나눠 줬어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사무실에다 다……

○소위원장 이한구 지금 혹시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저기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하나만 가져와서 돌려봐.
 ○최인기 위원 책자를 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내가 봐서는 그동안에 뭐가 문제가 되면 몇 군데에서 다 체크가 되니까, 그렇게 해야지……
 ○김광림 위원 이것 가지고 그냥 1페이지부터 설명 들읍시다.
 ○권경석 위원 더 이상 뭐 거론할 것 있으면 하고……
 ○류근찬 위원 거론 안 해요. 이왕 하려면……
 ○권경석 위원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우제창 위원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맞아요.
 ○이사철 위원 10억, 이 문제는 결론을 내야지요.
 ○우제창 위원 10억, 그것 먼저 할까요? 스마트 계량기 10억 있잖아요, 175억에서 보류하기로 한 것? 그 10억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스마트 계량기가 뭔지, 왜 우리가 보류하자고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라, 이거예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시다마는 가정에서 전력을 절약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해서 일본도 지금 보급을 시작하고 있는데 가정주부가 거실의 미터기만 보면 현재 내가 몇 kW를 쓰고 있고, 현재까지 요금 얼마다라고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량기인데 저희가 10억을 배정한 것은 그 계량기를 설치하려면 시범단지에 그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실제로 전체 전력계통에 적합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그것을 설치할 때 기술기준이나 형식승인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전부 체크해서 그 규정까지 만들어 가지고 보급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급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용으로 10억을 추경에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제창 위원 그때 왜 이것을 보류하기로 했느냐? 저는 산자위를 처음 들어갔습시다만 산자위를 오래하신 분들이 계세요.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고 최철국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기술수준 또 실증연구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마트 계량기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전기를 아껴 쓴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 논리에 의

하면. 그런데 이게 뭐가 필요하나? 추경에서 빼라 그래서 우리는 빼자고 했던 거고 또 한나라당한 위원님은 그래도 10억인데 어떡냐, 넣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보류가 된 겁니다.
 ○김광림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 제품은 어느 특정 업체가 한 군데서 만듭니까, 많이 나와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아직은 그렇게 범용적으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업체 제품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업체가 하나만……
 ○김광림 위원 10억 계산하면 그 업체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사철 위원 아직 실용화가 안 되었으니까 많이 만드는 업체는 없겠지. 잘못하면 특혜를 줄 가능성이 있겠구먼.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아직 실용화가 안 되어 가지고 한두 개 업체가 아파……
 ○우제창 위원 글썄, 저는 10억을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권경석 위원 대세에 지장 없는 것이고 특정 업체 하나라면 여기다 꼭 집어넣어야 될 아주 시급하고도 긴요한 사업인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저희는 빨리 시범사업을 좀 해 가지고 기술기준이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보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권경석 위원 내년 본예산에 넣으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사실은 내년 본예산에 지금 넣기는 조금 타이밍이 늦어졌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전체적인 와꾸가 짜여져 있어 가지고.
 ○류근찬 위원 시범사업을 거쳐서 종합적인 평가를 한 뒤에 일반 사업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러면 10억이 일단 전제되어야 하네요, 이 사업을 하려면?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2008년 당초 계획 536억 원은 이 시범사업을 전제로 하는 예산입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것은 그 사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효율화사업이 250억이고, 거

기에는 일체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류근찬 위원** 그래요? 어떻게요?

○**김광림 위원** 10억 빼놓고 다른 것은 다른 사업이에요.

○**류근찬 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게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제창 위원** 조명기구 아니에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습니다.

○**우제창 위원** 조명기구를 좋은 것을 쓰자는 거거든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에 하는 사업이 536억인데 거기에 저희가 175억을 더 추가했는데……

○**이사철 위원** 165억하고 10억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구먼.

○**우제창 위원** 조금 다릅니다.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잘라낸 것입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추가하면서 같은 목적이라고 해서 같은 항에 10억을 더 넣어 놓은 겁니다.

○**이사철 위원** 그래서 이 스마트 계량기 만드는 업체가 하나예요, 여러 개……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지금 그걸 확인하러 갔습니다.

○**우제창 위원** 일단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지요.

○**이사철 위원** 그렇시다. 나중에 또 그것 정해도 되니까.

이제 이 앞의 것부터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한구** 어떤 걸로 할까요?

○**이사철 위원** 원래 우리 심사자료로……

○**소위원장 이한구**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김광림 위원** 정부에서는 국회에 넘어왔는데 우리가 안 본 것……

○**이사철 위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셨어요.

○**이사철 위원** 각 당의 의견을 교육과학기술부, 거기서부터 시작하지요.

○**우제창 위원** 이건가요? 새로 준 것 하는 거예요?

○**이사철 위원** 그거는 이론이 없으니까 추가로 누가 이론을 제기하면 논의하고……

○**우제창 위원** 다 해야지요. 지식경제부 다 이

의를 제기하는 거지요.

○**이사철 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다 이론 없는 것처럼 여기다 했어요?

○**류근찬 위원** 여기서 빠진 걸 주어서 다시 담은 거예요.

○**이사철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이, 빠진 이유가 여야 간에 다 합의가 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뺐다고 아까 그랬다고요.

○**류근찬 위원** 그 논리는 안 맞지.

○**이사철 위원** 이것 보세요. 추가논의 자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용자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 다 합의 안 됐던 겁니까?

○**우제창 위원** 다 너무 이견이 커서 보류하기로 한 겁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지식경제부 것만 그래요, 다른 데도 그런 거예요?

○**우제창 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우 위원은 지식경제부의 이 사항은 논의하자 이런 입장이지요?

○**우제창 위원** 당연하지요.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집어넣읍시다.

○**류근찬 위원** 아니, 농수산식품부 거는 상임위원회에서 OK 한 게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왜 종합심사에 안 붙었지요? 왜 뺐지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원래 이 종합심사 자료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은 삭감·증액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것하고요, 위원님들이 예산 종합질의 하실 때 문제를 제기한 사업이요, 삭감·증액한 거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걸 문제 사업이니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 가지고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듭니다.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나머지 사업은 정부 원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나 종합정책 질의 시예결위원들께서 그 부분은 괜찮다,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류근찬 위원** 그 논리는 안 맞지요.

그러면 예결위가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추경을 다루는데 상임위에서 이거는 뺐다고 손바닥 친 거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이 숫자도 못 본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

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밑받침 자료를 쥐야 문제 제기를 하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손바닥 쳤다고 이걸 여기 안 올리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상임위에서 손바닥 쳤지만 계수조정소위원들이 이걸 문제 있다라고 건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 기본 자료에 넣어 쥐야지요.

○**최인기 위원** 항목은 넣어야지.

○**류근찬 위원** 항목은 다 그대로 넣어 쥐야지요.

○**최인기 위원** 사업비하고, 이거는 한 줄은 넣어야지.

○**소위원장 이한구** 이렇게 합시다.

류근찬 위원님, 이것도 같이 다루자고요.

○**류근찬 위원** 아, 다뤄야지, 당연히 다루어야 되는 거지만 그냥 갈 수도 있고, 문제를 제기해서 어느 분이 이까짓 것 상임위에서 이렇게 됐는데 10억 감하자 하고 제의를 하실 분도 있잖아요. 그 밑바탕 자료를 쥐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 봐 가지고는 안 되지.

○**김광림 위원** 작년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추가를 하고……

○**류근찬 위원** 아니야,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소위원장 이한구** 아니야, 지난번에 다 그래 했어요.

○**류근찬 위원**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돼.

○**소위원장 이한구**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지간한 거는 다 어디선가는 걸러지게 돼 있던 말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지든지, 아니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걸러지든지, 아니면 우리 종합심사 할 때 걸러지든지, 제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만 갖고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나머지는 이의 제기 없었으니까, 그런 거지.

○**류근찬 위원** 그러면 그걸로 확정되는 겁니까?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니까 굳이 다른 걸 문제를 꼭 삼켰다 그러면 그거는 또 여기다 새로 넣으면 되는 거고.

○**이사철 위원** 또 우리 소위에서 누군가 문제 삼으면 다시 거론할 수 있다 이거지요.

○**소위원장 이한구** 그래, 그건 할 수 있어. 그런데 책을 다 넣자고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걸 다해요? 책이잖아, 책.

○**이사철 위원** 본예산 우리 류 선배 얘기대로 하면 무지하게 많다 이거예요. 본예산은 못 한다,

추경이니까 이거……

○**최인기 위원** 지난번 소위 심사도 했지요, 2년 전에.

○**류근찬 위원** 아니, 나는 2006년에 이 자리에서 심사를 했는데 왜……

○**소위원장 이한구** 그때 나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안 했더니까 그러네.

○**류근찬 위원** 그렇게 크지도 않더만 뭘.

○**최인기 위원** 추경 같은 거야 다 다뤄도 괜찮은 건데……

○**소위원장 이한구** 다뤄도 아무 문제없으니까 그렇게 잡시다.

○**이사철 위원** 하여튼 지식경제부는 안 됐더니까 합시다.

○**소위원장 이한구** 류근찬 위원님, 농수산 쪽도 다루시겠어요, 뒤에 있는 자료?

○**류근찬 위원** 아니요.

○**최인기 위원** 수입양곡대하고 정부 비축사업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거 늘리자 줄이자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소위원장 이한구**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자료를 일단 이것부터 합시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최인기 위원** 여기 안에는 이것이 빠져 있었어.

○**소위원장 이한구** 그렇지, 그걸 분야별로 집어 넣자고요. 뒤에 거는 보니까 4개 부처네.

○**우제창 위원** 그런데 앞에 거는 한 번 다 본 거고 뒤에 거는 안 했어요.

○**최인기 위원** 이걸 다 했어요.

○**소위원장 이한구** 다 했어요? 그러면 넘어가면서 빨리빨리 얘기해요.

○**우제창 위원** 했지만 보십시오.

지식경제부를 보자면 이거 다 감액이라는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터치만 한 거지 얼마를 감액할 거냐? 완전 삭감이에요. 또 해야 된다고요.

○**김광림 위원** 보니까 지식경제부는 전체 상임위에서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보내온 거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하면 보고, 아니면 넘어가고 그런 거지요.

○**소위원장 이한구**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류근찬 위원** 우선 계수조정을 하자고요.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우리 논의를 어떻게

할까요?

○**이사철 위원** 지식경제부차관이 와 있는데 지식경제부의 추가논의 자료 이게 한 번도 의논이 안 된 거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해야지요.

○**소위원장 이한구** 그럴래요? 그러면 질문하실 분은 이거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시고, 우리끼리 토론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가시고 나면 우리끼리 토론하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위원장님, 참고로 아까 스마트 계량기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제품 개발 단계에 있는데 우리 국내에 계량기 생산업체 한 6, 7개 업체가 개발하고 있고, 개발하는 업체들은 중소기업입니다.

○**류근찬 위원** 제품이 나와 있어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시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류근찬 위원** 그러면 언제 그걸 완료해 가지고 달아?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시제품을 아파트에 시범단지 지정해 가지고 그걸 가구별로 설치한 다음에 실제로 테스트를 해 봐야 됩니다.

○**이사철 위원** 그런데 기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될지도 모르는데 돈부터……

조금 더 있다 합시다. 본예산 할 때쯤 되면, 기계가 다 개발돼야지 개발 단계에 있는데……

○**소위원장 이한구** 그래 하시지요.

지경부는 우리 우제창 위원이 제일 전문가니까 질문하시지요.

○**우제창 위원** 기본적으로 뭐냐? 신재생에너지라는 것,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뭉뚱그려서 편하게 얘기하자면 이것은 대개 개발 단계고, R&D 개념이고, R&D 개념을 추경에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개 3년, 5년씩 걸리는 것이고, 효과보다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10년이나 걸려야 또 보는 것이고, 이거는 다 빼는 것이 맞다, 신재생이라고 써 있는 것은 다. 그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사철 위원**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용자사업 난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신재생에너지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러니까 태양

광……

○**우제창 위원** 태양광, 풍력, 지열 이런 거……

○**이사철 위원** 설비를 보급하는 걸 돈을 도와주는 겁니까, 용자사업?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그러니까 종류로는 태양광이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을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RDF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를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게 있고……

○**이사철 위원** 지금 그런 설비가 연구 단계에 있어요, 아니면 다 완성이 돼서 그걸 보급하는 것을 보급이 잘 되도록 돈을 빌려 준다는 겁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그걸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용자를 해 주는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용자를 해 줘서, 전체 소요자금의 90%까지 용자를 해 가지고 그 보급이 쉽게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사철 위원** 그러면 R&D보다는 이미……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거는 R&D 자금은 아닙니다.

○**우제창 위원** 요 용자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대개 R&D로……

○**류근찬 위원** 지금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태양광의 발전차액이 지금 한전에서 생산하는 발전 원가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정부가 일정부분 보조해 주면서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근찬 위원** 지금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자꾸 그 사업을 거둬들이던데, 무슨 진흥하는 대책 같은 것 없어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지금 저희가 발전차액을 2012년까지 조금 줄여 나가겠다고 예고제를 해 봤는데,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kWh당 발전단가가 670원 정도 나오고 한전에서 생산하는 원가는 107원 정도 됩니다. 그 차액인 570원 정도는 정부가 15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는 액수가, 예를 들면 작년엔 저희가 그런 지원에 들어간 돈이 250억이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추경에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500억을 넘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1800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태양광이 저희가 100% 기술개발을 완료한 게 아니고 한 60~70% 정도 기술개발이 되어서 중요 부품은 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 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면 정부가 발전 차액을 다 부담하면서 그냥 깔기보다는 이것을 개발하는 업체보고 스스로 기술개발을 해서 코스트다운을 좀 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670원이 되어 있지만 이 코스트를 향후 5년 동안 해서 계속 내려가야 정부의 보조 부담도 줄어들고 시장 기능에 의해서 보급이 확대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과 협의를 참 오래 했습니다.

물론 당장 670원하고 107원 차이를 보조해 주다 그것을 줄이겠다고 그러니까 반발은 있을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현재 기술 수준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15년 동안 계속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한 100MW까지 보급이 될 줄 알았는데 하도 이게 열이 붙어 가지고 금년 말에 한 200MW까지 이것이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품을 만드는 사람한테 기술개발을 해서 코스트다운을 하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지금 수준의 발전 차액 지원을 못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줄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류근찬 위원** 사업을 접는다고……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접기도 하고 은행에 가서 용자를 받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은행 대출심사가 좀 까다로운 그런 측면은 있는데……

○**류근찬 위원** 우리 지역에 30만 평 한다고 하는 사람이 소문은 다 내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래서 저희는 1MW 이하짜리는 그렇게 보조를 축소를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MW, 30MW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소위, 제가 이렇게 말씀까지 드리면 안 되지만, 그 차액을 보고 그렇게 대규모 용량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하는 데는 저희가 울 줄이는 것을 급격하게 하고 1MW 이하하는 것은 실제로 가정용이나 이런 데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의 보조 요소를 저희가 축소하지 않고 유지를 하는 상태로 그렇게 해서 제도를 지금 고쳐 놨습니다. 그리고 예고를 해 놨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급용자사업은 실제로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수요자도 자금 여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설치사업자한테 용자사업을 통해서 보급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저희가 563억 정도를 책정했는데 계속적으로 이것이 수요가 늘어나는데 특히 폐기물…… 그러니까 축사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활용해서 저희가 열도 생산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좀 하려는데 돈이 없으니까 용자사업을 하자 해 가지고 나머지 있는 기간 동안에 250억 정도는 충분히 보급사업에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런데 이 용자사업을 담당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지경부가 직접 해요, 아니면 어디 연구소에다 맡깁니까?

○**류근찬 위원** 이것은 기본적인 주체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다음 또 질문 있으세요?

○**우제창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면, 어차피 지금 산자부차관만 남아 있거든요, 이 늦은 시간에. 그래서 사실은 지경부 소관 예산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양반 모시고 지경부 소관,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것 다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신재생에너지, 자원개발, 그다음에 공공요금 보조 딱 나뉘지거든요. 이것 털면 예산이 끝나는 겁니다. 크게 가닥이 잡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분만 모시고 하면 됩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대략 질문하실 것은 다하셨지요?

○**이사철 위원** 지금 아까 태양광 설비는 그렇다치고 나머지는 R&D 예산 쪽이에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아닙니다,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 개발지원 사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철 위원** 약간의 내용을 좀 알려 줘야지, 추상적인 말만 있으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질문하신다고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시다마는……

○**최인기 위원** 사업방식과 주체, 차례대로 설명해 보세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개발지원 사업은 수용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중앙정부가 60%, 지방이 40%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지방에 시설원예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디젤이나 등유를 많이 쓰는데 가격이 하도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 에너지 가지고는 못 쓴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는 천부지열을 활용해서 에너지원을 개발해 주면 비싼 등유를 안 쓰고도 그 지열을 가지고 냉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나 도서지방에는 태양열 같은 것을 활용하면, 거기도 지금 등유나 경유를 많이 때고 있는데 그런 에너지원을 전부 대체할 수가 있고 도서지역에는 대용량이 아니고 아주 소형 풍력발전을 저희가 해 주면 그 도서지역 내에서는 그것 가지고 발전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시설원예농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도서지역 이런 농어촌 쪽에 신재생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60 대 40 매칭을 해서 설치비용의 60~100%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제창 위원** 제가 약간 보충을 드리면 이것을 왜 우리가 반대했던 것이냐면 논리는 지자체가 일단 매칭펀드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1650억 이렇게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면 대상을 또 발굴해야 됩니다. 발굴해서 연내에, 지금 세 달 남았는데 세 달 만에 소진할 수 있느냐?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삭감이 맞다. 또 추정 목적에도 안 맞고요.

○**최인기 위원** 5개를 죽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설명을 들어 보고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우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좀 올리자면 이것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시도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7월 중순에도 이것을 추가 수요를 조금 파악해 봤는데 9개 시도, 56개 시군에서 수요처를 제시해 왔고 그게 전체적으로 해서 123개소, 시설원예농가로 치면 162ha에 해당되는 면적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시를 해 왔기 때문에 추정에서 확보만 해 주시면 연내 소진은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 지자체가 40% 매칭을 하기 때문에 지

자체에 능력이 있겠느냐? 그 능력까지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9개 시도, 56개 시군구에서 저희가 수요를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기 위원** 그다음까지 죽 설명해 보고 우리가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는 게 빠르겠습니다.

설비보급기반구축, 보급용자사업, 다 비슷해서 좀 쉽게 쓰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이한구** 앞에 것은 에너지 보급용자이고 다음 페이지는 에너지 설비보급기반……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태양열이나 태양광, 또 바이오, RDF 이런 것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설비하고 부품을 공용화를 시켜서 호환성을 첫째 하려고 그러고요.

그 호환성을 확보하면,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해놓고 나서 A/S가 안 되어서 애물단지가 되고 그러는 게 이 호환성이 잘 확보가 안 되는 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이것을 깔아놓으면 신뢰성을 얼마나 갖는 설비냐 하는 신뢰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초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03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많이 해 놓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을 평가하고 성능평가를 해 보고 호환성을 확보하는 부품소재의 공용화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R&D하고도 틀린 것입니다. 평가 내지는 부품공용화 사업을 하는 예산으로 해서 30억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우제창 위원** 그러니까 R&D를 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아닙니다. R&D는 아니고 보급을 각 사별로 알아서 했는데 사별로 한 것을 공용화시켜서 A업체가 했지만 B업체가 A/S를 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해 주고, 두 번째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광림 위원** 대학이나 연구소에 돈을 준다는 말이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김광림 위원** 물건을 사줍니까, 아니면 그냥……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현장조사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통계를 돌려서 평가할 수 있는

기법도 개발하고 그렇습니다.

○우제창 위원 예, 다음이요.

○최인기 위원 태양광발전 보급이라는 것이 태양광주택에 보급한다는 얘기인가 보지요?

○우제창 위원 주택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태양광발전보급사업도 민간 설치업자한테 들어가는 돈인데 전력기금에 포함해 놓은 것은 태양광은 전력계통하고 연결되는 설비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해서 편성을 했고 에특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용자사업 250억 추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류근찬 위원 비목이 통합될 수 없는 것이 기금이 달라서 그래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습니다. 이것은 태양광이라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에특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일부 전력도 들어 있지만 주로 열생산하는 보급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은 존경하는 류근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태양광발전 차액을 줄였다고 불평이 많아서 예시제로 해서 이렇게 줄이지만 당초에 금년 말까지 100MW 정도 설치될 줄 알았는데 거의 200MW까지, 7월 말 현재 150MW까지 보급이 되어 버렸습니다. 연말까지 한 50MW 추가되어서 200MW가 되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현재 약속한 대로 677원 빼기 107원 해서 발전차액은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50억 정도로 평가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해주시면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까는 50MW를 만든 사업자들에 대한 발전차액지원 재원이 없는 셈이 됩니다.

○김광림 위원 두 번째 지역에너지 개발지원사업의 1650억이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수용가라고 했는데……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수용가입니다.

○김광림 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일종의 현금으로 주는 셈이지요.

○김광림 위원 자기부담 하나도 없고?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자기부담을……

○최인기 위원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아는데……

○김광림 위원 60 대 40은 정부부담 내에 지방정부 부담금이 있는 것이에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습니다.

○최인기 위원 중앙에서 부담해서 보조를 주면 지방비 부담하고 본인이 자금이 있는가 확인서를 내서 일부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이 아마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지역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마는 많게는 30%, 적게는 10%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인기 위원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계속 많이 하는 농가에 이런 것을 실험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성공한 데도 있고 실패한 데도 있어요. 이게 그 사업이구만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현금을 주는 거지요?

○최인기 위원 현금을 쥐 버리면 자기가 시설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한 군데는 실패하고 한 군데는 성공하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사실 주로 농촌 수용가에 대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보조 방법으로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제창 위원 본예산에서……

○최인기 위원 물론 성격으로 보면 다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류근찬 위원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팔게 되는데 그 차액을 발전하는 사람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kW를 생산했다면 그것을 팔고 kWh당 얼마로 해서 바로 한전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아까 육백 얼마하고 했는데……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670원 정도이고요, 지금 한전이 하는 원가는 SMP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현재 107원 정도입니다.

○김광림 위원 원자력입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원자력뿐만 아니라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화력은 얼마나 됩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화력은 지금 발전단가가 36원 정도 됩니다. 원자력이 34원 정도

되고요.

○**류근찬 위원** 태양광은 107원이라면서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것은 아주 싼 원료고요. 그다음에 LNG가 있고요.

○**류근찬 위원** 그러면 보니까 태양광을 권장할 이유가 없구만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장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류근찬 위원** 장기적으로 오히려 어디에 발전소를 짓는 게 낫지 언제 태양광 발전해서……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류근찬 위원** 이것 대통령이 그런 뭐 하는 그 사업 같은데……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아닙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류근찬 위원** 그렇다면 내가 볼 때 이 사업을 장려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급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국내 산업기반을 약간 소홀히 해 가지고 보급을 하면서 상당 부분 외산 기자재를 많이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발전차액이 줄어드니까 스스로 코스트 다운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하라고 해서, 저희 생각에는 2014~2015년이 되면 시장기능에서 이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당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 태양광 발전도 지금 예를 들면 폴리실리콘을 가져다가 인고트 해 가지고 웨이퍼로 해서 죽 생산 단계가 있는데 거기에, 특정 업체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동양 같은 데서 폴리실리콘에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 각 단계별로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웨이퍼에다가 셀을 박은 모듈을 외국에서 사다가 했는데 지금 국내 생산 업체가 일관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보급해 줘야만 대기업들이 이것을 생산하는 데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가 되고요, 투자가 더 이루어져서 기술개발이 돼야 코스트가 내려가고 코스트가 내려가면서 확대된 보급정책에 의해서 시장성은 더 커지고 그래서 생산과 보급이 같이 이루어져 가야지 신재생에너지가 제대로 보급된다고 판단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대략 설명은 된 것 같으니

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제창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원래 자료고 이것이 새로 받은 겁니다.

원래 자료에서 지식경제부 부분을 죽 훑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쪽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하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렇게 한번 노력해 봅시다.

아까 보니까 최 위원님은 자료 뒷부분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부터 결정해 나가지요.

○**최인기 위원** 앞에 있는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은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요, 그다음에 에너지설비 보급기반 구축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대학연구소 등에다가 RCA처럼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건물을 짓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농가가 지원을 했는데 한군데는 성공하고 한군데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러면 왜 한군데는 되고 왜 한군데는 안 되느냐 그 평가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인기 위원** 분석하고 평가하고……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기를 개발하는 데 뭐가 문제인지, 실제 가서 설치하는 데 호환성이 없게 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이것은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저희가 단위사업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합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아니, 그러니까 이 업무를 어느 정부기관이 담당하느냐고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저희 지식경제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직접 담당해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아닙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최인기 위원** 이것은 다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이야.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이런 것도 필요하겠네.

○**우제창 위원** 여기 원래 자료 8페이지에……

○**소위원장 이한구** 아니, 이것부터 우선 빨리빨

리 결정하고……

○**최인기 위원** 에너지개발 지원은 나는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사철 위원** 그 위에 태양열 설비 같은 것은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해 주는 거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인기 위원**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합의가 안 된 모양이지요?

○**우제창 위원** 안 됐습니다. 전체를 다 묶음으로 갔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카테고리로서 해서 결론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 것이고 개별사업 쪽으로 가면……

○**최인기 위원** 이것은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 하나는 합시다.

○**소위원장 이한구** 나머지는 별로예요?

○**최인기 위원** 나머지는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는 사업이니까……

○**소위원장 이한구** 아니, 모르는 것은 일단 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류근찬 위원** 지금 이론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은 지원해 줘야 돼요. 지금 전국 곳곳에 태양광 널빤지 엄청나게 세워 놨단 말이에요. 이것 지원 안 해 주면 그것 다 도산인데, 지금 엄청나요. 들판에 가 보면 번쩍거리는 것 엄청 세워 놨다고.

○**이사철 위원** 지금 제일 큰 게 최인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 1650억인데, 그리고 또 류근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250억을 빼면 나머지는 얼마 안 돼요.

○**최인기 위원** 이게 사실 본예산 사업인데, 내가 아는 사업이라서……

○**소위원장 이한구** 또 다른 분들은 혹시 의견이 어떠세요?

○**권경석 위원** 지역에너지 개발사업하고 차액 지원 250억 원짜리 이것은 두 분이 동의를 하셨는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차액을 계속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최대한 그 차액을 얼마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계속 대기업의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면.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그런 목표치가 없습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지금 현재 말씀드

린 한 570원을 2012년까지는 35%로 줄이도록 저희가 예고를 했고요.

○**권경석 위원** 570원을 2012년까지는 35%?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35%로 줄이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 직전 연도에 태양광의 보급 상황을 다시 봐 가지고 발전 차액을 어느 율로 가져갈까는 그때 다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두 가지가 좀 궁극한데 570원의 차액을, 35% 같으면 다운되는 것이 한 170원 정도 되겠네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것을 연도별로……

○**권경석 위원** 그러면 370원 정도 되겠다, 2012년까지는 최대한 370원까지 차액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나서 그때 시점에서 다시 목표치를 정하겠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때까지 총 투자를 얼마 할 계획입니까, 현재 계획대로 간다면?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어느 부분 투자……

○**권경석 위원** 태양광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래서 그렇게 율은 낮추면서…… 현재는 저희가 100메가까지 되는 한도에 대해서는 발전 차액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율을 이렇게 낮추면서 2012년까지 예상해서 500메가까지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권경석 위원**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물론 추정치이지만 목표 수치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2012년까지 500메가까지……

○**권경석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얼마 물량을 얼마를 들여서 2012년까지 이 사업 계획을 추진 하겠다, 그것 계획대로 하려면 이번 추경에 이것을 반영시켜서 하나하나 단계별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게 나와야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아닙니다. 2012년까지 물량이 500메가까지 저희가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500?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500MW입니다. 50만

kW입니다.

○권경석 위원 그러면 가구당 치면 몇 가구 정도 쓸 수 있는 발전량입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

○권경석 위원 50만kW?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50만kW입니다.

○권경석 위원 그러면 돈을 용자를 얼마 해 줄 계획입니까? 그런 거나 있어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2012년까지 계속사업을 추진하는데 첫 연도는 얼마만큼 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개략적인 소요예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얼마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것 제가 지금 바로 답변……

○권경석 위원 이것 뭐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여기 앉아서 숫자만 보고 ‘아, 그것 할 만하다’ 해서 승인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용자했다가 이게 실패하면 용자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 용자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발전 차액은 용자가 아니고 그냥 주는 돈입니다.

○이사철 위원 보급 용자사업.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이것은 사업자가 반드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실패해도 환수해야 되네?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환수해야 됩니다.

○권경석 위원 위험부담은 없어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정부로서는 위험부담은 없습니다.

○권경석 위원 정부는 없지만 이게 보급한다고 돈 들여 가지고, 용자해 줘 가지고 실패해 버리면 이것 무용지물 아니에요?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무리하게 추진해 가지고 실패해 버리면 어떻게 해?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경석 위원 실패율이 지금은 얼마인데 앞으로 계속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면 2012년까지는 실패율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되고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하는 무슨 개략적인 계획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은 최인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것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방

자치단체가 시책사업으로 지원 규모를 꼭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하는데 ‘국내외 자원개발’ 해 가지고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 말고 안에.

○최인기 위원 뒤에 또 있어요.

○권경석 위원 이것 하고 할까요?

○소위원장 이한구 이것까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요.

더 없어요?

○김광림 위원 4페이지의 태양광 발전 보급 100억 원 이것하고 지역에너지 개발 지원하고 사업이 비슷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1650억하고……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아닙니다. 그것하고 같은 게 아니고 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용자사업하고……

○김광림 위원 태양광 발전 보급은 이것은 업체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업체에 대한 용자사업입니다.

○류근찬 위원 주택업체 같은데요, 주택업체.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주택업체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같이 한다면 들어갈 수가 있고……

○김광림 위원 이것도 용자사업입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둘 다 용자사업입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면 ‘용자’라고 붙여 봐야지.

이것 그러면 돈은 회수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것은 애프터서비스 하는 돈이에요. 가서 고치고 뭐 하는 건데 이것은 R&D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이것은 현장에 가 가지고 고쳐 주고 또 물으면 뭐 하고 하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효율·성능 평가 사업입니다.

○김광림 위원 대학의 관련 공과대학 교수들……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런 사업단을 에 관공에서 만들어 가지고 평가하고 이렇게……

○우제창 위원 저는 하여튼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1650억, 1번 본예산에 집어넣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1650억을 절대로 연내에 집행 못 합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못 쓴다? 아까 설명을 하셨

않아요.

○**류근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액수로 보면 연내 집행이 가능하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게 꼭 퍼져 나가기 때문에…… 보니까 9개 시도에서 56개 사업장에서 신청한 모양인데, 이것 나눠 주면 소진하는 것은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사업장이 너무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를 못 주는데 56개 시군이네, 56개 시군. 신청 가능 개수가 123개,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이것만 결정해 주면 1650억을 일시에 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런데 선정을 잘해야 되겠구먼.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일단 지역에너지 개발 지원, 이것은 대략 이견이 없는 것 같고…

○**우제창 위원** 저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니까 본예산에 넣자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제창 위원** 예.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니까 본예산에 넣자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또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그때 얘기하자고요. 사업으로서는 괜찮다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제창 위원** 예.

○**소위원장 이한구** 그리고 5페이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이것도 대부분은 찬성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일단 이 2개는…

○**류근찬 위원** 가만있어 봐요. 죄송합니다.

이거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발전 차액 지원.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이용걸** 섞여 있습니다.

○**최인기 위원** 2개 다 있지, 앞의 것도 있고 본예산에 다 들어가고…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본예산에 들어가고 이번 추경에도 들어가구요.

○**최인기 위원** 그러니까 위는 본예산에 넣으라는 겁니다. 성격으로 봐서 본예산…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이용걸** 아니, 금년에 할 게 있고 내년에 할 게 있고, 물량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류근찬 위원** 추경에 250억을 요청한…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이용걸** 금년에 할 것입니

다.

○**류근찬 위원** 금년에 이 정도가 모자란다…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이용걸** 그렇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러면 줘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5페이지에 있는 것과 3페이지에 있는 지역에너지 개발 지원은 일단 합의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다시 이것으로 해야지요.

○**김광림 위원** 이 속에서 융자사업 2개는 별로 반대가 없잖아요? 보조금이 아니고, 이게 250억 하고 100억하고 이것은 융자입니다, 융자.

○**우제창 위원** 다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 주는 것이지요. 추경을 이렇게 합니까?

○**이사철 위원** 다 해 주지 말라는 법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해 주는 것이지 무슨…

○**최인기 위원** 본예산으로 할 일이다 이거예요. 원칙에 관한 문제다 그런 얘기지요.

○**우제창 위원** 그럼요, 우리가 처음에 아침에 여러 가지 정해 놓고 한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요.

○**소위원장 이한구** 알았어요. 일단은 나중에 모자라면 다시 훑기로 하고, 그러면 이것 갖고 다시…… 여기에 지식경제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8페이지 하나하나 봐 가면서…

○**최인기 위원** 이것이 아까 보조금 안 되는 것 그거 아닙니까?

○**소위원장 이한구** 그것부터 할까요?

○**최인기 위원** 그럼시다.

○**김광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예.

○**김광림 위원** 이것을 지식경제부부터 들어가면 밤새우니까 쉬운 것부터 해 가지고 1페이지부터 죽 해 가지고 합의되는 것은 끝내 버리고 지식경제부는 제일 끝에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우제창 위원** 아니, 나머지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김광림 위원** 지식경제부만 끝나면 없는 것입니까?

○**최인기 위원** 나머지는 큰 저기가 없어요. SOC 하나만 남았어요. 지식경제부만 끝나면 SOC만 남아요.

○**김광림 위원** 나머지는, 교육부하고 기술부하고 다 문제없다?

○**소위원장 이한구** 다른 것은 별것 없어요.

- 우제창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 김광림 위원 농림부도 문제없고…
- 최인기 위원 농림부는 기본적으로 증액한 거고, 증액만 끝나면 다 끝나요, 90% 끝나.
-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8페이지부터 하실래요?
- 우제창 위원 8페이지부터 하시지요. 8페이지는 금방입니다.
-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 국제지원, 이것은 뭐냐? 이것은 신규사업이에요.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 소위원장 이한구 그렇지. 당초에 없네.
- 우제창 위원 이것을 당연히…… 무슨 국제지원 이런 것은 추경에서 안 된다, 이것은 100% 아니다……
-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제가 말씀을 좀…
- 김광림 위원 아니, 이것은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심의할 때 이게 전례가 쌓이는 것인데요, 신규사업은 추경에서 할 수 없다…
- 우제창 위원 안 됩니다.
- 최인기 위원 원칙적으로……
- 김광림 위원 아니, 원칙은 그런 원칙이 없지요. 확정된,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에 의해서도 예산 성립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신규사업이 든 다 되는 겁니다.
- 우제창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 김광림 위원 그러면 증액만 하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관행은.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 이사철 위원 아니, 수해 나서 사업하면 신규사업이지.
- 김광림 위원 추경에는 신규사업을 할 수 없다 하는 게 전례도 없고 법규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절대 추경에서 신규사업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해야 합니다.
- 소위원장 이한구 설명을 한번…
- 우제창 위원 설명을 드려 볼게요.
- 이게 국가재정법 89조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을,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박재완 수석하고 했던 말이에요. 이용걸 실장은 아니지만 배국환 차관이 그때 같이 배석을 했었고, 잘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그게 1, 2, 3입니

다—그리고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이게 앤드(and)란 말이에요.

○김광림 위원 앤드(and)고 오어(or)이고 간에…

○우제창 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여기서 확정된 예산은 뭐냐? 장·관·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때 그 당시 박재완 수석, 특히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분들 생각은 뭐냐? 장·관·항, 이것은 걸개가 있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거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는 진정으로 이것을, 이번에 추경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추경요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정말 한나라당이 이 국가재정법 한 것을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하고 이거 개정하세요. 개정하시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내가 동의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앤드(and)예요, 앤드(and). 장·관·항, 그러니까 나는 신규사업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애초에 이 법을 만들 때 취지였었던 말이에요. 아마도 우리 위원장님은 이것을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최인기 위원 위원장께서 이것을 판결해야 돼.

○소위원장 이한구 어떤 레벨까지 기존 것으로 갈 것이냐, 그 문제가 남는 것인데 장·관·항까지 그렇게 정해 놓지는 않았어요.

○우제창 위원 그때 제가 이거 가지고 하루를 싸웠습니다. 우리가 한 달 반 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하루를 싸웠다고요. 그때에 박재완 수석이 여기서 오더받고 박 대표한테 오더받고, 나중에 싸운 것이 뭐냐? 항목이에요, 항목. 항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게 사실은 신규는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엄격한 의미로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경이라는 것은 약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은 유도리가 있었다고 본 사람이에요. 당연히 기예치가 그런 생각이고……

○최인기 위원 법을 너무 엄격하게 만들었어.

○우제창 위원 예, 너무 엄격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과하고 개정하라 이거예요.

○소위원장 이한구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하든

지 말든지 하고 지정부 이것부터 빨리 끝냅시다.

○**우제창 위원**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권경석 위원** 이것은 유보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위원장님, 제가 이 사업에 관련해서 몇 말씀만 올리고……

○**권경석 위원** 좀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소위원장 이한구** 갈 길이 조금 머니까 해놓고……

○**권경석 위원** 이해하고 앞으로 돌아갑시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권경석 위원** 유전 개발사업 출자……

○**우제창 위원** 이게 유전개발사업에 출자한다, 이게 리스크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추경으로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참 말이 안 되지요. 이게 소위 말해서 자원 개발 아니겠습니까? 자원 개발에 대한 것인데, 이게 이런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만, 이게 뭐냐? 14조 2000억이라는 초과 세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떡을 본 겁니다, 지금. 떡 본 거예요. 이걸 가지고 혈값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4조 5000억을 가지고 온 것인데 지금 지식경제부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이냐? 지식경제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숙원 사업들이 있던 말이에요, 숙제들이. 그것을 한꺼번에 털려고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것은 안 된다… 본예산에서도 안 준 것인데 이것을 여기에서 줍니까?

○**이사철 위원** 아니, 그 관계가 필요성을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서, 유가 급등하는 이 상황에서 논의를 해야지.

○**우제창 위원** 유가 급등하고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장기간에 걸쳐서 소요되는 것인데. 추경이라는 것이……

○**최인기 위원** 장기적으로는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추경에다 이것을 꼭 넣어야 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사, 설계, 착수까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제창 위원** 류근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원펀드가 있습니다. 자원펀드에 3000억이 가게 되어 있는데 자원펀드를 만들면 펀드 통해서 투자회사 만드는 데까지 최소한 6개월이 걸립니다.

○**류근찬 위원** 녀 달~다섯 달 걸려요.

○**우제창 위원** 그다음에 투자회사가 설립된 다

음에 추가 예산을 물색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차피 2009년 상반기예요, 빨라야.

그러면 본예산에 집어넣어야지 이걸 왜 추경에 집어넣습니까?

○**소위원장 이한구** 설명해 보세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유전개발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에너지 수입액으로 950억 불을 썼는데 금년 상반기에 700억 불을 썼습니다.

유전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1년에 10억 배럴을 쓰는데 1불만 오르면 저희가 앉아서 10억 불을 고스란히 외국에 갖다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유전 개발해서 해외에 만약에 4억 배럴짜리를 확보하고 있으면 4억 불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10억 불을 내다주는 것보다 저희가 6억 불만 내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유전개발사업은 탐사 광구 위주로 했는데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꼭 추경에 반영돼야 될 시급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금년도 본예산이 국회 통과한 금년 초부터 석유·가스 광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대표적으로 3개 광구를 지금 거의 확보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광진공에 출자도 있습니다마는 광물 쪽에는 저희가 2개 광구가 확보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중남미에 있는 1억 1000만 배럴짜리 회사는 저희가 곧 계약 단계에 있는데 광구를 저희가 사게 되면,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저희가 돈을 입금해야 됩니다. 그 입금해야 될 돈이 있고, 그다음에 입찰에 들어갈 때도 그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는지 저쪽에서 통장을 보여 달라고 그러합니다.

현재 저희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 금년도 예산 3647억 원은 저희가 연초에 테일러 에너지사라고 미국의 멕시코만에 있는 회사를 샀는데, 그 회사 사는 데 이 돈 다 썼습니다. 다 썼고,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석유·가스 분야 쪽의 금액을 합쳐 보면 한 40억 불 정도의 매물을 저희가 근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광물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협상이 타결되어서 9월 말까지 저희가 바인딩 오퍼(Binding-Offer)를 내야 되고 바인딩 오퍼 내 가지고 저희가 낙찰자로

결정이 되면 바로 그 즉시 송금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8500억 중에서 2500억은 펀드 조성자금이고, 6000억인데……

○**류근찬 위원** 3000억인데 왜 2500억…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500억은 광진공에 지원…

○**최인기 위원** 양쪽에 해서 3000억이에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양쪽에 3000억입니다.

석유공사에서 이런 8000억~8500억 정도의 돈을 확보를 하지 못하면… 8500억이라 해야 8억 5000만 불밖에 안 됩니다. 이 돈 가지고 변변한 광구 하나… 지금 1억 배럴짜리 하나 사려면 17억 불~19억 불을 저희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한테는 이렇게 근접해 있는 광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꼭 이 돈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석유공사가 그러면 그것을 100% 다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석유공사는 20% 정도 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6000억 정도가 필요한 거고 2500억 가지고 저희가 펀드를 조성하면 연말까지 저희는 가능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2500억을 쓰면 한 2조 정도의 석유가스 펀드를 저희가 PF 형태로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2조를 가지고 동원을 해서…

○**최인기 위원** 그러면 파인낸싱 형태로 공모한다는 말이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까지 투입을 하면 여기 8억 불, 그다음에 20조 해 가지고 20억 불 정도 돈이 있어야 연말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서너 개 광구는 확보를 제대로 하겠다 해 가지고 계산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인기 위원** 어딘가 일전에 석유개발공사하고 합작해서 우리 2년분의 광구 유전 개발한다고 신문에 크게 한 번 난 적이 있었잖아요, 두어 달 전에? 그게 어디였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것은 투르크메니스탄 쪽이었는데 거기는 아직은 저희가 탐사를 해야 되고 그런 텐데…

○**최인기 위원** 그런 곳은 석유개발공사가 자본 참여를 어느 정도나 해서…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대개 탐사광구는

들어갈 때 추정 매장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1~2억 불 정도의 성공불, 서명 보너스를 먼저 현찰로 주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탐사가 진행되어서 성공이 되는데 석유공사가 거기 들어갈 때 대개, 석유공사가 항상 리딩 컴퍼니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민간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개 회사는 생산 내지 개발 단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생산은 지금 이미 물건이 나와서 바로 현장에서 팔 수 있는 그런 단계의 광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개발은 탐사가 끝나서 매장량이 확인된 광구인데 그 위에 플랫폼을 설치해서 실제 생산할 수 있는 관을 막는 단계를 개발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광구를 사면 1~2년 내에 거기서 바로 생산이 가능하고 탐사광구는 실제 저희가 라이선스를 받더라도 탐사하고 실제 생산까지는 5~7년이 걸립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한 것은 지금 생산하고 개발 단계에 있는 광구고 이 중에 2개 광구는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 일본하고 중국 업체가 저희보다 비딩(bidding)을 많이 하려고 해서 굉장히 경쟁 상태에 있는 그런 광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회가 자꾸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 그리고 한번 제한적인 입찰을 했는데 저희가 참여 안 되고 그러면 비딩에도 참여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지경부 입장에서는 참으로 놓치기 아까운 것이고…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긴급 사유네.

○**최인기 위원** 지금까지 출자한 것은 기왕에 얼마나 했어요, 석유개발공사에서? 정부가 자원개발로 출자한 것이 지금까지 누계가 얼마나 돼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지금 누계는 1조 원이 안 되고요. 저희가 1000억 이상 자원개발 예산 출자한 게 2006년부터 1000억 이상 출자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3500억, 2008년에 지금 나와 있는 3600억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4.2%에 불과한데 일본은 18%, 중국은 27%입니다. 물론 프랑스 같은 경우는 90%가 자주개발률인데, 1년에 1000억~3000억 정도의 자본 출자를 석유공사에 해 주면서 어느 세월에 우리가 생산 광구나 개발광구를 확보해서 자주개발률을 높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사업 자체는 장기

에 걸친 사업이지만 언제 시작하느냐는 타이밍은 저는 굉장히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에텍의 본예산에서 탐다운 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실링을 정해 놓고 석유공사에 대한 출자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5000억을 넘을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보한 이 광구도 거의 저희 손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출자하고 펀드 조성비용을 해 주시면 저희가 놓치지 않고 확보를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기 위원** 저는 ‘해외 유전 개발하고 원전으로 가는 그 길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너지를. 그런데 이것을 추경으로 할 거냐가 문제인데 일단 ‘절박하다.’ 그러니까 문제 사업 같은 것으로 하나 상정을 해 놓고 추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이한구** 예, 이것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근찬 위원** 추경 편성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안 했더라면 놓칩니다. 작년에 저희가 영국의 B사라고...

○**류근찬 위원** 타임이라는 게 추경 편성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으니까 지금 올려놓은 것인데 추경 편성이라는 게 작년에 없었잖아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작년에 영국의 베털사라고 해서...

○**류근찬 위원** 작년에 추경은 안 했고 금년에 하는 것인데 만약 이것을 안 했더라면 그것을 안 놓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러면 석유공사가 차입을 하거나 해서 일부를 대고 민간업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참으로 한계가 있는 게, 저희가 작년에 영국의 B사 인수를 시도했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가액을 밝혀도 되겠습니까마는, 27억 불짜리인데 지금 유가가 막 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프리미엄을 얹어 주어야 됩니다. 돈이 부족해서 저희가 32억 불을 써냈는데, 이태리 에니(ENI)사라고 있습니다. 이태리의 국영 석유회사인데 거기에 36억 불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놓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추경이 안 되면 저희가 욕

심나는 게 있지만 민간 자금하고 차입에 의해서 한번 들어가 볼 수는 있겠습니까마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이사철 위원** 이 차관! 그런데 작년에 왜 이렇게 360억이라고 적게 책정했어? 그렇게 필요성이 작년부터 다 대두가 되었을 텐데.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러니까 전체 에텍예산이 3조 40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석탄산업 지원하는 것, 발전차 이것 다 하다 보면 이게 대규모로 10배 이상 늘릴 수가 없습니다.

○**최인기 위원** 작년에 예측을 못 한 것이지.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니까 작년에 금년에 추경을 할 줄 알고 이것은...

○**최인기 위원**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고 하는 것을 예측을...

○**이사철 위원** 예측을 못 했던 거야, 아니면 다른 예산 때문에 이게 필요한 데도 배정을 못 받았던 것입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아닙니다. 예산 당국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줘서 상당히 올 자체로는..... 2006년에 1000억이었는데 2007년에 3000억으로 올렸고 또 금년에 3800억 이렇게 다른 예산 항목에 비하면 많이는 올렸는데 단순한 증가율로 하다 보면 이것은 감당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우제창 위원** 저는 두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 겹 질의 비슷한 것인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차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차관이 참 훌륭하신 분이네요. 민습니다, 내가 사실은. 그런데 시장 상황이 항상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널려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것도 꼭 사야 될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됩니다. 8500억 원이란 돈은 아주 큰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 꼭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그것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수출입은행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경위에 있다 보니까 수출입은행이 우리 산하기관이란 말입니다. 수출입은행이 이런 것을 합니다, 해외 자원 개발. 수출입은행은 1000억 원을 주면 신용 창조가 된단 말이야. 3000억 원도 되고 4000억 원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같은 돈을 가지고 훨씬 더 크게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것을 굳이 부처이기주의로 따지지 말고 나라로 봐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어떠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라 이거예요. 제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소위원장 이한구 어때요, 이 실장!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이용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금융기관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어느 기관에서 출자를 하는 것은 그 기간에 그 자금을 가지고 자기가 책임 있게 하지만 빌린 돈이라는 것은 실패하면 또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리스크를 택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제약이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많은 기관에 사실상 출자를 주어서 그 기관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제창 위원 수출입은행 관계자 불러다 보면 다른 소리 합니다.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이용걸 그래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모든 사업자금을 융자하게 하면…… 사실 우리가 모태펀드를 만들어서 출자를 시키는 이유도 출자를 통해서 해야만 어떠한 사업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을 자기 책임 아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모태펀드 필요 없이 전부 다 융자로 가면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지만 융자라는 것도 사실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융자가 필요하고 어떤 것은 또 출자도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두 개 다 필요하지만 이런 석유개발 같이……

○우제창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나라 돈을 세이브하자 이것이에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이용걸 그러니까 석유개발 같이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우제창 위원 실장님, 지금 차관의 얘기는 뭐냐 하면 리스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 하시는 것인데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최인기 위원 결론 내지 말고 넘어가자고요.

○우제창 위원 이것은 결론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들어 봐야 돼요, 이것은.

○소위원장 이한구 그런데 전문가 의견이라는 게 오늘 내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차관이

전문가지. 그리고 또 존경한다면서 존경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지 자꾸……

○최인기 위원 심의 보류 사업으로 하고 갑시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래요.

○김광림 위원 두 가지만 더. 일반 사업하고는 좀 다른 게 이것은……

○최인기 위원 이게 좀 다른 점이 있기는 있어.
○김광림 위원 이것은 재래 시장의 사업 진도를 따지듯이 하는 것하고는, 금년에 소진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따지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예요. 그렇지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출자금이에요, 출자금. 출자금이라고 하면 차입하는 규모도 늘릴 수 있고, 은행에 가서 더 차입할 수도 늘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원이 되면 굳이 이것을 꼭 추경에 해야 되느냐 이런 쪽보다는 재원이 되면 빨리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좋다 하는 것만 남겨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한구 예, 그렇시다.

○우제창 위원 그것은 김광림 위원님 말씀이시지. 다른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남겨놓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김광림 위원 내 의견을 남기는 거예요.

○우제창 위원 one of those 의견으로 있는 거죠.

○김광림 위원 내 의견을 남기고 그냥 넘어가자 이런 얘기에요.

○소위원장 이한구 그런데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하는 거죠?

○최인기 위원 추경 사항에 해당이 안 된다니깐 이것은 심의 보류 사업으로 놔두고 넘어가자고.

○권경석 위원 긍정적 검토를 전제로!

(웃음소리)

○최인기 위원 단서 두지 말고.

○소위원장 이한구 그다음에 국내외자원개발.

○최인기 위원 이것은 광업진흥공사에 들어가는 것이던가?

○우제창 위원 말 그대로 국내외 자원개발 용자죠, 뭐.

○최인기 위원 이거는 주체가 누구고 어디로 주는 거예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해외 자원개발 사업자한테 용자 재원으로 갑니다.

- 최인기 위원** 민간인한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민간인한테 들어갑니다.
 ○**우제창 위원** 실패하면 다 날리는 거고.
 ○**최인기 위원** 대체자금이구먼?
 ○**우제창 위원** 예, 그겁니다.
 ○**김광림 위원** 돈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자원개발 사업자요.
 ○**김광림 위원** 이 차관이 나눠 주는 것은 아니잖아?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이것은 석유공사하고 광진공이 취급은 하는데 민간 자원개발 사업자에게 이 용자가 적정하냐라는 사업계획을 받고서, 용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서...
 ○**김광림 위원** 석유공사하고 자원개발공사?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거기는 관리만 하는 거죠.
 ○**소위원장 이한구**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찬성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최인기 위원** 못 하겠네.
 ○**우제창 위원** 할 수가 없지요.
 ○**소위원장 이한구** 다음에 광업진흥공사 출자 이거는 어때요?
 ○**최인기 위원** 광업진흥공사가 뭘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기 위한 개발과 펀드를 조성하는 거예요? 광진공이 해외 진출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옛날에 광진공은 국내 광산 개발을 주로 했는데 지금 국내 광산은 거의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 신경을 안 쓰고 해외에 있는 석유·가스를 제외한 일반 광물 자원을 탐사·개발·생산하는 전문회사로 탈바꿈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 올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철이나 동이나 아연, 이런 주요 광물의 1인당 소비량이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철강도 자동차도 있고 해서 이런 광물들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광물 자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런 광물들의 자주개발률이 18%밖에 안 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발

전량의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주개발률은 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석유·가스에 못지않게 국내 수요도 많고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광물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광진공은 석유공사보다도 훨씬 프라이머리티(priority)가 좀 떨어진 채 취급을 받아가지고 현재도 자본금이 한 30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일반예산도 금년에 300억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시급성을 말씀드리자면, 중앙아시아에 지금 400만t 정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광구가 저희가 거의 협상이 돼서 9월 말까지 광진공이 바인딩 오퍼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에 이게 낙찰이 되면 저희가 돈을 지불하도록 돼 있고, 아시아 지역에 유연탄 광구 7000만 불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1억 3700만t 정도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생산 광구인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광진공에 1000억 정도를 출자를 해 주고, 500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펀드를 조성시킨 다음에 같이 들어가서 2개를 확보를 좀 하려고 하는 뜻에서 편성을...

○**최인기 위원** 이거야말로 차입해 가지고 우선 하라고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해 줘도 되는 것인데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광진공의 금년 해외투자 소요액이 3514억이었는데요...

○**최인기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300억 해 냈다가 1500억으로, 추경에서 5배로 늘려 가지고 해 냈네. 주객이 전도됐네.

○**류근찬 위원** 이런 게 문제고, 왜 전부 계약이 추경에 맞춰 다 일어나느냐고. 나 이거 환장하겠어. 개들 우리 추경하는 거 알아요?

(웃음소리)

도대체 이렇게 끼워 맞춰도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왜 추경에 맞춰서 다 일어나느냐고.

그리고요 차관 말씀 잘했는데, 그러면 지경부가 정책 실패네요, 내가 볼 때는. 아까 해외 광물 자원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은 300억을 냈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요.

○**이사철 위원** 작년도도 산자부에서 예산 요구했었어요? 했는데, 이것을 300억밖에 안 해 주고 그랬던 것입니까?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재원이라는

것이 항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라든지 또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재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었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거 이렇게 출자를 해야 돼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덩치를 키워 주는 것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시장이 항상 그렇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유가하고도 상당히 민감한 관계이고 그 나라 상황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장은 상당히 불완전한 시장입니다.

○**권경석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중앙아시아 우라늄광구는 언제 매물로 나왔어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금년 초에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권경석 위원** 만약에 추경 확보가 안 되면 다른 데 뺏길 우려가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뺏길 우려가 있습니다. 주로 중국하고 캐나다, 호주하고 경합 중입니다.

○**권경석 위원** 유연탄은?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유연탄은 중국, 인도하고 저희가 경합 중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더 올리자면 300억을 출자했고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차입을 해야 되는데? 이미 광진공이 금년에 해외투자 소요액이 한 3500억 되는데 그중에 2000억은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 차입을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최인기 위원** 광진공이 수익사업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갚으려고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지금 깔아 놓은 것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 27개 정도 깔아 놓았는데 그중에 생산단계로 이전한 광구가 6개 광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에 들어가면 하루 10만t 예정되어 있으면 바로 10만t이 나오는 게 아니라 파일럿 프로덕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뽑아내 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 물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수익이 계속 창출이 됩니다.

○**최인기 위원** 그런데 광진공이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얼마나 있어요? 광업진흥공사가 그럴 만한 해외시장 정보와 이런 데 근접할 수 있는 맨파워라든지 정보능력이 그

렇게 됩니까?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공기업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역대 사장들도 보면 무슨 전문가들도 아니고 정치인들 하다 가고 말이야, 그렇거든요. 그런 데다가 그런 막중한 업무를 주어도 되느냐, 그런 걱정도 돼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존경하는 최 위원님, 국내에서는 광물자원 개발에 있어서는 그나마 광진공이 최고입니다. 일반 다른 대기업들의 광물자원을 하던 전문가들도 반드시 광진공하고 같이 해서 들어가려고 싶어 하고요.

○**최인기 위원** 대기업이 그것 안 하지, 비용이 들고 국내 수지가 안 맞으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러나 외국의 예를 들면 BHP빌리튼 같이 세계 1, 2위 되는 기업에 비교하면 자본금 규모가 광진공은 한 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모 가지고…… 그러니까 에텍이라는 틀 내에서 실링은 정해 놓고 제한된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1년에 300억, 400억 이 정도를 주면서 광진공 보고 가서 해외 광물자원 개발하라고 해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답답하고 아마 류 국장도 답답할 텐데 에텍의 세입은 뻥하고 규모는 뻥한데 거기서 석유 공사하고 광진공에 이걸 맡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매물도 이렇게 나왔고……

○**최인기 위원** 재원이 생기니까 그냥 몽땅 한번 집어넣은 거예요.

○**김광림 위원** 사실은 이것은 일반예산의 시급성과 좀 다른데 이것은 통상적인 본예산 편성에 반영이 안 됩니다. 반영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추경할 때 키워 가지고 돈이 있으면 좀 가서 제대로 된 물건 보는 거고 아니면 조그마한 물건들……

○**우제창 위원** 죄송합니다만 추경의 본 목적이 뭐냐, 고유가로 인한 민생대책 안정입니다. 뭘 상관있어요, 이게? 신재생에너지 그것 하면……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다시 논의를 하고 필요성은 대략 공감하신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은 이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제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할게요.

공공요금 안정 지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1페이지가 금방 합니다. 11페이지 먼저 하고 10페이지를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한구 그럼시다.

기술개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전력효율 향상사업, 이것은 괜찮은 것 아니에요?

○우제창 위원 이것은 해 주기로 한 겁니다. 이 건 해 주기로 한 거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우제창 위원 네 가지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10억 빼고 하는 거…… 165억으로 하는 것, 10억 만 감액하는 걸로……

○소위원장 이한구 그다음에 세 번째 것도 보급 용자는 필요할 것 아니에요?

○우제창 위원 신재생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권경석 위원 신재생, 이게 폐기물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에특에 있던 250억 보급용자하고 사업이 똑 같은데 에특에 넣은 것은 열 관련 신재생에너지고요, 여기에 넣은 것은 전기 관련 신재생에너지입니다.

○류근찬 위원 기금이 달라 가지고 그러는구나.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존경하는 위원님, 그게 에특의 재원 자체가 세입이 자꾸 줄어들고 구조가 이러니까 가능하면 전력기금 쪽에는 전기 관련 사업을 넣다 보니까 양쪽에 신재생에너지가 있어 가지고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우 위원님께서서는 신재생은 다 빼라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넣어라, 이런 얘기지요?

○우제창 위원 신재생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기술개발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R&D고, 보급용자 이런 것들은 기술개발하고 좀 다른 거지요.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스피드를 내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너지 절약하고도 관계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 해안지역 같은 데에……

○우제창 위원 저는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다른 분들은 어때요? 최 위원님도……

○최인기 위원 도서 해안지역에 뭘 하는 거예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풍력발전을 750kW 기준해 가지고 한 33개소 정도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풍력만 하는 거예요?

○최인기 위원 풍력발전, 조력발전 이런 것 하는 것 같은데……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조력까지는 지금 당장에 하기 어렵고요, 풍력은 소형풍력 750kW짜리는 도서 해안……

○최인기 위원 그런데 풍력으로 지금 성공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대표적인 게 대관령에 있는 풍력발전소인데 거기는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2M짜리를 10개 해서 20M 발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 발전단가가 107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전의 발전단가하고 거의 같아 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발전 차액 지원은 이미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람이 왔다갔다하지만 평균 가동률은 2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력발전소는 지어 놓고 20% 이상 가동을 하면 일단 성공이라고 그리고 또 컴퓨터에 지금 몇 %로 돌리고 있는 게 전부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20% 이상을 바람이 불어서 돌리고 있고 그걸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게 발전단가를 107원까지 내렸더라는 게 어느 정도 성공케이스 아니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제주도도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이것도 약간 애매한 것인데 그러나 어차피 하는 것 노력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보통 때는 못 해요.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차액 육백 몇십 원 짜리 107원 되는 것 500원은 차액을 그냥 공짜로 주면서 이것은 107원에 본전 하고 있는 것을 돈 빌려주는 것이거든요.

○우제창 위원 그것을 주자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권경석 위원 그것은 합의한 것으로 했잖아.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니까 이것도……

○이사철 위원 이것도 합의한 것으로 합시다. 우 위원이 바쁘신데…… 필요성은 다 인정하는 것이니까.

○**우제창 위원** 공공요금이 큰 것이니까, 이것 기술개발하고……

○**소위원장 이한구** 공공요금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

○**권경석 위원** 이것은 국회에서 대안을 검토한 것을 보고하고 그 후에 논의하지요.

○**소위원장 이한구** 설명을 해 보세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아까 저녁 먹기 전에 회의에서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과 권경석 위원님께서 이것을 꼭 개별 기업에 대한 손실보전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바로 주기보다는 장기 설비투자 소요가 있으면 거기에 일단 그 사업을 편성을 해서 주고 거기에서 여유적으로 자금동원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곳에 차입을 해 가지고 손실보전으로 갚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지금 나누어 드린 것의 1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설투자 재원 보조를 위한 지원 방안을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설투자사업에 정부가 보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자본의 증가로 나타나고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지금 연료비 손실분은 회계처리상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 재원을 조성을 하더라도 연료비 손실분에 해당되는 가격인상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문제가 되었고, 두 번째는 설사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예특법 시행령에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조 내지 보조를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죽 열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전은 해당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전에 손실보전을 시설투자 재원을 활용해서 좀 하려고 그러면 예특법 시행령을 다시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행령을 저희가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안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저희는 두 기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 발생한 손실분을 일부 탕감하는 기관 보조 형태로 주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법적 근거 부분이나 또 거대 공기업에 국민의 혈세를 바로 집어넣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서민용 전기 및 가스요금 안정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은 저희가 벤치마킹한 게 있습니다.

현재 예특법 시행령 3조1항8호에 보면 탄가안 정대책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석탄과 연탄의 최고가격을 지정해 가지고 그 최고가격을 생산원가가 초과할 경우에 그 차액을 예특에서 직접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하고 가스요금도 일률적으로 보조를 하는 게 아니고 서민용,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용, 산업용에서 값은 한 달에 300kW 이하 쓰는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 그다음에 일반용 값은 자영업자입니다. 그리고 농어민, 이 네 가지 요금을 동결시키는 데 한정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가스의 경우에는 지금 발전용도 있고 가정용도 있고 일반상가용도 있습니다마는 가정에 쓰는 난방용 요금의 가격안정화 사업으로 바꿔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저희 대안 요지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사철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2안대로 하면 전기·가스요금 안 올려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금년 중에는 적어도 이 서민용 관련해서는 이렇게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는 안 올릴 생각입니다. 안 올리고 그 재원을 활용……

○**이사철 위원** 안 올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소위원장 이한구** 다른 분야는 올리고?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다른 분야는 일부 조정을 하는데……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원래 가져 온 것은 지나간 것에 대한 보조인데 지나간 것은 잊어지고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보조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지요. 중소기업, 농업하고 서민에 한정해 가지고.

○**권경석 위원** 아까 제가 문제제기한 것은 이게 지나간 손실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보전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안 맞고 전례도 없는 일이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해야지 기관에 대한 보조는 보조금의 원래 취지에 100% 어긋난다 하는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인상을 해 가지고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집행 방법이 뭐겠느냐 해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연구를 하게 해 온 것입니다.

내가 1안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는

데 이것보다는 2안이 제대로 가능하니까 2안이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철 위원** 그런데 2안으로 하면 지나간 손실에 대해서는 보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우제창 위원**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그것 한다는 얘가지요.

○**이사철 위원** 지나간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전 쪽에서 가만 있을 것이냐 이 거예요. 한전에 주주들도, 외국인 주주도 있는데?

○**우제창 위원** 아니, 지나간 거니 앞에 거니 따질 필요 없이 한전에 주는 거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김광림 위원** 대국민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에요.

○**이사철 위원** 설명은 가능한데 이렇게 했을 경우 앞으로는 가격을……

우리가 돈을 주는 대신 저 사람들은 안 올리는 것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나간 손실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걸 내가 묻는 거예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런데 지나간 손실을 저희가 전혀 모른 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어차피 인상이요인으로 있기는 있는데 그 지나간 손실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안 올리겠다고 그 안 올리는 재원을 지나간 손실, 앞으로 연말까지 발생할 손실에서 일정 부분 한 걸로 상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존경하는 우 위원님, 이게 예특법 시행령 보면 사업 중에 농어촌 전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농어촌에 전화하면서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한전에 보조금을 직접 쥐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기관에 대한 어떤 보조나 그런 논란에서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이게 전례가 있는 게 다른 사업은 한전에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제창 위원** 이걸 꼭 이렇게 확정 짓는 건 아니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 질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거기 탄가안정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석탄·연탄 최고가격이 있던 말이에요. 최고가격은 이게 물가안정법인가 뭐가 있어요. 그것 있지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그거에 의하면 그것

만큼 보조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정책과사무관 최광국**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제창 위원**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전기는 어떠냐? 전기·가스 가격 이것은 뭐냐 하면 지경부장관이 인가해 주는 거라고, 고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가해 주는 사업은 고시라는 법률적인 요건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전기가 있는데 산업용이 있고 농업용, 주택용이 있는데 주택용이나 농업용은 20.7%밖에 안 된다, 이것만 서지컬리(surgically) 떼어내서 주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비슷하게 갖고 온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내가 꼭 그걸 하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연구해 보라는 거지. 미리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그러면 지금, 내가 전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가 지금 얼마예요? 8350억 아닙니까? 8350억을 이 해당되는 사람들만 준다면 그러면 깎아야지, 깎게 되겠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다 줄 수 있나, 그 금액이 다……

○**소위원장 이한구** 왜 깎아야요?

○**우제창 위원** 그 금액이 여기 중소기업, 대기업이 빠지고 주거용·농사용만 하면……

○**김광림 위원** 물량이 안 되니까……

○**우제창 위원** 물량이 안 되니까 물량에 대한 축소가 되니까 깎아서 줄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이한구** 기간이 중요하니까.

○**우제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따지는 게 미래를 따진다 그러면, 그렇게 설득할 거라면 그러면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의 것만 하려면 반, 40% 가지고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가스에 대한 거예요. 가스에 대한 거는 이게 서민용 전기안정화사업은 내가 인정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가스사업은 안 된다. 가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가격에 연동되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3월달, 5월달, 7월달을 강제로 유보

시킨 거란 말이에요. 유보시킨 것을 다시 보전을 어떻게 해 주느냐? 그것은 가격에 반영해서 보전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스는 반드시 가격을 인상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보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조금 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답변해 해 보세요.

○권경석 위원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고시 문제하고 물량 문제……

○이사철 위원 우선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한 얘기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채택하느냐에 있어서……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러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가안정대책비는 장관고시를 통해서 사업으로 해서 가고 있고 전기는 전기공급약관을 한전이 만들어서 지경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력은 장관이 허락하거나 장관이……

○우제창 위원 인가하고 고시하고는 법률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일단 설명을 들어보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지만 전기공급약관에 한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장관이 승인하면 저희는 고시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우제창 위원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은 또 다른 법률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두 번째 물량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 기 발생요인 그다음에 잔여기간의 발생요인을 봐 가지고 이것 네 가지 용도로 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물량이 필요한가를 저희가 계산을 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제창 위원 그건 제가 알겠고, 세 번째.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리고 세 번째 가스 관련해서는 지금 첫째는 도시가스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64% 비중인데 수도권은 한 7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시가스는 저희가 대폭적으로 보급 확대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면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차별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큰 시각에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가스의 55%가 난방용으로 쓰이고 나머지 한 45%가 발전용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발전용은 연동제를 이미 해서 그냥 가고 있고요, 그런데 가정용 중에서도 한 15% 정도를 난방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일반 상업용으로 쓰는데 적어도 여기서 확보되는 재원을 활용해서 가정용 난방용 요금을 일정 기간 동결할 때는, 여타 요금은 연동제를 감안해서 일부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더라도 적어도 가정용 난방용 요금은 동결을 시킬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제창 위원 금액은 그럼 4200억? 다 죽이면서?

○김광림 위원 금액은 이제 기간하고……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계산해 보면 오히려 4200억보다 더 많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제창 위원 원칙대로 하시면 가격에 반영하는 겁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위원장 이한구 글썽, 그게 원칙인데, 그럼 일부는 동결하고 나머지는 가격에 반영하는……

○우제창 위원 일단 뭐 안을 들은 거니까……

○소위원장 이한구 그래, 보자고.

○우제창 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안이 다 두루뭉술해요. 지금 명확한 대답이 없는 거예요. 두루뭉술한데, 논의하시자고요.

○소위원장 이한구 그래요, 우리 한번 토론해 봐요.

○우제창 위원 아니, 오늘 더 하십니까? 11신데 지금……

○김광림 위원 이것은 재정부에서……

○이사철 위원 그런데 우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안 하면 가스요금 올리는 것을 어떻게, 그냥 그렇게 50%씩 올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제창 위원 가스요금이요, 50% 아십니까? 이거 지급해 주면 얼마 오릅니까? 46%예요. 46%인데, 그러면 가정용 해야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차이 없어요. 그거 여론에 매 맞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고……

○우제창 위원 아니, 제 말씀은요. 아니, 정치적으로 다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김광림 위원**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명쾌한데, 재정부하고 지경부에 다시 한번 내가 물을 테니까 그거 한번 짚어 주세요.

고시하고 인가하고 다른 것은 알겠는데, 고시는 보조금이 되고 인가는 보조금이 안 된다?

○**우제창 위원** 있어요, 물가안정법에.

○**김광림 위원**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라고. 그걸 한번 해 주고……

○**우제창 위원** 여기에 다 있어요.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경부장관이 가격을 인가할 때는 보조금 못 준다?

○**우제창 위원** 예.

○**김광림 위원** 나는 오히려 정책수단에서 보면 보조금을 줌 주면서 가격을 인가할 때 ‘덜 올려라’, 이걸 막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래.

○**김광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가스의 경우는 반드시 가격에 반영해서 해야 된다 하는데, 사실은 그 조문을 보면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때는 한목에 올리지 말고 나중에 가격에 반영하여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보조금을 준다, 안 준다 하는 거와는 별도 얘기예요. 오히려 보조금을 준다, 안 준다 하는 것은 보조금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한테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이라고 해 놨다고요. 그렇게 양쪽 법을 다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달라고요.

○**우제창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아냐 하면, 국가 재정법하고 또 같은 게 뭐냐 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게 다 예전 기예처 법률입니다.

○**김광림 위원** 기예처가 문제구먼.

○**우제창 위원** 17대 때 기예처에서 자꾸 파이 늘리려고 법을 많이 만들었다고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재정경제부의 고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의 가격 통제에 따른 차액을 국고보조금 등으로 영업수익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아시지요, 그거?

○**김광림 위원** 그거 한번 다시 읽어 봐요.

○**우제창 위원** “정부의 가격통제에 따른 차액을 국고보조금 등으로 영업수익에 계상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가격통제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가격통제. 여기에 이제 재정경제부의 고시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물가안정법 제2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가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라는 형식적 법률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김광림 위원** 보조금 안 된다는 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제창 위원** 가격통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드시 고시하는 요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국고보조금이 나갈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사철 위원** 그러면 우 위원 말씀은 가격을 인가하는 것은 가격 통제 방법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까?

○**김광림 위원** 그것을 다른 사람이 상식적으로……

○**우제창 위원** 상식적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광림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알겠는데, 팩트인데, 인가 가격은 보조금을 절대 줄 수 없다 하는 그 연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제창 위원** 그러니까 가격 통제는 반드시 고시라는 절차가 필요한데 가격 통제에 의해서만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격 통제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한전이나 가스공사에 찍어 눌러서 인가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철 위원** 고시가 통제가 강한 겁니까, 인가가 강한 겁니까?

○**우제창 위원** 고시가 훨씬 강한 거지요.

○**소위원장 이한구** 기재부에서도 답변해 봐요.

○**이사철 위원**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이용걸** 저희가 지금은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지금 빨리 확인시키세요.

○**최인기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왜 논의가 막판에 이런 쪽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본적으로 내가 보조금 제도를 반대하는, 지금 1안이나 2안 특히 2안은 보조금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한국전력이 작년까지 이익이 났고 26조 잉여가 있고 투자가 되어 있고 자산으

로 있고 한테 단기 6개월, 1년의 손실을 가지고 어째서 국고보조금이 가야 되겠느냐, 공기업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내년 이후로 이익이 나면 2·3년간 나눠서 상환하는 그런 계획을 검토해야지 어째서 보조를 해야 되느냐, 나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조를 반대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계산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조가 안 되면 한전이 망한다고,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제시한 자료에도 8조에서 10조를 투자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느냐, 지금 이 잉여금이 남은 형태가 뭐냐?’ 했더니 ‘당기순이익을 원천으로 한 잉여금으로서 배당금 등 사외유출액을 공제한 사내유보금의 누적액이다’, 개념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현재 이익잉여금은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전력 설비 건설에 전액 투자되어 있다, 발전 송배전 시설은 유형자산 형태로…… 그리고 ‘매년 투자비 소요가 7조에서 10조 정도가 되는데 이게 당기순이익 규모를 초과했기 때문에 차입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지금도 7조에서 10조가 투자되고 있고 또 차입을 하고 있는데 유가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1조 8350억 차입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이냐, 그다음에 한전채를 발행해서 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라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이것은 보면 보조금을 명확히 하자, 이게 보조금이 지 뭐 이름만 갖다 붙여서 전기·가스 요금 안정화 사업이다 이렇게 하자고, 보조를 주자는 것 아니요?

○**이사철 위원**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광림 위원**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사철 위원** 그렇지요.

○**최인기 위원** 나는 애초부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지 않았어요. 그 자료를 내가 설명하라는 것 아니에요?

○**김광림 위원** 그 자료는 따로 설명하십시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법이 없다, 거기에서 제가 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이 법에는 일반적인 차액보전이나 가격보전 이런 것보다는 사업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근거가 있다,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이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피해 가면서 여기서 주장하는 시설자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면

돌려막기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아니냐 그래 가지고 아까 얘기를 했지요.

그렇게 제의를 해 가지고 한번 알아봤는데 그것은 1안으로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안이 뭐냐 하면, 한전에 지금 주고 있는 전례가 보조를 주고 있는 비슷한 성격으로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다 빼고 서민·농가·중소기업에만 지원이 갈 수 있는, 그 부분만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설명이 가능한 방법이 있고 또 지나간 것에 대한 보전이 아니고 앞으로의 가격을 안 올리는 방법이 설명되는 좀 발전된 방법이 있다 해 가지고 2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죽 이어온 거고 다시 말씀하시면 그것은 따로 한번 알아보라 하면 따로 한번 알아봐야 되고요.

○**최인기 위원** 그래서 차입이 안 된다는 이유를 어제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따져 봤더니 이게 과중하다고 얘기했던 말이에요.

“그게 과중하냐, 뭘 계산을 했길래 과중하냐, 왜 8300억 차입을 못 하냐? 그리고 내년에 유가가 내려서 이익이 나면 그것 상환하면 되는 것이지 꼭 국고 보조를, 재정 운용상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그것이 첫 번째이고, 우리 김광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까 얘기해서 검토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두 가지에 대한 검토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만 검토가 됐는데……

○**우제창 위원**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아까 자꾸 먼저 컨디션을 달았던 이유가 이것을 찬성한다는 게 아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최인기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권경석 위원님하고 김광림 위원님께서 검토해 보라 그러니까 이 검토 내에서 제 논리를 펴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최인기 위원** ‘만약에’ 그러면 행정부가 오해를 해 가지고 일시키고 안 하고 하면 그것은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기 하지요.

○**우제창 위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양반들이 원료비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권경석 위원** 가져온 자료 좀 봅시다.

○**소위원장 이한구** 자료 좀 드리세요.

○**권경석 위원** 뭘 가져 왔는데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손실 추정액 자료입니다.

○**우제창 위원** 이게 2007년도 상반기하고 2008년도 상반기를 비교한 것 같더라고요.

○**최인기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제창 위원** 아주 단순하게 갖고 온 거예요.

○**최인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모르겠고……

○**류근찬 위원** 이런 상황에서 논의를 더 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계속 이쪽을 그냥 아주 압박하는데……

○**권경석 위원** 뭘 하는데?

○**우제창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이번에 추경 편성이 안 되면 전기요금을 추가로 2.75%, 가스요금은 3.4% 인상이 불가피하다, 청와대가 한 얘기입니다.

○**류근찬 위원** 청와대가 우리 심사를 의식해서 지금 저런 것을 흘리고……

○**이사철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우리 당에서 주장을 안 하는 거니까…… 아까 다 얘기 나온 겁니다.

○**류근찬 위원** 아니, 어제도 얘기한 거지만 청와대가 오늘 타이밍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니까 논의를 한번 해 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우제창 위원** 이게 아까 금액을 해 온 거예요. 8000, 1조 6000…… 가스공사하고 한전하고 8400억, 이것에 근거해서 반인 8350억, 그다음에 4200억을 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니까 증가했던 것……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렇잖아요. 유가가 올라가서 가스비나 전기료를 올려 버리면 심플하지요. 그러나 지금 크게 올리는 걸 아무 대상자나 골라 잡아 가지고 올려 버리면 서민들 부담이 커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잖아요. 기본 스탠스(stance)가 그것 그냥 올려 버려라 하는 것하고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우제창 위원** 기본적인 스탠스는 뭐냐 하면 한전은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한전은 이것을 스스로 감내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스는 어떠냐? 제가 보기에 이것을 안 해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가격으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것을 자꾸 본인이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추라고만 그러지 말고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요금을 덜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서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 법으로 이게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못 하지만 법적인 제한이 없다 하면 최대한도로 하면 인정을 해 보려고 해야지.

○**우제창 위원** 법적인, 그러니까 전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스는 제가 보기에 안 돼요.

○**소위원장 이한구** 가스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별 문제 없네.

○**우제창 위원** 아니, 가스는 가격으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소위원장 이한구** 아니, 지금 가격은 대부분 하고 가정 난방용만 누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될 거 뭐 있어요, 다른 데는 올렸는데.

○**우제창 위원** 지침 자체가 가격에 반영해서 보조를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김광림 위원** 계속 안 된다고 하시는데 상위법에 지금 있단 말입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불가능은 아니잖아.

○**김광림 위원**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의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에 대한 보조금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위원장 이한구** 가스도.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가스공사도 이게 법인에 해당되는 거니까, 개인한테도 줄 수 있고.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니까, 그런데 뭐……

○**김광림 위원** 그리고 그 지침이라는 것은 그 밑에 지경부 장관이 시행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란 말입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습니다. 연동제를 명기해 놓고……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연동제의 경우.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연동제가 안 됐을 때에 가격에 반영해서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가스공사가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 공급 약관입니다. 그것을 지경부 장관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소위원장 이한구**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면 까짓 것 갖다 놓고 고치면 되는 거고 법의 문제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야

지.

○**우제창 위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요.

○**권경석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대안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론을 찾다 보니까 이런 대안이 나온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보조를 안 해 줄 수 없다는 불가피성을 제대로 해서 이 방안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최인기 장관님 말씀은 차입을 해서 하면 되지 왜 국가가 보조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아닐까……

○**최인기 위원** 나는 보조는 하지 말고 하란 얘기지.

○**권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해야 된다고 문제 제기를 했던 말이에요.

첫째는 시설 투자라는 것은 불가피하잖아요.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매년 연차별로 투자하는 것은 이것은 꼭 해야 될 불가피한 투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줄일 수가 없다,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투자를 줄여서 가격 인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장기 전력 수요 또 에너지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 나가야 될 필수적인 과제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보조하자는 거 아니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우선 장관님하고 우리 우제창 위원님께 설명해 드리고 우리한테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공기업’ 하면 전부 ‘신의 직장’ 해 가지고, 임원진들 연봉이 얼마요?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누릴 것 다 누리고 취할 것 다 취하고 ‘인상률 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받는다 하는 데 대한 국민적인 정서는 굉장히 비판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구 노력 하라 이거야, 연봉을 받을 꺾는다든지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단 일차적으로 아까 ‘계속 투자하지 않으면 장래의 에너지 수요를 도저히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적인 분야다’ 그것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자구 노력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이게 전

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 같아요.

○**최인기 위원** 전기 국장 아까 어디 오셨던데, 1년에 요금 얼마를 받으니까? 한전 전기 요금 수입이 얼마예요?

○**전기위원회사무국장 염명천** 29조입니다.

○**최인기 위원** 29조의 성질별 내역 예산서 같은 것 있어요?

지금 한전 임원들이 3년 동안에 상여금으로 1조를 받아 간다고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체 봉급 중에 3년 상여금이 1조라 그래요. 확인을 못 하고……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기업에다가 그렇게 주느냐, 보너스 1조씩이나 받아 가고’, 또 한전 하면 임금 구조가 좋습니다.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지요. 봉급도 굉장히 많이 받는 기업입니다. 물론 과거에 이익을 많이 냈으니까 그랬겠지요. 그걸 가지고 시비를 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고임금에 또 구조 조정을 얼마나 했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한전이 구조 조정 했다는 얘기는 나는 못 들었고. 하여튼 자회사 분사 하는 것은 제가 그전에 행자부 장관 때 노조 때문에 경험을 해서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경영 분석이나 효율화나 구조 조정이나 이런 것과 차입금 이런 방법으로 일단은 좀 견뎌 나가는 것이 일반 도리 아니냐, 나는 근본 시각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보조를, 금년 상반기에 손해났으니까 보조 주고 내년에는 그러면 한 4조 이익 나면 보조 준 것 찾아올 거냐? 못 찾아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논리선상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제창 위원** 장기적으로 봐야지요.

○**최인기 위원** 혹 예산서 갖고 있어요, 한전 예산서? 29조 받아 가지고 여기서 8500억 차입을 못 한다는 것도 나는 이해가 잘 안 가고, 하여간.

이것도 아까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처럼 추경 재원이 생겼기 때문에 기왕에 요금 억제했던 것 털고 가자 하는 그런 발상도 아마 같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정부로서는.

추경 재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추경 재원이 안 남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느냐고, 한전과 정부가.

○**소위원장 이한구** 요금 올려야지.

○**최인기 위원**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안 올리고 한다면? 차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차입보다는……

○최인기 위원 요금을 올리든지, 차입하든지, 두 가지를 병합하든지 그 길밖에 없는 것이지.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을 겁니다.

○최인기 위원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손실 보전의 방법도 없고 최소한 공기업에 손실이 나면 ‘어떤 산정 방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 준다’ 그런 원칙에 대한 법 근거 같은 것은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공기업 손실 나니까 무조건 보전해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최인기 위원 한국전력 예산서 있으면 저 하나 보여 줘 봐요, 세입세출.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개략적으로 아마, 바로 구두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사철 위원 2차관.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이사철 위원 전에도 말입니다, 이번 유가 파동이 있기 전에도 우리가 전기 요금 같은 것은 우리 정부에서 전부 억제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이사철 위원 그런데 그 억제로 인한 손실을 그때그때마다 보조금 줘서 다 해결한 적은 없잖아요?

○우제창 위원 없어요.

○최인기 위원 보조금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이사철 위원 지금 최 위원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것 같은데,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한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이사철 위원 무조건 우리는 억누르고 그 손실은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결하라는 건 한전이나 또는 한전 주주들한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섰다는 그런 것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권경석 위원 지금 유가가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었잖아요.

○소위원장 이한구 아니, 옛날에 올랐어.

○최인기 위원 옛날에도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지요.

○권경석 위원 150불까지 올랐는데……

○소위원장 이한구 2차 오일쇼크 때도 올랐지요.

○이사철 위원 아니, 그때는 전기료를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이사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전기료 안 올리고 이것을 이렇게 보조금 줘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인데, 그런데 아까도 우리 우제창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 통제할 경우에는 그것이 고시냐 인가냐 이런 방법적인 측면은 둘째 치고 보조금을 줄 수 있는 합법적인……

○우제창 위원 고시에 대한 조건이 있어야 하지.

○이사철 위원 아니, 가격 통제라는 그게 중요하지, 무슨 고시냐 인가냐 그 부분은……

○우제창 위원 법적으로 따지면요.

○이사철 위원 아니, 글썄 모르겠습니다.

○우제창 위원 우리 김광림 위원님도 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법을 따지면 말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아예 추경도 안 되는 겁니다.

○김광림 위원 그것은 또 다시 논의해야 돼요.

○이사철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 손해가 일어나서……

○김광림 위원 아니, 그것은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

○우제창 위원 아니, 나는 그러니까 그 법 자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법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원래의 그 법을 만든 사람의 얘기입니다.

○류근찬 위원 위원장님, 지금 11시 반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어젠다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면 밤새도 결론 안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떨어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새벽에 다시 한번 디베이트를 붙여서 쇼부가 나든 안 나든 그렇게 결정해야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지금……

○소위원장 이한구 그렇게 합시다. 일단 아까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만드세요.

○류근찬 위원 전체적으로 빨리 다른 걸 떨어내야 돼요.

○우제창 위원 문제 제기가 어떤 문제 제기예요?

○소위원장 이한구 아까 최 위원님이 하셨던 거……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한전이 왜 차입을 통해서 일시적인 손실을 하지 못하느냐……

○최인기 위원 8350억 차입하면 안 되는 이유?

○지식경제부제2차관 이재훈 예, 그리고 연 7~10조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의 필요성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한전 임원이 3년 동안 상여금으로 1조를 받아 갔다는 데 그게 사실이나 그런……

○권경석 위원 자구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소위원장 이한구 그거는 됐으니까 준비하시고 우리는 다시 다른 걸 빨리빨리 떨어내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합시다.

○류근찬 위원 잠깐만, 계수 조정할 때 관련 부처 차관이 앉아 있습니까?

○소위원장 이한구 아니요. 우리끼리……

○류근찬 위원 재경부하고 수석하고 우리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한구 그렇지요.

○최인기 위원 설명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2차관 계시라고 했지요.

○소위원장 이한구 지금부터는 필요 없지요.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공개할 때 다시……

○최인기 위원 그러면 지식경제부는 다 끝났습니까?

○소위원장 이한구 그렇지요. 다 1차로 끝났고 그다음에 1페이지부터 들어가야지요.

○김광림 위원 1페이지부터 주루룩 보면 서……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위원장님, 조정소위 추가논의 사업 중에 맨 뒤에 김광림 위원께서 아침에 제안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 이한구 그거야 뭐 얘기할 거 없잖아.

○김광림 위원 추가논의사업 제일 끝애.

○권경석 위원 2000억을 빼다 밑에다가?

○김광림 위원 그렇지요. 공공자금관리기금 2000억을 줄이고 외평기금 2000억을 늘리는 거예요. 그걸 총칙 바꾸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산 계상 시점의 환율 차이, 그래서 우리 재정위에서는 늘 매년 이렇게 하려면 어려워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총칙 괄호에다가 ‘10

억 불’ 이렇게 명기를 해라. 그러면 바꾸는 데도 조금 더 근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최인기 위원 이게 추가하시는 겁니까?

○김광림 위원 아닙니다. 전체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위의 것 잘라서 밑에 넣는 거예요. 내역을 바꾸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니까 총액은……

○최인기 위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000억을 잘라 가지고 외국환평형기금 쪽에 보냈구만.

○김광림 위원 예.

○우제창 위원 왜요?

○김광림 위원 예산 편성 당시하고 지금하고 환율이 차이나 가지고 10억 달러를 발행을 못 하니까……

○최인기 위원 환율이 오른 것을 대비해서 그런 거예요?

○김광림 위원 아니, 이게 원화 예산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최인기 위원 차입금이니까 뭐……

○소위원장 이한구 그래요, 이거는 별 거 없는 거니까……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그러면 이거는 인정해 준 걸로 참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다시 교육과학기술부부터 빨리 좀 합시다.

○우제창 위원 아니, 이거를 오늘 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내일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한구 그래도 오늘 어지간하면 끝내 버리고……

○김광림 위원 한전, 가스공사 빼놓고.

○이사철 위원 내일 오후에 예결위 전체회의가 잡혀 있으니까……

○소위원장 이한구 몇 건 안 되니까 빨리빨리……

○우제창 위원 이거를 무리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나는 이거는 너무 바보 짓 같은데요.

○류근찬 위원 그러니까 쉬운 건 하고 막히는 거 가지고 씨름을 한번 해 보자니까요.

○최인기 위원 언제요?

○류근찬 위원 내일도 좋고 뭐 정 안 되겠으면 추석 최고 해도 되고.

○최인기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죽 봐 가지고 쉽게 하는 것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건 문제 사업으로 다 빼고 빼고 이래 가지고 다시 문

제 있는 것만 가지고 하자고요.

○권경석 위원 그래요. 문제되는 것만 말씀하세요.

○우제창 위원 그 작업을 이 밤중에 하는 게 맞느냐는 거지요, 제 말은.

○최인기 위원 11시 반이네……

○소위원장 이한구 어떻게 좀……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사철 위원 여야가 내일 처리하기로 합의를 해 놓은 것이니까……

○권경석 위원 그거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최인기 위원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전에 대한 보조금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거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제창 위원 안 되는 거지요.

○류근찬 위원 못 넘어가지 뭐.

○최인기 위원 내일 본회의 갈 수가 없지.

○소위원장 이한구 일단 해 봅시다. 해 보고…… 되도록 해야지.

○최인기 위원 지금 밤새고 심사하자 이거예요?

○소위원장 이한구 그렇지요. 빨리빨리 해 버리는 게 낫지 뭐…… 밤을 새울 필요 없어요. 빨리빨리 하면 30분이면 끝나는데.

○최인기 위원 우리 12시까지만 합시다.

○소위원장 이한구 지금 몇 분인데?

○최인기 위원 11시 반이니까요.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니까 리뷰를 빨리빨리……

○최인기 위원 리뷰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합시다. 좋아요, 30분만 합시다.

○소위원장 이한구 아니, 30분이 아니라 이거는……

○우제창 위원 아니, 위원장님, 보십시오. 아까 류근찬 위원, 우리 모든 사람의 의견의 일치가 뭐냐면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 없이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결이 지금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김광림 위원 모든 사람의 그거는 아니고……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이거 하면 다른 거 다 해 주시겠어요?

○우제창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30분 더 하나 1시간 더 하나 이게 뭐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소위원장 이한구 아니지요, 진도가 다른데……

○우제창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30분만 하시고 어차피 이거 내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최인기 위원 그러니까 30분만 하시자고요, 한전에 대한 것은. 12시까지 할 때까지 해서 확정할 건 하자고요.

○권경석 위원 그런데 요구한 자료를 지금 장관님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끝내고 보고 받아 보고 그리 하십시오.

○우제창 위원 보고 내일 아침에 받으시다. 내일 일찍 나오시다.

○최인기 위원 잠도 자고 사람이 살아야지.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내일 8시쯤 할까요?

○최인기 위원 나는 빨리 하는 건 좋아요. 8시는 너무 빠르고 9시쯤……

○소위원장 이한구 괜찮으세요?

○류근찬 위원 우리는 회의가 있어요.

○최인기 위원 우리 회의 있구나. 안 돼, 안 돼.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니까 오늘 대강 해 놓고…… 내일 다 각자 회의가 있으니까……

○김광림 위원 자, 1페이지 지방재정교부금 이거는 별문제 없잖아요, 그렇지요?

○최인기 위원 그렇지요.

○김광림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최인기 위원 이거는 규모를 저희가 문제 사업으로 정하고……

○소위원장 이한구 규모?

○최인기 위원 왜냐하면 규모가 나중에, 재원이 여유가 있어야 우리가 넣을 것 아닙니까?

○우제창 위원 이거 시행령도 마련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김광림 위원 아닙니다. 3분의 1인데 더 늘리겠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감액하자 이 말씀입니까?

○최인기 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더 늘려주겠는데 그 범위를 정해야 되니까 총 규모, 감액과 증액을 봐 줘야, 판단을 해야 얼마 증액할지 알지……

○우제창 위원 시행령 언제 발표되는 겁니까, 학교용지부담금?

○최인기 위원 9월, 10월까지 해야 된다는데 아직 안 돼 있대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이용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불만 하면 되는 겁니다.

- 우제창 위원 아니, 시행령 마련이요.
- 최인기 위원 시행령이 마련이 돼야 돼.
-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그거는 아까 교육과학기술부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다음주에 되면 그 뒤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 김광림 위원 다음주에 국무회의……
- 소위원장 이한구 오케이, 다음주에 국무회의 한다니까……
- 최인기 위원 표시를 오(O)에서 삼각(△)으로 합시다, 위에는 오(O)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은 세모(△)로 합시다.
- 류근찬 위원 예.
- 소위원장 이한구 예.
- 김광림 위원 농림부는 문제없다고 그랬고.
- 최인기 위원 유기질 비료 이것은 하기로 했잖아요?
- 김광림 위원 예.
- 류근찬 위원 가만있어 봐요. 이게 증액 요청이 있는 부분은, 감액을 얼마 규모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최인기 위원 물론이지요.
- 류근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뭐가 어떻게 돼요?
- 권경석 위원 이거는 원안대로 하지요.
- 소위원장 이한구 원안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 권경석 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 해가지고……
- 최인기 위원 농수산위원회에서 증액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일단은……
- 류근찬 위원 농수산 쪽은요, 지금 추경에서 비교적 보살피 주지 않은 계층이 많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니까 감액부터 먼저 해야 되거든.
- 우제창 위원 감액을 먼저 해야 돼요.
-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일단은 감액에 대해서만……
- 김광림 위원 맞아요.
- 최인기 위원 우선 정부안을 인정하는 것은 동그라미(O)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세모(△)하고, 안 되는 것 엑스(X) 치고 그 부분만 할까요? 그리고 감액하고 증액하는 것은 따로 하고.
- 김광림 위원 예, 맞아요.
- 류근찬 위원 원래 감액을 먼저 해야 돼요.
- 최인기 위원 감액을 먼저.
- 소위원장 이한구 그다음에 화학비료는?
- 최인기 위원 그러면 화학비료 다 오(O)지요.
- 우제창 위원 오(O)입니다.
- 김광림 위원 이거는 뭐냐 하면 정부안 넘어온 그대로예요.
- 최인기 위원 그게 오(O)라는 거예요. 정부안에 대해서 오(O)라는 거예요, 지금.
- 소위원장 이한구 유류 구매자금.
- 우제창 위원 이거는 신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 최인기 위원 이거는 안 된다고 아까 한 것 같은데……
- 소위원장 이한구 아니, 신규라서 그렇다가보다 하여튼 이것은 내용이 그렇고…… 그다음에 살처분.
- 우제창 위원 오(O) 아니에요?
- 소위원장 이한구 오(O).
- 김광림 위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이것도 오(O)고.
- 권경석 위원 축산농가 도와 줘.
- 소위원장 이한구 이거는 뭐 이차보전하는 거예요?
- 류근찬 위원 1%하고 7.59% 이차보전하는 거……
- 소위원장 이한구 그래요, 이거는 뭐 오(O)지요?
- 우제창 위원 오(O).
- 류근찬 위원 해 줘야 돼요.
- 소위원장 이한구 그다음에……
- 이사철 위원 고효율 이것도 안 된다고……
- 수석전문위원 국경북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은 09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김광림 위원 이거는 신규라기보다 정부에서 안 넘어온 거니까……
- 권경석 위원 정부안이 없기 때문에……
- 소위원장 이한구 오케이. 그건 넘어가고.
- 우제창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엑스(X)예요.
- 소위원장 이한구 그다음.
- 김광림 위원 연근해 어선 감척, 이걸 좋고.
- 최인기 위원 증액 요구한 것은 따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 연근해 어선 감척은 정부안에 대해서는 오(O)지요?

- 김광림 위원** 예.
농수신보 이것은 정부안에 증액이 없으니까……
- 소위원장 이한구** 이것은 엑스(X)표고.
- 우제창 위원** 아니, 오(O)지요, 오(O). 이것은 정부 증액이 없는 것 아니에요.
- 최인기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늘려 달라고 한 거야, 이것은.
- 권경석 위원** 그것은 증액한 다음에, 일단 오(O)해 놓고 나중에……
- 이사철 위원** 신용보증기금 말이야?
- 최인기 위원** 이것은 오(O)해야 돼.
- 소위원장 이한구** 아니, 이것은 증액인데……
- 최인기 위원** 정부안은 오(O)해 놓고……
- 권경석 위원** 오(O)해 놓고 증액·감액은 따로 따진다 이겁니다.
- 소위원장 이한구** 아니, 이것은 정부안이 없잖아요.
-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이용걸** 없으니까 그대로 통과라는 뜻입니다.
- 우제창 위원** 정부안이 여기 없으니까 그냥 오(O)인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따진다 이것이지요.
-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일단 없는 것으로 해요.
- 최인기 위원** 나중에 증액 때 따지자?
- 권경석 위원** 정부안 기준으로 한다 이것이지.
- 우제창 위원** 오(O)인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따지자 이겁니다.
- 최인기 위원** 7페이지의 농수산식품부 FTA 그것은 내용을 아까 봤더니 풀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 소위원장 이한구** 이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FTA를 하는 조건하에서 이 사업을 벌이기로 했거든요?
- 최인기 위원** 그때 해라?
- 소위원장 이한구**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
지난번에도 FTA 할 때 직불제 같은 것도 그것 용으로 해 놔는데 통과시켜 놓으니까 협조를 안 하잖아요, FTA 비준을. 그러니까 같이 묶여 있어야 돼요.
- 우제창 위원** 이 부대의견을 그대로 달기로 하지요.
- 소위원장 이한구** 그래요, 이것은 그대로 있어야지 이것을 풀어줄 수 없어요.
- 최인기 위원** 아까 농림부 차관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 류근찬 위원** 가만있어, 그러면 농림부 얘기를 들어 보고……
- 김광림 위원** 농림부 안은 다 들었고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 소위원장 이한구** 이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없어요.
- 류근찬 위원**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문제 될 텐데.
- 소위원장 이한구** 아니지요, 그것은 FTA 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 류근찬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이게 풀어야져야 된다는 요구가 엄청나고요. 지금 FTA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 최인기 위원** 한정 없이 묶여 있으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사업을 보니까.
- 소위원장 이한구**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FTA를 안 하고 이것을 풀어 버리면 나중에 FTA를 할 때 또 뭐를 내놓으라 그럴 거 아니냐고요. 그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해요.
- 최인기 위원** 아니, 아니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 소위원장 이한구** 그게 지금 실정인데.
- 최인기 위원** 축산업 같은 것이 지금……
- 소위원장 이한구** 어렵지요, 어려우면 FTA 빨리 통과시켜 줘야지.
- 이사철 위원** 이것은 정부안이 아니고 농림수산위원회 안이에요?
-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예.
- 소위원장 이한구** 지금 농업단체에서 난리를 치니까……
- 우제창 위원** 상임위에서는 의결한 겁니다.
- 최인기 위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활성화라든지 토속의료산업화센터라든지 이것 FTA하고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해 주어야 될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 소위원장 이한구** 글썽, 해 주면 좋아요.
- 최인기 위원** 브랜드타운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 소위원장 이한구** 제목은 다 좋지요. 그러나 FTA를 안 하고 이걸 덜컥 해 주고 나면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 우제창 위원** 나중에 해요, 삼각(△)으로 해 놓읍시다, 그러면.

○**류근찬 위원** 삼각(△), 잠깐만요. 지금 이것 작년 예산 짤 때 부대조건을 걸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이용걸** 예.

○**류근찬 위원** 지금 이것을 금년에 안 풀어 놓고 그냥 계속 묶어 놓으면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이용걸** 불용됩니다.

○**최인기 위원** 못 넘어가요, 불용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농림부가 난리인 거예요.

○**김광림 위원** 불용이 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음연도 재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사철 위원** 이월로?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이용걸** 다시 똑같은 걸 한 번 더 의결해 주셔야 됩니다.

○**최인기 위원** 불용으로 되지만 이 예산은 없애지지, 새로 책정해야지.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이용걸** 똑같은 걸 한 번 더 의결하면 됩니다.

○**류근찬 위원** 이걸 그대로 새로 만들어야 될 것 아냐.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이용걸** 새로 의결하셔야 되지요.

○**최인기 위원** 이게 저기가 되면 정부 예산에 넣어서 또 와야지.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이용걸** 맞습니다.

○**류근찬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이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 맞아요. 예컨대 이걸 풀어 놓고 정말 FTA가 되려면 또 다른 카드나 이걸 원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FTA와 관련해서 특히 피해 분야인 농업 부분은 지금 이것에다가 또 다른 플러스 알파를 제시 안 하려면 이걸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글썄, 그건 그렇다니까요.

○**류근찬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또 다른 카드를 생각하더라도 묶어 있는 걸 금년에 풀어 달라는 요구가……

○**소위원장 이한구** 그것은 원칙 문제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번 10월 달쯤은 FTA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왜 추경 때 이것을 풀라고 그래요? 그때 결정하자고요.

○**권경석 위원** 해 봐야 한두 달 차이인데.

○**소위원장 이한구** 또 이것은 FTA 문제기 때

문에 그대로 추경에 묻어서 처리를 못 한다고요.

○**권경석 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예, 상임위에서 의견제시를 한 겁니다.

○**우제창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소위원장 이한구** 그래, 그렇게 해야 돼요.

○**김광림 위원** 정부 예산안이 아니고 부대의견으로, 안 넘어온 안이지만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정부 예산안에서 넘어온 것은 아니고.

○**이사철 위원** 이게 정부의 추경안에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김광림 위원** 예.

○**소위원장 이한구** 원칙은 그러니까요.

13페이지.

○**권경석 위원** 이걸 다 했잖아요.

○**최인기 위원** 지경부는 일단 우리가 사업 보류시키고 한 것이니까 삼각(△)이 많고 엑스(X)도 많아.

○**소위원장 이한구** 이것은 아까 했으니까 그다음 보건복지 쪽.

○**김광림 위원** 12페이지 중소기업청은 오케이이고.

○**우제창 위원** 왜 오케이입니까? 이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한구** 중소기업청이요? 그것은 안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엑스(X)표로 하셨잖아요.

○**권경석 위원** 왜?

○**소위원장 이한구** 소화 못 한다고.

○**우제창 위원** 그럼, 이것은 집행률이 낮은데……

○**권경석 위원** 아니에요, 충분해요, 충분해.

○**우제창 위원** 왜 어떻게 뭐가 충분합니까?

○**권경석 위원** 집행률이 충분하다고 아까 보고도……

○**우제창 위원** 집행률이 어떻게 충분합니까? 이게 원칙적으로는……

○**권경석 위원** 아니, 집행률이 충분한 것만 뽑아 올렸다는 것이고……

○**이사철 위원** 지자체로 나눠 주면 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김광림 위원**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두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집행률이 낮다 했는데 그 질문에 당해연도는 낮지만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 소화된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아, 이월된다 그랬지요.

○김광림 위원 이월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하는 것은 자부담이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제창 위원 상인 부담만 없는 겁니다.

○김광림 위원 자부담이 없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류성걸 상인 부담이 자부담입니다.

○김광림 위원 자부담은 없고, 상인 부담은 없고 지자체하고 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한구 지자체는 다 확인한 거고?

○김광림 위원 예.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뭐……

○우제창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안 돼요.

○소위원장 이한구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세모(△)로 우선 해 놓고 넘어갑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보건복지요.

○최인기 위원 보건복지는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 오(O)고, 기초노령연금은 엑스(X)고,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오(O)고, 그렇게 심의한 것 같은데요.

○우제창 위원 이게 어떻게 엑스(X)예요, 법 개정 사항이라?

○최인기 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대예요, 법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민간 영아기본보조금 오(O)고, 아래아래는 엑스(X), 엑스(X)고,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오(O)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오(O)고…… 그렇게 했지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권오봉 밑의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이용걸 정부안에 대해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김광림 위원 이것은 지금 오(O)로 할 수 없는 게 상임위안에서 증액이 되니까……

○소위원장 이한구 오케이 오케이 이것은 넘어가세요, 상임위니까.
그러면 15페이지도 필요 없고, 16페이지는 어때요?

○류근찬 위원 15페이지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권경석 위원 지방의료원하고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은 안 된다 그랬어요. 상임위에서 그

것은 안 된다 그랬어요.

○소위원장 이한구 그다음에.

○김광림 위원 환경부는 하기로 했고.

○소위원장 이한구 오(O) 했고, 또 국토해양부는?

○우제창 위원 이것은 오(O)입니다. 17, 18페이지는 오(O)인데……

○소위원장 이한구 그렇지, 이것은 합의한 거니까.

○우제창 위원 예, 19페이지는 저희는 전체가 다 50% 감면입니다. 19, 20페이지는 전체 다 일괄적으로 50% 감면입니다.

○김광림 위원 17, 18페이지 정부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이용걸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최인기 위원 일단은 50% 감하자고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류근찬 위원 민주당 입장은 50% 감인데, 저는 100%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권경석 위원 우리 한나라당도 100%.

○소위원장 이한구 한나라당은 100%, 오케이.
그러면 다 정리된 거예요?

○권경석 위원 예.

○김광림 위원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나누어 가지고 내일 아침에 줌 만들어 주세요.

○소위원장 이한구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또 추가로 필요한 것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정리해서 내일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구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괜찮아요?

○김광림 위원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한구 아까 다 했잖아요.

○김광림 위원 지경 것은 빼고 나머지는 되는 거고?

○소위원장 이한구 그래요.
그러면 내일은 10시에 할까요?

○최인기 위원 10시에 합시다.

○우제창 위원 여기 추가논의에서 국토해양부 같은 것을 했나요?

○소위원장 이한구 다 했잖아요.

○우제창 위원 부산신항 이런 것 안 했잖아요.

○이사철 위원 안 했는데 문제 제기한 사람 없

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문제없으니까 특별히 소
위원 중에 누가 문제 제기하지 않는 한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통과로 했지요.

○소위원장 이한구 이의 없지요?

○류근찬 위원 예.

○소위원장 이한구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
를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6분 산회)